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274호

2015. 1. 15.(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훈 령]

제98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 4

[입법예고]

제2015-115호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

제2015-125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

제2015-126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

◆ 고 시

제2015-10호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8

제2015-11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18

제2015-13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고시 41

◆ 공 고

제2015-5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43

제2015-3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43

제2015-4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45

제2015-4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45

제2015-4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46

제2015-47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48

제2015-5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49

제2015-6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49

제2015-61호 환경건설탕회사 등록취소 공고 50

제2015-6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51

제2015-6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52

제2015-68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53

제2015-6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53

제2015-7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55

제2015-7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56

제2015-7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57

제2015-7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공고 58

제2015-7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59
제2015-8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60
제2015-8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61
제2015-8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63
제2015-8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63
제2015-8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64
제2015-8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공고	65
제2015-8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66
제2015-8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66
제2015-8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67
제2015-89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68
제2015-9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69
제2015-9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70
제2015-9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71
제2015-9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72
제2015-97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73
제2015-9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73
제2015-10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75
제2015-103호 [서울특별시 민선6기 조직개편안 반영] 공인등록 공고	76
제2015-10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77
제2015-106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 열람공고	79
제2015-107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	80
제2015-10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82
제2015-109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83
제2015-11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90
제2015-111호 클린신고센터 신고금품 공고	91
제2015-11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92
제2015-114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공고	93
제2015-11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23
제2015-119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124
제2015-12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126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5-1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고	127
-----------------------------	-----

◆ **구 고 시**

제2015-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131
---	-----

제2015-3호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서대문구)	133
제2015-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서구)	136
제2015-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고시(영등포구)	137
제2015-1호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138
제2015-5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국립국악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초구)	149
제2015-2호 도시관리계획(삼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송파구)	150
제2015-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동구)	152

◆ 구 공 고

제2015-2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중구)	154
제2015-1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용산구)	155
제2015-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강북구)	156
제2015-39호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열람공고(송파구)	162

◆ 사업소고시

제2015-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64
제2015-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64

◆ 사업소공고

제2015-1호 방염처리업 신규등록 공고(광진소방서)	165
제2015-1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중랑소방서)	165
제2015-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구로소방서)	166

◆ 기 타

제2015-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7
제2015-3호 하천공사 준공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7
제2015-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88

자 치 법 규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988호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산업경제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소집회의 활성화와 효율적 심사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국장급에서 실무 과장급으로 하향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존 ‘산업경제정책관’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0조제2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5호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13.2.2)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규칙을 개정하여 서울의 빛공해 방지, 에너지절약, 서울야경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빛방사허용기준, 상향광속률 등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한 조명계획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안 제15조)
 - － 서울시 좋은빛상 명칭, 시상분야 및 인원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시상시기는 3월 6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빛정책추진반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빛정책추진반(전화: 2133-1926, FAX: 2133-0738, E-mail: sam-m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25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안 제3조~4조)

다.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안 제5조~7조)

라. 회의 및 분야별 소위원회 등(안 제4조~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담당관(전화: 02)2133-6870, FAX: 02)2133-0825, E-mail: imanon@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26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행정자치부령, '14.11.29)에 따라 투자심사대상 범위 및 재심사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투자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의 사후평가를 신설하는 등 투자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심사금액 상향조정 (안 제3조)
 - 2이상의 시·도 관련되는 투자심사 대상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나.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범위 조정 (안 제4조)
 - 투자심사후 사업비 50%이상 증가사업에서 30%이상 증가 사업으로 조정
 - 단,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경우 사업비 20%이상 증가사업
 - 지방채 발행액 30% 이상 증가사업 및 사업부지 위치 변경된 사업 추가 등
- 다. 투자심사의 사후평가를 신설하여 투자심사의 실효성 강화 (안 제 10조의 2)
 - 1) 시 자체심사 및 자치구 의뢰심사 사업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사후 평가 실시
 - 2) 예산반영 현황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으로 투자심사의 실효성 강화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담당관(전화: 02)2133-6870, FAX: 02)2133-0825, E-mail: imanon@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호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0호(1979. 1. 10)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6.23.)로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개포동 153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4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3.12.2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며, 강남구 개포동 153일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규정에 의거 동 조례 제54조 3항에 의한 “학교 이적지”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개포동 153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교시설이 2010년 이전됨에 따라, 해당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한 ‘24시간 소통과 열린공간’인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를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도곡동 410, 개포동 660, 일원동 619번지 일대	3,937,263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 주거지역	16,105.0	-	16,105.0	100.0	-

※ 강남구 개포동 153번지 일대에 해당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계 획 내 용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개포초교	초등학교	개포동 188	14,328.5	-	14,328.5	건고시388호 (84.9.28)	
기정	②	구룡초교	초등학교	개포동 655	15,102.3	-	15,102.3	건고시296호 (83.9.7)	
기정	③	대치초교	초등학교	대치1동 505	18,505.3	-	18,505.3	건고시253호 (85.6.14)	
기정	④	일원초교	초등학교	개포동 691	13,853.3	-	13,853.3	건고시388호 (84.9.28)	
기정	⑤	포이초교	초등학교	개포동 1273	18,883.4	-	18,883.4	건고시296호 (83.9.7)	
기정	⑥	양전초교	초등학교	개포동 183	14,815.3	-	14,815.3	건고시296호 (83.9.7)	
기정	⑦	개일초교	초등학교	개포동 174	13,871.4	-	13,871.4	건고시296호 (83.9.7)	
기정	⑧	대곡초교	초등학교	대치동 510	14,335.3	-	14,335.3	서고시26호 (78.10.6)	
기정	⑨	개원초교	초등학교	개포동 660-10	15,632	-	15,632	건고시296호 (83.9.7)	
기정	⑩	구룡중교	중학교	개포동 650	14,503.7	-	14,503.7	건고시296호 (83.9.7)	
기정	⑪	대청중교	중학교	대치동 502	13,732.5	-	13,732.5	건고시296호 (83.9.7)	
기정	⑫	개포중교	중학교	개포동660-37	18,078.1	-	18,078.1	건고시388호 (84.9.28)	
기정	⑬	개원중교	중학교	개포동 184	17,583.9	-	17,583.9	서고시296호 (76.11.8)	
기정	⑭	중동중교	중학교	일원동 692	17,784	-	17,784	건고시388호 (84.9.28)	
기정	⑮	대치중교	중학교	도곡동 460	15,061.9	-	15,061.9	건고시296호 (83.9.7)	
기정	⑯	개포고교	고등학교	개포동 173	20,145.8	-	20,145.8	건고시296호 (83.9.7)	
기정	⑰	수도공고	고등학교	개포동 155	103,397.8	-	103,397.8	서고시347호 (77.9.28)	
기정	⑱	경기여고교	고등학교	개포동 152	42,474.5	-	42,474.5	서고시757호 (87.10.30)	
기정	⑲	국악고교	고등학교	개포동 1272	18,985.4	-	18,985.4	건고시388호 (84.9.28)	
폐지	㉔	일본인학교	특수교	개포동 153	15,959.1	감)16,105.0	-	서고시10호 (79.1.10)	학교이적지
기정	㉕	학교	초등학교	개포동 660-37	9,234.0	-	9,234.0	서고시2013-56호 (2013.03.07.)	

※ 도시계획시설 조서 상 필지(153-1, -2) 누락에 따른 면적오기 수정 (15,959.1㎡ → 16,105.0㎡)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율(%)	높이(층)
기정	①	개포초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②	구룡초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③	대치초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④	일원초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⑤	포이초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⑥	양전초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⑦	개일초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⑧	대곡초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⑨	개원초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⑩	구룡중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⑪	대청중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⑫	개포중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⑬	개원중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⑭	중동중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⑮	대치중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⑯	개포고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⑰	수도공고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⑱	경기여고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⑲	국악고교	45% 이하	130% 이하	5층 이하
	㉑	학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㉑	일본인학교	폐지	· 교육시설(일본인 학교)이 이전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활용 다양한 분야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한 '24시간 소통과 열린공간'인 개포디지털 혁신파크를 조성하고자 함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 분		표시	전 층	1 층(지하층)	비 고
상용 용도	특별계획구역	-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
	연립주택지 등	A	• 해당 제2·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용도 중 - 제2종근생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지하층 주거시설	-
	단독주택지	B	• 해당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용도 중 - 제2종근생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지하층 주거시설	-
	기타지역				
	일반상업지역	C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용도 중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생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
하용 용도	남부순환도로변필지 등	D	• 해당 제2·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용도 중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생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게임제공업소(제2종근생·판매 및 영업시설 중).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 해당 미관지구에서의 불허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
	특별계획구역	가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
	기타지역	1	• 문화 및 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2	•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3	•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
		4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5	•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

- ※ 상기 용도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를 말함
 ※ 권장용도 면적은 연면적 중 순수 당해용도에 사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이때 연면적은 주차장, 부속시설(지하층 전기, 난방 등 기계실) 제외
 ※ 전층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의 연면적이 지상층 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보며, 권장용도 준수에 따라 증가되는 전체연면적이 증가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상이 되어야 함. 이 경우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은 제외하고 지하층 및 공용면적은 포함하여 산정
 ※ 대지합필 및 공동건축시의 용도제한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필하거나 공동건축한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규정을 적용

■ 변경

구 분		표시	전 총	1 층(지하층)	비 고
영도	특별계획구역	-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연립주택지 등	A	• 해당 제2·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용도 중 - 제2종근생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지하층 주거시설	-
	단독주택지	B	• 해당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용도 중 - 제2종근생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지하층 주거시설	-
	일반상업지역	C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용도 중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생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
	남부순환도로변필지 등	D	• 해당 제2·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용도 중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생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게임제공업소(제2종근생·판매 및 영업시설 중),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 해당 미관지구에서의 불허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	-
허용용도	특별계획구역	가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
권장용도	기타지역	1	• 문화 및 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2	•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3	•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
		4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5	•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
		6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

※ 상기 용도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를 말함

※ 권장용도 면적은 연면적 중 순수 당해용도에 사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이때 연면적은 주차장, 부속시설(지하층 전기, 난방 등 기계실) 제외

※ 전층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의 연면적이 지상층 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보며, 권장용도 준수에 따라 증가되는 전체연면적이 증가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상층 연면적의 20%이상이어야 함. 이 경우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은 제외하고 지하층 및 공용면적은 포함하여 산정

※ 대지합필 및 공동건축시의 용도제한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필하거나 공동건축한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규정을 적용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계획 : 학교이적지 외 변경없음

■ 기정

구 분			기 정	비 고
특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기타지역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 변경

구 분				변 경	비 고
특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기타지역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	60% 이하	-
			학교이적지	3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2) 용적률계획 : 학교이적지 외 변경없음

■ 기정

구 분		기 정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특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기타지역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 이하	20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 이하	250% 이하	-
	상업지역	삼성로·개포동길변	600% 이하	800% 이하	-
		이면부	400% 이하	500% 이하	-

※ 특별계획구역의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가중치)이내]를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 변경

구 분				변 경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특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기타지역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주거지	180% 이하	200% 이하	-	-
			학교이적지	-	12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 이하	250% 이하	-	-
	상업지역	삼성로·개포동길변		600% 이하	800% 이하	-	-
		이면부		400% 이하	500% 이하	-	-

※ 특별계획구역의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가중치)이내]를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3) 높이계획 : 학교이적지 외 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내 높이계획 : 변경없음

나) 기타지역 높이계획

■ 기 정

구 분		기 타 지 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남부순환로변)	삼성로· 개포동길변	이면부
계획지침	최저층수	-	-	-	3층 이상	3층 이상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	7층 이하	12층 이하	-	-	-

■ 변경

구 분		기 타 지 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남부 순환로변)	삼성로· 개포동길변	이면부
			주거지	학교이적지				
계획지침	최저층수	-	-		-	3층 이상	3층 이상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	7층 이하		12층 이하	-	-	-

다.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Ⅲ.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 첨부(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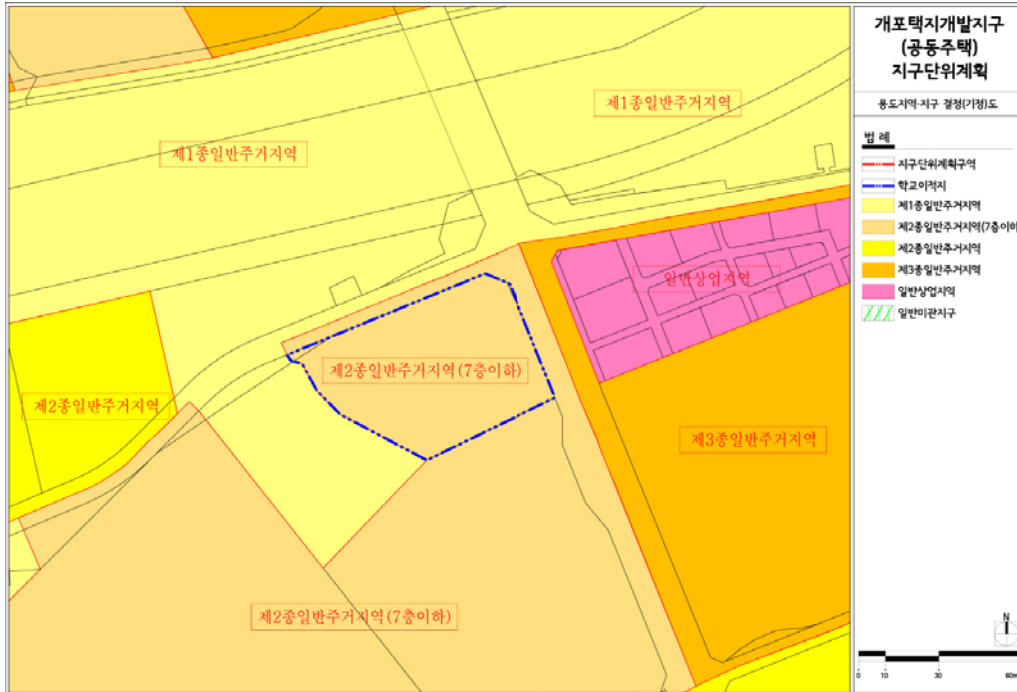
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Ⅴ.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02-2133-8413) 및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02-3423-611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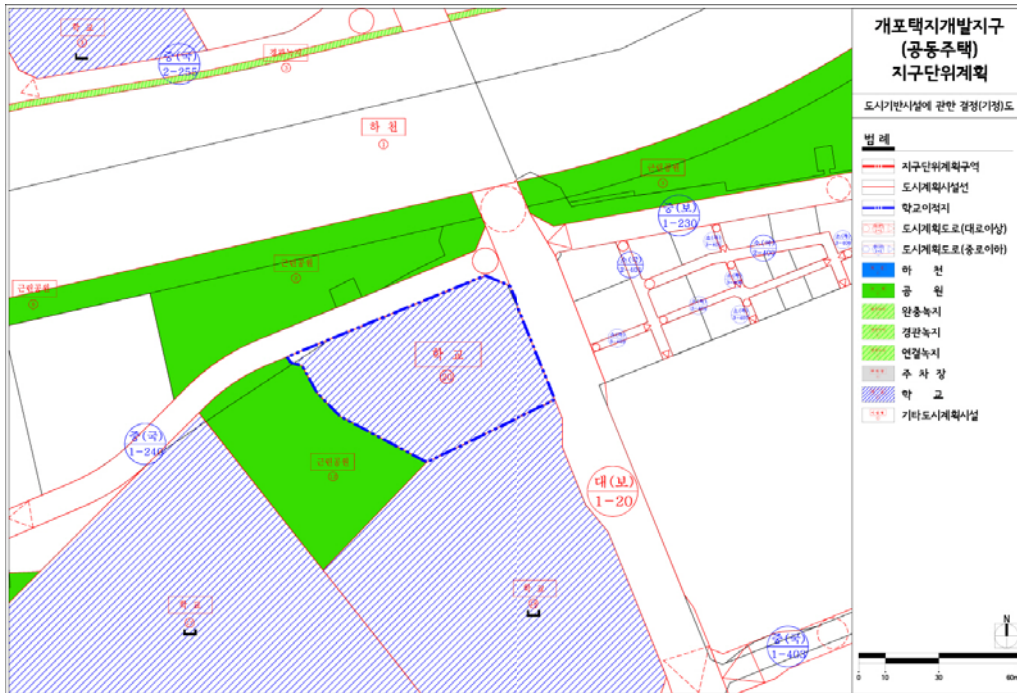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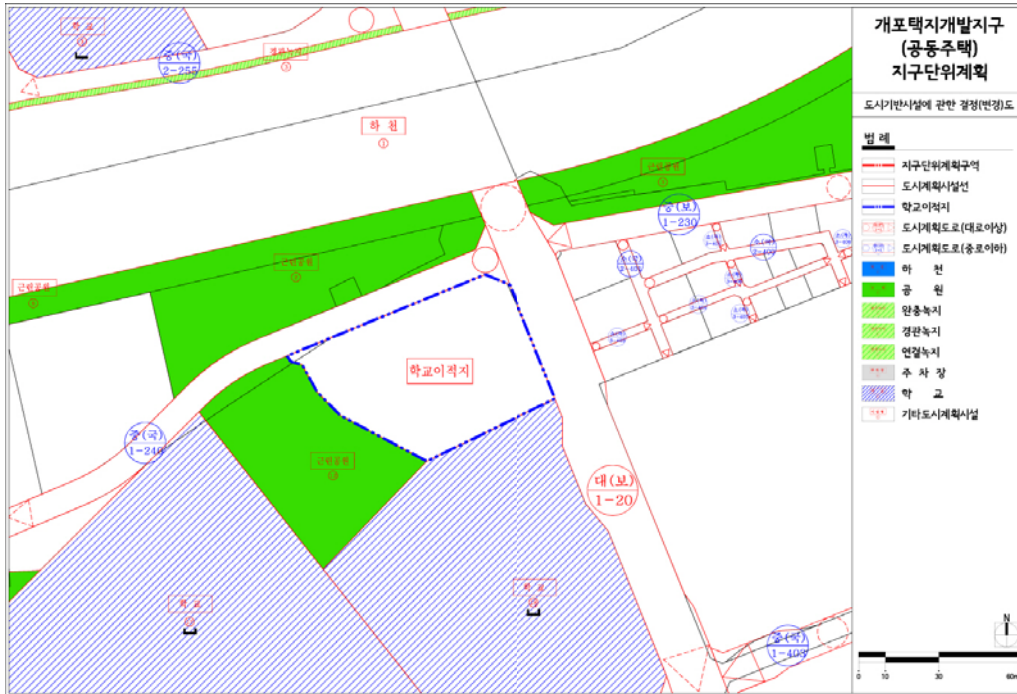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사실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문화재 지정 개요

① 문화재 신규 지정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367호	흥천사 아미타불도	1점	불화 (168cm×238.3cm) 복장낭 (각27.8cm×9.2cm)	1867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흥천사길29 (흥천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368호	흥천사 지장시왕도	1점	화면크기 158.2cm×220.7cm	1867년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369호	반야암 목조관음보살좌상	1점	총고 54.2cm	1722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30번지 (반야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370호	반야암 목조석가여래좌상	1점	총고 54.2cm	강희 연간 (1662년~1722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371호	반야암 석조보살좌상	1점	총고 41cm	조선 후기	

② 문화재 변경(추가) 지정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지정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변경전	변경후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92호	천축사 비로자나 삼신불도	천축사 비로자나 삼신불도 및 복장유물	1점	1건 11점	① 비로자나삼신불도 총고232cm×총폭268.5cm 화고217.5cm×화폭258cm ② 원문 37cm×43cm ③ 일체여래비밀전신 사리보협다라니 29.5cm×39.7cm ④ 후령통 10.7cm×6.5cm×1.5cm 뚜껑 6.8cm×6.8cm×2cm ⑤ 황초폭자 36.5cm×37cm ⑥ 후령통 봉함지 14cm×7.3cm×2cm ⑦ 후령통 봉함지 5cm×31.3cm ⑧ 후령통 봉함지 19.9cm×19.4cm ⑨ 지편 7.3cm×13.7cm ⑩ 지편 9cm×6cm ⑪ 지편 6.4cm×2cm	1891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31 불교중앙박물관 (천축사: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1동 549번지)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홍천사 아미타불도

<홍천사 아미타불도>는 19세기 후반 서울 지역에서 보이는 경상도 화풍이 반영된 수준 있는 후불도 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교류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불화임. 또한 시주자로 당시 왕실여관인 상궁이 참여하고 있어 19세기 후반 서울 지역에서 나타나는 왕실과 사찰간의 후원양상을 보여주므로 사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 이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존하고자 함.

■ 홍천사 지장시왕도

<홍천사 지장시왕도>는 19세기 후반 서울지역에서 제작된 <개운사 지장시왕도>(1870년, 서울시 유형 제215호), <봉국사 지장시왕도>(1885년, 서울시 유형 제352호), <미타사 지장시왕도>(1885년)의 선행되는 사례이자 모본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표현기법과 색채로 미루어 의운자우(義雲慈雨)의 작품으로 평가되며, 특히 본존인 지장보살이 보주를 두 손으로 받들고 지장보살 석장을 선악동자가 들고 있는 새로운 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함.

■ 반야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제작시기가 확실한 조선후기 조각으로서 진열(進悅)이라는 조각승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어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작품이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함.

■ 반야암 목조석가여래좌상

18세기 전반 진열(進悅)유파의 양식 특징을 보이는 것과 함께, 1872년 개금 중수가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불상은 아무리 늦어도 18세기 중엽 경에는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서울과 경기지역의 조선 후기 불상양식을 파악하는 데 학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함.

■ 반야암 석조보살좌상

이 상은 드물게 불석으로 만든 보살상으로, 불상조성기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없으나 평판적이면서도 단정한 삼각형의 신체, 신체에 비해 큰 머리, 넓적한 얼굴, 짧고 뭉툭한 코, 가지런히 내린 두 손 등의 특징은 서울 지역에 유존하는 불상으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8세기에 조성된 소불상의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함.

■ 천축사 비로자나삼신불도 및 복장유물

천축사 비로자나삼신불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92호)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현 천축사 삼신불도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유물로, 삼신불도와 함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92호에 추가 지정함.

2. 문화재 지정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별첨>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4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홍천사 아미타불도

홍천사 극락보전 불단 후불벽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불도는 1867년에 鏡山堂處均이 化主로 나서 왕실소속 女官인 尙宮 千氏, 趙氏, 安氏 등의 시주를 받아 고종과 민비의 안녕과 무강을 기원하며 제작되었다. 불화를 그린 이는 義雲慈雨와 보조화원 應完이다.

화면 중앙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6위의 보살과 사천왕,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10대제자 등이 그려져 있다. 대좌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불은 왼손을 배 부분에 놓고 오른손을 어깨 위로 올려 엄지와 검지·중지를 결한 아미타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좌우에 배열한 보살들은 아미타팔대보살 가운데 6위의 보살만을 표현한 것으로, 지물상 존명이 확인되는 보살은 연꽃을 든 문수보살, 여의를 든 보현보살, 보관에 화불이 표현된 관음보살, 보관에 정병이 표현된 대세지보살, 수정구슬과 석장을 든 지장보살과 그 짝을 이루는 미륵보살 등이며, 금강장보살과 제장애보살은 생략되었다. 화면 상단에 그려진 제자들의 상호는 단집에 가려 확인할 수 없으나 아미타불을 향하거나 서로 마주보는 자세를 취하면서 양손은 합장을 하거나 정병, 불자, 서책을 드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하고 있다. 화면 하단에는 향우 측에 비파를 지물로 든 천왕과 검을 비스듬히 든 천왕이 있고 맞은편에는 각기 탑과 당, 용과 여의주를 권 천왕이 서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조선후기 후불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구도이다. 불보살의 상호는 둥근 얼굴형에 눈, 코, 입을 작게 그렸으며 피부는 황금색과 유사한 황갈색을 칠하였으나 지금은 짙은 갈색으로 변색되었다. 화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붉은 색이다. 아래의 大衣와 보살의 보관 및 천의는 붉은 색을 칠하고 광배나 옷단에는 녹색을 칠하여 변화를 주었다. 이외에 주존을 부각시키기 위해 신광을 오색으로 표현하였다. 화면 상단에는 법당에 봉안할 당시 제작해 걸어놓은 복장낭 두 점이 있으며, 뒷면에는 언문으로 적은 시주자와 극락발원 내용이 있다.

<홍천사 아미타불회도>를 제작한 수화승 의운자우는 19세기 중엽에 경상북도에서 畵名을 떨친 인물이다. 현재 의운자우가 조성한 불화로는 경북 예천 <보문사 독성도>(1859년), 경북 울진 <불영사 신중도>(1860년), 경북 영천 <은해사 원통전 아미타불회도>, 경북 영천 <은해사 운부암 아미타불회도>(1862년), 경북 영천 <묘각사 아미타불회도>(1863년), 서울 <홍천사 아미타불회도>(1867년), 강원 영월 <보덕사 영산회상도>(1868년) 등이 전한다. 보조화원인 응완은 1867년과 1868년에 의운자우가 주도하는 서울 홍천사와 영월 보덕사 불사에 참여한 이후 1869년에는 수화승 경선응석이 제작하는 남양주 <홍국사 팔상도> 제작에 참여하였다. <홍천사 아미타불회도>는 의운자우가 경상도를 넘어 서울·경기지역까지 활동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書記>

- ① 同治六年丁卯 我臘月二十 三角山興天 寺後佛幀 奉安仍于 緣化秩 證明印虛 快明 霽月典貞 虛丹德眞 誦呪義庵 普寬 金魚義雲 慈雨 比丘應完 持殿能波 義賢 都監 瀕雲 舜基 別座青峯 應策 供司淨 鐘頭奉玉 施主秩 奉爲 主上殿下壬 子生李氏 玉体安寧 王妃殿下 辛亥生閔 氏玉体無疆 尙宮甲戌生 千氏 清信女尙 宮己未生 趙氏慧華 清信女尙宮 壬戌生安氏 大鏡華 清信女丙 子生裴氏 紅蓮花
- ② 童子丁卯生 金氏阿只 化主鏡山堂 處均

<복장낭 목서>

- ① 청선녀문슈싱김서을사성후
② 청선녀덕원성기축싱송싱후○극락발원

<흥국사 극락보전 아미타불회도> 불보살의 안면부의 일부 채색이 변색된 것 외에 화면의 꺾임과 구김 현상, 안료와 바탕천의 박락 등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단지 화면 하단에 설치류의 의한 구멍과 화면 향 오른쪽 사천왕부분이 찢겨 있다.

<흥천사 아미타불회도>는 19세기 후반 서울 지역에서 보이는 경상도 화풍이 반영된 수준 있는 후불도 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교류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불화이다. 또한 시주자로 당시 왕실여관인 상궁이 참여하고 있어 19세기 후반 서울 지역에서 나타나는 왕실과 사찰간의 후원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사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흥천사 아미타불도 사진자료



흥천사 아미타불도가 봉안되어 있는 전경



흥천사 아미타불도 부분

■ 홍천사 지장시왕도

이 불화는 홍국사 극락보전 향 오른편에 마련된 영단에 봉안되어 있는 지장시왕도이다. 불화 화기가 손상되어 일부 글자가 지워져 제작화승은 알 수 없지만 “同治六年丁卯臘…緣化秩 證明印…別座 青峯應…化主鏡山…” 등의 내용을 통해 1867년 제작시기와 불사에 참여한 중요 인물은 파악이 가능하다. 제작시기를 포함해 증사, 별좌, 화주 등 불사에 참여한 승려들의 法號가 1867년에 조성된 아미타불회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지장시왕도 역시 같은 화승인 義雲慈雨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 중심에는 주존인 지장보살이 연꽃에서 피어오른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지장보살 좌우에는 시왕이 홀·쥬수로 나누어 배치되어 있고 그 옆에 귀왕, 판관, 사자, 옥졸 등의 권속들이 서 있다. 이와 같은 존상 구성은 고려 후기 지장시왕도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구성 방식이다. 다만 <홍천사 지장시왕도>에서는 지장보살 앞에 지장보살의 지물인 석장과 무독귀왕의 지물인 인장함을 어깨에 멘 선악동자를 배치하여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이 양손을 들어 수정구슬을 감싸고 있는 표현 역시 기존에 한 손은 수정 구슬을 들고 다른 손은 석장을 쥐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게 표현한 지장보살과는 다른 표현이다.

이 불화에서 보이는 지장보살의 수인과 선악동자의 표현은 19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과 경상도 일대에 유행한 지장시왕도 형식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홍천사 지장시왕도>(1867년)를 비롯해 <개운사 지장시왕도>(1870년, 서울시 유형 제215호), <봉국사 지장시왕도>(1885년, 서울시 유형 제 352호), <미타사 지장시왕도>(1885년)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사실에 의거하면 1867년에 조성한 <홍천사 지장시왕도>는 19세기 후반에 새롭게 유행하는 지장시왕도 형식 가운데 제작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작품이다.

이와 같은 미술사적 의미만이 아니라 <홍천사 지장시왕도>에서 보이는 안정된 구도, 19세기 후반의 화풍이 반영된 존상 표현과 홍색을 기반으로 녹색과 청색이 대비를 이루는 색채의 구사력, 세부문양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한 표현 등이 조화를 이루어 수준 있는 화격을 유지하고 있다.

<畫記>

： 同治六年丁卯臘…」天寺中…」成奉安于…」緣化秩 證明印…」…」虛…」誦呪
義…」金魚比邱…」都監瀨…」別座 青峯應①化主鏡山…」鐘頭比邱…」供司比
邱…」淨桶①①①施主秩 清信女…」姜氏大蓮華 清信女癸未生愼氏 普光華 清
信女辛巳生南氏 寶積華 乾命甲申生張氏 乾命丙寅生崔氏 坤命庚辰生李氏 清白
心 乾命丙戌生崔氏 坤命己丑生金氏 清信女尙宮壬戌生 崔氏 坤命戊寅①金氏
華嚴① 坤命…」清淨德 乾命丁丑生①① 坤命戊戌生①① 清信女…」大…」

화면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화된 상태이지만, 주존인 지장보살의 상호는 안료박락이 많이 진행되었다.

<홍천사 극락보전 지장시왕도>(1867년)에서 주목되는 표현은 수정 구슬을 감싸 쥔 지

장보살의 자세와 석장과 경함을 어깨에 멘 선악동자이다. 이러한 표현은 19세기 경상도에서 그려지기 시작하여 19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흥천사 지장시왕도>는 서울지역에서 제작된 <개운사 지장시왕도>(1870년, 서울시 유형 제215호), <봉국사 지장시왕도>(1885년, 서울시 유형 제352호), <미타사 지장시왕도>(1885년)의 선행되는 사례이자 모본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비록 화기가 지워져 제작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세기 후반 서울지역에서 유행한 지장시왕도 형식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예이자 그림의 수준이 우수한 불화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이에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흥천사 지장시왕도 사진자료



흥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상태



흥천사 지장시왕도

■ 반야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반야암은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에 위치한 봉원사의 산내 암자로 새로 신축된 금당에는 향마촉지인 여래좌상을 본존으로 하여 목조보살좌상과 석조보살좌상이 좌우로 협시하는 삼존이 봉안되어 있다. 이 삼존상 가운데 제작시기가 가장 이르다고 생각되는 향좌측의 목조보살좌상은 높이 54.2cm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몸체에 비해 두부가 큰 신체비례를 보여주는데, 머리에 화문과 화염문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後補된 것임)을 쓰고 머리 위에는 보계[寶髻, 상투]가 표현되었으며 머리다발이 양어깨에 흘러내린 모습이다. 방형에 가까운 얼굴은 양 뺨에 살이 많아 풍부한 양감을 보이고 눈은 가늘게 떠서 반개하였으며 코가 크고 오뎅하며 인중은 넓고 입에는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다.

착의방법은 가사를 두 벌 겹쳐서 입은 형식인데, 가슴에는 내의(內衣)가 수평으로 접혀있다. 별재(別材)로 만들어 끼워 넣은 양 손은 큼직하며 검지와 약지는 펴고 중지과 무명지를 구부려 중지를 엄지에 맞댄 상태로 지금은 잃어버린 지물(持物)을 들고 있었던 듯하다. 다리를 덮은 치마[裙]의 자락은 꽃잎처럼 새겨져 있는데, 18세기 불상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보살상의 몸속에서는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조성발원문을 비롯해서 주서다라니, 후령통, 묘법연화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성발원문을 보면, 보살상은 1722년에 천후산 문수사에서 조성하여 봉안했던 상으로 이 보살상은 수조각승 진열이 이끈 진행, 옥충, 일영, 수성의 다섯 명이 제작한 것이다. 진열은 조선후기의 조각승 가운데 비교적 여러 작품이 전해오는 인물로 자료상 처음 확인되는 것은 1688년 상주 복장사 목조지장보살상과 시왕상 조성에서 수조각승 지현을 보좌하여 참가했다는 기록이며, 수조각승 성심(性謹)의 보조 조각승으로서 전북 홍양 백련사 목조가섭·아난존자와 십육나한상의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현존 작품 가운데 수조각승으로서의 진열의 활동이 처음 보이는 것은 1713년으로 경기도 고양 노적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現 고양 상운사 봉안)부터인데, 이후 1718년에는 경남 양산 통도사 사천왕상을, 1719년에는 전남 남평 운흥사 목조지장보살상과 시왕상(現 목포 달성사 봉안) 중수하였으며, 반야암 보살상을 제작한 같은 해인 1722년에는 부산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진열의 활동지역은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에 넓게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반야암 보살상이 봉안되었던 천후산 문수사가 어느 곳에 위치한 사찰인지, 또 언제 반야암으로 옮겨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발원문의 내용에서 이 보살상이 관음보살이며 문수사 감로암의 상단에 모셔진 관음보살상임을 밝히고 있어 삼존불 가운데 하나로 모셔졌던 협시보살상이 아닌 독존으로 봉안되었던 보살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願文

康熙六十一年壬寅二月日天后山文殊寺甘露
庵上壇造成觀音菩薩一座安於宝座

施主列目

造像供養布施体金大施主	道明	比丘
黃金大施主	崔莫大	靈駕
面金大施主	金斗才 兩主	金尙玄 兩主
烏金大施主	戒日	比丘
供養大施主	金斗發	兩主

緣化秩

證明	行淨	比丘
持殿	雷炯	比丘
畫員	進悅	比丘
	眞行	比丘
	玉聰	比丘
	一英	比丘
	守性	比丘
供養主	處明	比丘
	坦玉	比丘

來往	惠明	比丘
	惠哲	比丘
別座	智元	比丘
化士	道明	比丘
	楚行	比丘
三綱	位清	比丘
	惠聰	比丘
大禪師	守卞	比丘
	智行	比丘

願文作偈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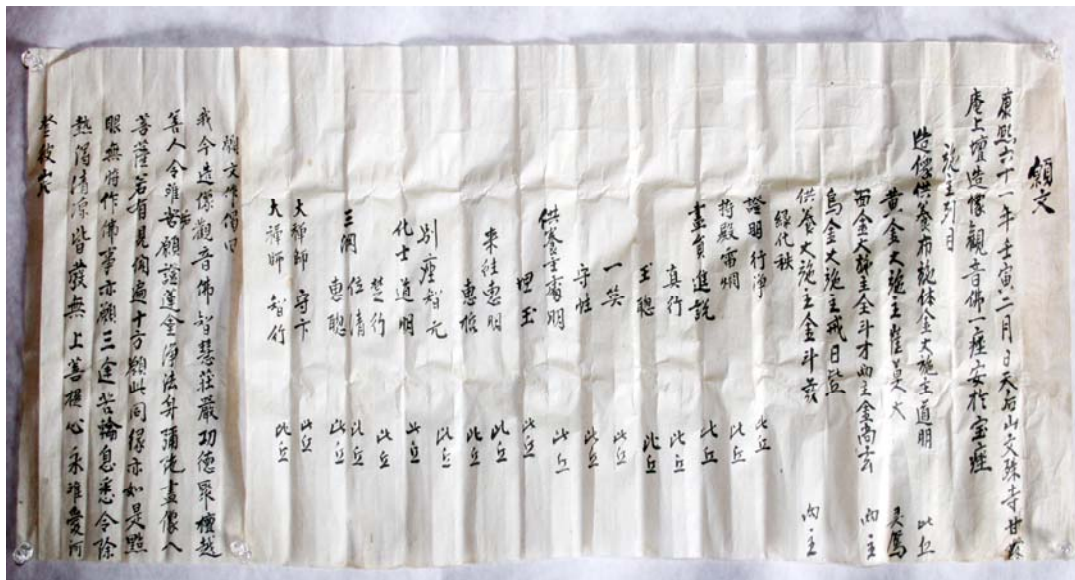
我今造像觀音菩薩智慧莊嚴功德聚檀越
善人今○○願證蓮○淨法身彌陀畫像一
菩薩若有見聞遍十方願此同緣亦如是點
眼無時作佛事亦願三途若輪息悉今除
熱渴清涼皆發無上菩提心永觀愛河
登彼岸

제작시기가 확실한 조선후기 조각으로서 진열이라는 조각승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어 조선 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작품이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야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사진자료



반야암 삼존불상 봉안 상태



반야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성발원문



반야암 목조관음보살좌상(정면)

■ 반야암 목조석가여래좌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에 위치한 봉원사 암자 반야암 대웅전 봉안의 주존상으로, 약간 길어진 계란형 얼굴에 머리는 육계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마 위 머리 중앙에는 반원형의 中央髻珠가 마련되어 있으며, 꼭대기에는 頂上髻珠가 구비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얼굴이 길어 보인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머리를 앞으로 살짝 숙여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원만형의 얼굴에는 곡선의 눈썹에 일자로 반쯤 뜬 눈, 약간 두툼한 눈두덩에 가늘고 오뎅한 삼각형의 코를 하고, 입가에 얹은 미소가 번져나 단정해 보인다.

얼굴에 비해 좁아진 어깨로 인해 다소 왜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상체가 길어지고 무릎이 약간 넓어져 안정감을 보인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 오른손은 무릎 위에 내리고, 왼손은 앞쪽을 향해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法衣는 드러난 오른쪽 어깨를 덮은 뒤 팔꿈치를 감싸고 돌아 복부 쪽으로 말려들어 간 변형된 우견편단이며, 대의 안쪽에 표현되어 있는 승각기[內衣]는 상부를 연판형으로 처리하였다.

大衣는 목 부분의 옷주름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대의 끝자락은 허리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반야암 석가여래좌상의 경우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 進悅 유파의 양식특징을 엿보인다. 즉, 1713년 진열이 수화승으로 책임을 맡아 조성한 고양 상운사 목조 아미타불좌상의 상호와 비슷함은 물론, 제주 용문사 석조여래좌상의 오른쪽 어깨를 덮는 대의자락의 넓고 뾰족한 옷주름 표현 또한 약간 유사함이 엿보인다.

또한 밀양 여여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옷주름 표현과 뒤 목 주위에서 보이는 이중으로 접힌 옷주름 등이 서로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석가불좌상에서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복장물의 종류는 ‘康熙’ 라는 간지명만 남아 있는 조성발원문 잔편과 개금중수원문기, 분책된 묘법연화경, 후령통, 다라니 등으로 「改金重修願文記」는 다음과 같다.

[改金重修願文記]

同治十一年壬申三月初九日京畿道楊州牧地三角山奉元寺般若菴
 後佛幀壹軸改金重修三位與獨聖幀壹軸改彩壹位神衆幀壹軸願文記
 夫法身無相因相現理衆生之福田如月印千江慈悲如水滌塵化淨諸佛之
 智慧涵育萬機化生之信心從時檀那之種福合運欲新舊揅更結淨界
 釋迦之一會畫幀完同奔月影罷行雲又以改金慈容甚妙諸相畢備
 願此功德施者化者大小結緣咸登彼岸
 證明 比丘 完峯堂鏡哲 比丘 幻翁堂喚眞
 誦呪 比丘 肯河
 金魚 比丘 漢峯堂瑄曄 櫟菴堂勝宜 德月堂應崙
 比丘 昶說 比丘 春晩
 供司 比丘 性奉

鐘頭 比丘 性宜
 都監 比丘 南河堂永浩
 化主 比丘 影海堂完眞 沙彌 妙珪
 別供 比丘 性昌 沙彌 性安
 大臺 乾命柳永萬
 來往 乾命尹致善

大施主 乾命癸酉生 吳洪烈 坤命戊子生 鄭氏 兩主

「개금중원문기」를 살펴보면 반야암 목조석가불좌상은 1872년 19세기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대 활약상을 보인 대표적 화승 漢峰堂 瑯曄이 首畫僧을 맡고 櫟庵堂 勝宜와 德月堂 應崙이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여 개금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金谷堂 永煥을 은사로 두고 있는 한봉당은 화승으로서 불화 이외에도 1861년에는 고성 유점사 소조아미타불을 조성하고, 1873년에는 도봉산 자락의 오봉산 석굴암의 지장보살상 조성 및 나반존자상 보수하며, 1887년에는 안성 운수암 아미타불 조성에 책임을 맡고 있음이 파악된다.

목조불상으로서 틈이 갈라지거나 표면 금이 벗겨지는 등의 손상 없이 보존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개금 또한 벗겨지거나 균열이 보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복장물에서 ‘康熙’라는 간지명만 남아 있는 「조성발원문」 잔편이 발견되어 정확한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18세기 전반 進悅유파의 양식특징을 보이는 것과 함께, 1872년 개금중수가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불상은 아무리 늦어도 18세기 중엽 경에는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반야암 목조석가불좌상은 서울·경기지역의 조선 후기 불상양식을 파악하는 데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반야암 목조석가여래좌상 사진자료



반야암 목조석가여래좌상(정면)



반야암 목조석가여래좌상(측면)

■ 반야암 석조보살좌상

서울 서대문구 반야암의 대웅전에 봉안된 석조보살좌상으로, 현재 대웅전 수미단 위에 목조석가여래좌상(중앙), 목조보살좌상(향좌측)과 함께 봉안되어 있다. 다른 2구의 불상과 달리 불석으로 조성되었는데, 총높이 41cm로 소형 불상에 속한다. 이 보살상이 언제부터 반야암에 봉안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寺傳에 의하면 한일병탄 이전부터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보살상은 조선 후기에 불상의 재료로 많이 사용된 불석(佛石, 또는 비석沸石)으로 만들어졌다. 불석은 조선 후기 불상의 재료로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다른 재료보다 내구성이 강하며 석재임에도 불구하고 조각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17세기 전반부터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제작되었다. 불석의 산출지에 대해 <일본표해록>(1821년)에는 “경주는 예부터 옥돌로 유명하며 경주 돌이면 다 옥돌인가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 천불상을 조성한 곳이 경주 佛石山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근역서화징>에도 “(대흥사) 천불을 경주 석굴암에서 조성하였다” 등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상도, 특히 경주 일대에서 불석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은 보관 부분을 금색으로 칠하고 머리카락을 검은색, 이목구비를 일부 적색과 녹색으로 칠한 것을 제외하고는 불석이라는 재료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고개를 약간 숙여 구부정한 자세로 정면을 바라보고 結跏趺坐하였으며, 머리에는 보관을 착용하였는데 가운데 부분이 불룩하게 솟은 조선 후기의 보관형식을 잘 보여준다. 보관 역시 불석으로 함께 만들어서인지 보관 표면에 여러 가지 장식이 첨가된 조선 후기의 보관과 달리 아무런 장식이 없이 밋밋하다. 안쪽의 정수리 부분에는 작고 둥근 寶髻가 표현되었으며, 보관 아래로는 寶髮이 가지런하게 표현되었다. 이마 양쪽에서 흘러내린 두 가닥의 보발은 귀를 한번 감싸고 어깨로 흘러내렸는데, 양 어깨에 위로 등글게 말린 보발이 두 가닥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얼굴은 넓적한 편으로 신체에 비해서 큰 편이며, 둥근 얼굴에 눈은 가늘고 길게 半開하였으며 코는 넓적하고 입에는 약간 미소를 머금었다.

착의법은 불상의 착의법을 따른 통견(通肩)식으로, 양 어깨에 걸친 옷자락은 목주위에서 옷깃이 한번 접힌 후 거의 수직으로 흘러내렸다. 오른쪽 옷자락은 오른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가슴 한가운데 평행으로 표현된 裙衣 아래로 끼워졌으며, 왼쪽 어깨에서 내려온 옷자락과 만나 U자형을 이루었는데, 간략화된 옷주름은 선이 굵고 강해 힘이 있다. 오른쪽 어깨에는 연꽃잎 모양의 자락이 표현되었다. 하체로 흘러내린 옷자락은 결가부좌한 두 다리 위를 덮고 넓게 아래로 펼쳐져 있으며, 가부좌한 무릎 위로 두 손을 손등을 위로 하여 가지런히 엮어 놓았다. 이러한 손 모습은 변형 降魔觸地印으로, 조선 후기 소불상에서 가장 흔한 자세이다. 목조불보살상이나 금동불 보살상과 달리 석조불 보살상이 대부분 이와 같은 수인을 취한 것은 돌이라는 재료에서 오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상은 불석으로 만든 보살상으로, 전국적으로 불석 소불상들이 여러 점 남아있지만 이 상처럼 보살상으로 제작된 것은 많지 않다. 바닥면에는 복장구멍이 없어서 복장을 넣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불상조성기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평판하면서도 단정한 삼각형의 신체, 신체에 비해 큰 머리, 넓적한 얼굴, 짧고 뚱뚱한 코, 가지런히 내린 두 손 등의 특징은 조선 후기에 많이 조성된 소불상의 특징을 그대

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석불상들이 대부분 18~19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 보살상 역시 18~19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안정되고 균형 잡힌 신체표현과 이목구비의 표현 및 옷자락의 처리 등이 18세기 전반 경의 불상특징을 보이고 있어, 조성연대는 18세기경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 가운데 청룡사 석삼불상(2구, 서울시유형문화재 207호, 1902년 중수), 서울 진관사 소석불상(서울시 문화재자료 10호, 조선후기) 등이 불석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반야암 석조보살상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야암 석조보살좌상 사진자료



반야암 석조보살좌상(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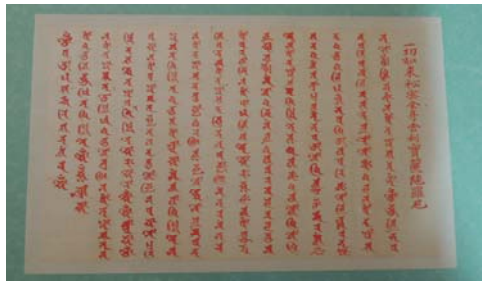
반야암 석조보살좌상(후면) 4

■ 천축사 비로자나삼신불도 및 복장유물

천축사 비로자나 삼신불도에서 발견된 복장 발원문의 내용과 현 천축사 삼신불도의 화기가 일치함으로 후령통은 해체하지 않고 현상 유지하도록 한다.

대상 문화재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삼신불도와 함께 귀중한 자료임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천축사 비로자나삼신불도 복장물 사진자료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사진
1	원문 (願文)	종이	1점	37cm×43cm	
2	일체여래비밀 전신사리보협 다라니 (一切如來秘密 全身舍利寶篋 陀羅尼)	종이	1점	29.5cm× 39.7cm	
3	후령통 (候鈴筒)	금속	1점	10.7cm×6.5cm× 1.5cm 뚜껑 6.8cm×6.8cm×2 cmcm	

4	황초폭자 (黃綃幅子)	비단	1점	36.5cm×37cm	
5	후령통 봉함지 (候鈴筒 封緘紙)	종이	3점	14cm×7.3cm ×2cm	
				5cm×31.3cm	
				19.9cm×19.4cm	
기 타	지편 (紙片)	종이	1점	7.3cm×13.7cm	

기 타	지편 (紙片)	종이	1점	9cm×6cm	
기 타	지편 (紙片)	종이	1점	6.4cm×2c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명 칭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 배 경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 보행에 관한 법정계획 수립
3. 수립목적
 - 서울시 보행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5년간 서울시 보행정책의 방향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4. 계획기간 : 2014년 ~ 2018년 (5년)
5. 주요 내용
 - 서울시 보행 현황 검토 및 보행정책방향 수립
 -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대 목표, 10대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 생활공간 보행친화
 - 보행환경개선사업 확대, 통학로 보행안전 확보, 보행시설 개선으로 연결성 강화
 - 이동공간 보행친화
 - 대중교통시설 주변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이용자의 보행동선 다양화, 이용자 참여형 보행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이동의 Barrier Free
 - 문화의 보행친화

- 보행대표거리 조성, 서울이 하나되는 걷기프로젝트 추진, 보행길 관련 연계사업 시행
-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총괄 조직체계 제시
-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 6. 공개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에 관계도서 비치
 -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133-2420)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5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의견제출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15. 1. 14 ~ 2015. 1. 28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의견제출기한	처분법규
두양건설(주) 박순희	건축공사업 1279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길 136-2 (상가) (온수동)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15.01.28. (수)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과 (☎2133-8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3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1항에 의거 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및 신설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15. 1. 1.

3. 직인등록 및 폐기내용

가. 등록직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규등록)

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등록일자	비고
재난관리과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2015.1.1.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2015.1.1.	
현장대응단	중랑소방서 현장대응단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2015.1.1.	
	중랑소방서 현장대응단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2015.1.1.	

나. 폐기직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폐기)

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폐기일자	비고
현장지휘대	중랑소방서 현장지휘대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2015.1.1.	
	중랑소방서 현장지휘대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2015.1.1	
신내119 안전센터	중랑소방서 신내119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2015.1.1.	
	중랑소방서 신내119안전센터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2015.1.1.	

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폐기일자	비고
구조대	중랑소방서 구조대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2015.1.1.	
	중랑소방서 구조대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2015.1.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4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제1항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1. 등록 직인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등록일자	비고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2015.1.1	
	공기업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4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시정 계획담당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 직인 등록사유 : 2015. 1.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 등록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및규격	인영	직인등록일자	비고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시정계획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2015.1.1	
	시정계획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4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 및 폐기 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직인등록 및 폐기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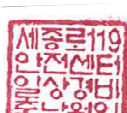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3823호,2011.10.09시행) 제9조 및 11조

2. 등록직인 및 등록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유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8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신규 등록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8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신규 등록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유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8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신규 등록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8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신규 등록

3. 폐기직인 및 폐기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사유
종로소방서 현장지휘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8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종로소방서 현장지휘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8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종로소방서 세종로119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8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종로소방서 세종로119안전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8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종로소방서 119구조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8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종로소방서 119구조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8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47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15. 1. 1. 조직개편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15.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폐기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서울특별시친환경교통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 시의 자체		'14.12.31.	2015.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서울특별시친환경교통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 시의 자체		'14.12.31.	2015. 1. 1. 조직개편

나.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서울특별시대기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 시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서울특별시대기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 시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5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 폐기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15. 1. 1. 조직개편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15.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폐기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관 문화산업과	서울특별시문화산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관 문화산업과	서울특별시문화산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나. 등록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화융합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화융합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1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 등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이엔쓰리환경

2. 대 표 자 : 김승우 (1958. 8. 22)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성수동1가 14-18)
서울숲 코오롱디지털타워 3차 B-104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업
5. 등록번호 : 제30호(등록일 : 2008.01.09)
6. 등록취소일자 : 2015. 01. 05
7. 전화번호 : 02-469-711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1항에 의거 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시행(2014. 11.29.) 회계관직 명칭 변경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15. 1. 6.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폐기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폐기일자	비고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서울특별시립 미술관경리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2015. 1. 6.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서울특별시립 미술관분임경리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2015. 1. 6.	

2. 등록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등록일자	비고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서울특별시립 미술관재무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2015. 1. 6.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등록일자	비고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서울특별시립 미술관분임재무관인	훈민정음체 2.0cm×2.0cm		2015. 1. 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 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하나그린건설(주)	박근수	2014.12.05	서울140071	강서구 우장산로 122, 202호 (화곡동, 우장산아인스빌)	550,000	신규등록
2	수목건설(주)	박혜랑	2014.12.08	서울140072	서초구 방배천로 132, 2층 (방배동, 서림빌딩)	510,000	신규등록
3	미래문정프로젝트(주)	차준영 홍종찬	2014.12.08	서울140073	송파구 새말로5길 1, 3층 (문정동)	5,000,000	신규등록
4	아산종합건설(주)	김영운	2014.12.17	서울140074	금천구 범안로 1130, 1511호 (가산동, 가산디지털밸류파이어)	500,000	신규등록
5	(주)페코리테일제1호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김경록	2014.12.03	서울080081	강남구 테헤란로 152, 퍼시픽자산관 리(주) 내(역삼동)	사업종료	폐업
6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광복(주)	김병욱	2014.12.12	서울120037	서초구 강남대로 331, 17층 (서초동)	사업종료	폐업
7	뉴원씨엠(주)	심재규 변상훈	2014.12.15	서울080450	영등포구 은행로 30, 603호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	사업종료	폐업
8	(주)중합건축사사무소명선엔지니어링	신양식 박명화	2014.12.18	서울110068	강남구 논현로28길 12	사업종료	폐업
9	(주)퍼스트건설	강의정	2014.12.24	서울130063	강남구 논현로86길 26, 4층 (역삼동)	사업종료	폐업
10	디엠씨씨프로젝트금융투자(주)	박장희	2014.12.31	서울130005	마포구 상암산로 48-6 (상암동)	사업종료	폐업
11	마제스타인베스트먼트어드바이저즈(주)	맹진태	2014.12.30	서울140027	중구 무교로 21, 12층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사업종료	폐업
12	케이알제이호개발전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황민호	2014.12.29	서울080044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비동 18층 (주)케이리츠앤파트너스 내	사업종료	폐업
13	지우산업개발(주)	박형국	2014.12.02	서울140030	서초구 효령로26길 9-3, 4층 (방배동, 세양빌딩)	300,000	전출 (경상남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8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의 신고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의 신고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내용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113305	2014. 12.4	현대오토에버(주) 박성근 110111-1935638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7(대치동)
2	112939	2014. 12.8	한선씨앤씨(주) 장홍식 110111-4532697	서울 광진구 구의로16길 11(구의동)
3	201051	2014. 12.24	자인통신(주) 김호경 110111-5557743	서울 마포구 백범로 13(노고산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동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02-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207	2014. 12.2	극동음향(주) 김상현 110111-1545932	서울 중구 장춘단로8길 26(광희동2가)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2	202208	2014. 12.2	(주)비엠시스솔루션 김시천 110111-3444124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4길 39, 2층(석촌동)
3	202209	2014. 12.2	(주)엘엔케이네트웍스 김광일 110111-4203123	서울 강남구 삼성로115길 20-13, 제비 01호(삼성동)
4	202210	2014. 12.8	포인트아이(주) 김세연 110111-1952567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63, 9층(광장동)
5	202211	2014. 12.8	바스코리아(주) 백강철 110111-1592321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9호(문래동3가)
6	202212	2014. 12.8	(주)제이원파트너스 정인규 110111-396912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801호(가산동)
7	202213	2014. 12.10	(주)엘비씨소프트 이육수 110111-3587198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11층(구로동)
8	202214	2014. 12.12	두승전력(주) 이인수 110111-311184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 1620호(마포동)
9	202215	2014. 12.12	(주)트루엔 안재천 110111-3161306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1108호, 1309호(구로동)
10	202216	2014. 12.17	(주)가우스솔루션 이병식 110111-5503457	서울 서초구 효령로60길 15, 402호(서초동)
11	202217	2014. 12.17	(주)에임투지 박홍준 110111-2994683	서울 강남구 학동로 52. 3층 (삼성동)
12	202218	2014. 12.24	(주)이도링크 신필순.권종만 110111-4914275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605호, 606호(구로동)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3	202219	2014. 12.24	한독컴퓨터(주) 박병수 110111-0915417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95 (평창동)
14	202220	2014. 12.24	한빛데이터통신 이광수 220-02-99232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10층-1023(수송동)
15	202221	2014.12. 24	(주)케이엠데이터 이강섭 110111-149993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 505-2(가산동)
16	202222	2014. 12.29	(주)네트웍리더 권철영 110111-1727861	서울 용산구 청파로20길 34, 22동 4층 1호(한강로2가)
17	202223	2014. 12.29	(주)파인원커뮤니케이션즈 한성현 110111-3088211	서울 서초구 서운로 138, 602호 (서초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 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7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39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회계관직 명칭 변경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14.12.3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폐기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폐기일자	사유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4.12.31	2015.1.1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4.12.31.	

나.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사유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5.1.1	2015.1.1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5.1.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7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직인 등록사유 : 2015. 1. 1. 조직개편

2. 직인 등록일자 : 2015.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가. 등록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등록일자	사유
복지건강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2015.1.1	2015. 1. 1. 조직개편
	인생이모작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15.1.1.	2015. 1. 1. 조직개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7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15. 1. 1. 조직개편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15.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폐기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폐기일자	사유
여성이족정책실 여성이족정책 담당관	여성이족정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5.1.1	2015.1.1조직개편 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여성이족정책실 여성이족정책 담당관	여성이족정책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5.1.1	

나.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사유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5.1.1	2015.1.1호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5.1.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7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 하고
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인영 및 등록일자

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유
일반회계 서울역사편찬원 재무관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2.0×2.0cm		2015.1.7	직제신설
서울역사편찬원 분임재무관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2.0×2.0cm		2015.1.7	
서울역사편찬원 물품관리관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2.0×2.0cm		2015.1.7	
서울역사편찬원 물품출납원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1.8×1.8cm		2015.1.7	
서울역사편찬원 지출원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2.0×2.0cm		2015.1.7	

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 유
서울역사편찬원징수관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2.0×2.0cm		2015.1.7	직제신설
서울역사편찬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1.8×1.8cm		2015.1.7	
일반회계서울역사편찬원수입금 출납원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1.8×1.8cm		2015.1.7	직제신설
서울역사편찬원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1.8×1.8cm		2015.1.7	
서울역사편찬원시사편찬과분임 물품출납원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1.8×1.8cm		2015.1.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7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업체 등록취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15년 1월 15일 ~ 2015년 2월 4일(20일간)
2.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게시판
3. 공고의 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통지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령	처분일자
1	서울120013	(주)한미에셋개발전문자기 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함천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5(삼성동)	부동산개발업 의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부존재, 전문인력 미충족) 미달	부동산개발 업법 제4조, 제25조	2014.12.15

연번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령	처분일자
2	서울110037	(주)베이스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박검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13(논현동)	부동산개발업 의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부존재, 전문인력 미충족) 미달	부동산개발 업법 제4조, 제25조	2014.12.15
3	서울110086	(주)한국자산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박병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6길 10, 2층 (역삼동, 성보빌딩)	부동산개발업 의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부존재, 전문인력 미충족) 미달	부동산개발 업법 제4조, 제25조	2014.12.15
4	서울070015	(주)이데아건설 (김계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삼성동)	부동산개발업 의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전문인력 미충족) 미달	부동산개발 업법 제4조, 제25조	2014.12.15
5	서울080286	청오건설(주) (김성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청담동)	부동산개발업 의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전문인력) 미달	부동산개발 업법 제4조, 제25조	2014.12.15

나. 등록증 반납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다.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라. 부동산개발업 제한 :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5호)

마.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02-2133-4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8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 집 자	소 재 지	모 집 목 적	모 집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4-101	인터내셔널 에이드 한국본부 (대표 김치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201호 (청담동,현대리버스텔)	○ 사회적 약자 지원, 자선사업 등 - 각종 재해발생 시 긴급 재해민 구 호, 복지시설 지원 등	500 (현금)	전국	'15.1.1~'15.12.31
						'15.1.1~'15.12.31
2014-102	(재)바보의 나눔 (대표 조규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4층 (명동2가,가톨릭회관)	○ 소외된 이웃 지원 - MBC 방송 프로그램 '나누면 행복' 과 함께 소외된 이웃 지원	180 (현금)	전국	'15.1.1~'15.12.31
						'15.1.1~'16.6.30
2014-103	(재)이랜드 (대표 이경준)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77, 2층 (창전동,이랜드빌딩)	○ 위기가정 지원 - 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770 (현금)	전국	'15.1.1~'15.12.31
						'15.1.1~'15.12.31
2014-18-1 (변경)	(재)바보의 나눔 (대표 조규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4층 (명동2가, 가톨릭회관)	○ 소외된 이웃 지원 - MBC 방송 프로그램 '나누면 행복' 과 함께 소외된 이웃 지원	99 (현금)	전국	'14.1.21~'14.12.31
						'14.1.21~'15.6.30
						(당초) 모집목표액 90,000천원 (변경) 모집목표액 99,900천원
2015-1	대한민국애국시민 연합 (대표 박정수)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5, 1006호 (인사동,하나로빌딩)	○ 장진호 전투 기념비설립 지원	200 (현금)	전국	'15.1.5~'15.6.30
						'15.1.5~'15.6.30
2015-2	(사)동물 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행당동)	○ 동물학대방지, 동물관련 인식개선 등의 동물복지증진	990 (현금, 물품)	국내 외	'15.1.6~'15.12.31
						'15.1.6~'16.12.31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5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8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 및 폐기 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등록 및 폐기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폐지

2. 등록직인 및 등록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유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신규 등록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신규 등록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부서 신설로 인한 신규 등록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부서 신설로 인한 신규 등록

3. 폐기직인 및 폐기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사유
강북소방서 대응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강북소방서 대응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강북소방서 번동119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강북소방서 번동119안전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강북소방서 119구조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강북소방서 119구조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8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사유 : 2015. 1. 1. 조직개편

2. 직인 등록일자 : 2015.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내용
가.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사유
여성이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가족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2015.1.1	2015.1.1조직개편 으로 인한 부서 신설
	가족담당관 본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2015.1.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8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15. 1. 1. 조직개편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15.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폐기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폐기일자	사유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15.1.1	2015.1.1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15.1.1	

나.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사유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15.1.1	2015.1.1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15.1.1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8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15. 1. 1. 조직개편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15.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폐기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서울특별시역사도심관리과일상 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15.1.1.	2015.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서울특별시역사도심관리과분임 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15.1.1.	2015. 1. 1. 조직개편

나.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서울특별시역사도심재생과일상 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15.1.1.	2015.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서울특별시역사도심재생과분임 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15.1.1.	2015. 1. 1. 조직개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8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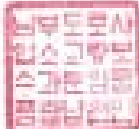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2. 직인 폐기 일자 : 2015.01.0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내용
가. 폐기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폐기일자	비고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남부도로사업소 교량보수와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2.0cm×2.0cm		2015.01.01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남부도로사업소 교량보수와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2.0cm×2.0cm		2015.01.0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8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건설안전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 직인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및규격	인영	등록일자	비고
도시안전본부 건설안전과	건설안전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2015.1.1	
도시안전본부 건설안전과	건설안전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2015.1.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8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업체명 : 대운환경(주)
2. 대표자 : 김우진
3.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3가길 49(☎ 02-512-3282)
4. 업종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31호
6. 지정일자 : 2014. 12. 2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8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 및 폐기 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직인등록 및 폐기사유
 -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직인등록 및 폐기
2. 등록직인 : 4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유
은평소방서재난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	조직개편 (기존 과의 명칭이 변경)
은평소방서재난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	"
은평소방서현장대응단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	조직개편 (현장대응단 신설)
은평소방서현장대응단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	"

3. 폐기직인 : 6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유
은평소방서대응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	조직개편 (기존 과의 명칭이 변경)
은평소방서대응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	“
진관119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	조직개편 (기존 119안전센터 폐지)
은평소방서 진관119안전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	“
은평소방서119구조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	조직개편 (기존 119구조대 폐지)
은평소방서119구조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89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조영철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일시 : 2014-11-17 05:27 장소 : 시조사 앞 부근 도로 내용 : 광주89바9431(카고)차량 폭 0.27미터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5.02.28.

나.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9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15. 1. 1. 조직개편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15.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폐기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서울특별시교육협력국장인	2.4cm×2.4cm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서울특별시 학교지원과일상 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서울특별시 학교지원과분임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나.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 책관인	2.4cm×2.4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교육정책담당 관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교육정책담당 관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9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법률
지원담당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등록 직인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및규격	인영	등록일자	비고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2015.1.1	
	법률지원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9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폐기 직인 (폐기사유 : 2015.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및규격	인영	폐기일자	비고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창업취업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2014.12.31	
	창업취업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2. 등록 직인 (등록사유 : 2015.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및규격	인영	등록일자	비고
경제진흥본부 창업지원과	창업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2.0cm ² X 2.0cm ²		2015.01.01	
	창업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9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15. 1. 1. 조직개편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15.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폐기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평생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평생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나.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서울특별시평생교육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서울특별시평생교육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5.1.1.	2015. 1. 1. 조직개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97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도시공간개선단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직인등록(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등록일자	비고
도시공간 개 선 단	도시공간개선단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2015.1.1	
	도시공간개선단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9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등록 및 폐기사유 : 2015. 1. 1. 조직개편
2. 등록직인 및 등록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유
도봉소방서 난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조직 개편으로 인한 신규등록
도봉소방서 난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조직 개편으로 인한 신규등록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유
도봉소방서 장대응단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조직 개편으로 인한 신규등록
도봉소방서 장대응단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조직 개편으로 인한 신규등록

3. 폐기직인 및 폐기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사유
도봉소방서 장지휘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9.	조직 개편으로 인한 폐기
도봉소방서 현장지휘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9.	조직 개편으로 인한 폐기
방학119 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9.	조직 개편으로 인한 폐기
도봉소방서 방학119 안전센터분임물품 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9.	조직 개편으로 인한 폐기
도봉소방서 119구조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9.	조직 개편으로 인한 폐기
도봉소방서 119구조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1.9.	조직 개편으로 인한 폐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0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승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통지

연번	등록번호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1	200490	태화강제산업(주)	문영학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15층(정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3인 부족)	등록취소 (2014.12.30.)
2	200382	(주)플러스인텍	인진환	서울 서초구 방배로23길 14, 2층(방배동, 영은빌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1인 부족)	등록취소 (2014.12.30.)
3	111286	어울림네트웍스(주)	설진연	서울 서초구 논현로 153, 1층(양재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2인 부족)	등록취소 (2014.12.30.)
4	150656	(주)에스피아이컴	이병열	서울 도봉구 도당로 55, 3층(방학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2인 부족)	등록취소 (2014.12.30.)
5	201694	(주)에스에스씨	이상식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실효, 기술계1인 부족)	등록취소 (2014.12.30.)
6	111070	(주)정진유티씨	유근종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711호(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	등록취소 (2014.12.30.)
7	201650	서서울텔레콤(주)	이학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34, 3층(상산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3인, 기능계1인 부족)	영업정지 3개월 (2014.12.29.~2015.3.28)
8	201279	(주)나노트로닉스	한진호	서울 강남구 논현로 748, 5층(논현동, 세화빌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3인, 기능계1인 부족)	영업정지 3개월 (2014.12.29.~2015.3.28)
9	111576	(주)아진엔지니어링	도만성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606호(구로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개월 (2014.12.29.~2015.3.28)
10	110341	(주)에브리텔레콤	맹우승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401호(구로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2인 부족)	영업정지 3개월 (2014.12.29.~2015.3.28)
11	112578	하이테크시스템(주)	장순택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603호(가산동, 코오롱테크노밸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1인, 기능계1인 부족)	영업정지 3개월 (2014.12.29.~2015.3.28)
12	111461	(주)유니코이엔지	박근수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2길 16, 3층, 4층(내발산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	영업정지 3개월 (2014.12.29.~2015.3.28)
13	200965	(주)젤스타	문웅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06호(구로동, 에이스트원2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실효)	영업정지 3개월 (2014.12.29.~2015.3.28)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5조,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제68조의 3(청문),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
3. 공고기간 : 2015. 1. 15. ~ 2015. 3. 28.
4. 문의사항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남궁순옥(☎02-2133-2897, 전자우편 ngsoor@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03호

[서울특별시 민선6기 조직개편안 반영] 공인등록 공고

2015.01.01. 민선6기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공인을 등록·폐기하고자,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공인의 등록),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의 등록 및 폐기내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등록
- 공인등록 사유 : 민선6기 조직개편안 반영
 - 공인종류 :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공인등록 일자 : 2015.01.15.
 - 최초 사용일자 : 2015.01.15.
 - 공인의 등록 및 폐기 내역

기관·부서명	구분	등록		폐기	
		일반	전자이미지	일반	전자이미지
경제진흥본부	이름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장인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장의인	
	규격	2.7cm×2.7cm		2.7cm×2.7cm	
	인영		없음		없음
복지건강본부	이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장인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장의인	
	규격	2.4cm×2.4cm		2.4cm×2.4cm	
	인영		없음		없음

기관·부서명	구분	등록		폐기	
		일반	전자이미지	일반	전자이미지
문화체육관광본부	이름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인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인	
	규격	2.4cm×2.4cm		2.7cm×2.7cm	
	인영		없음		없음
도시안전본부	이름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장인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장인	
	규격	2.7cm×2.7cm		2.7cm×2.7cm	
	인영		없음		없음
주택건축국	이름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장의인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인	
	규격	2.4cm×2.4cm		2.4cm×2.4cm	
	인영		없음		없음
서울역사편찬원	이름	서울역사 편찬원장인		신설부서로서, 폐기공인 없음	
	규격	2.1cm×2.1cm			
	인영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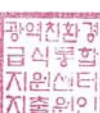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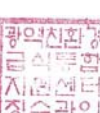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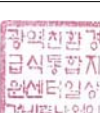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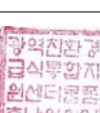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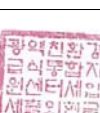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15. 1. 1. 조직개편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15.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폐기 직인

소관부서	직 인 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 인 폐기일자	사유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장의인	2.1cm×2.1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 1. 1	2015.1.1조직개편 으로인한 부서 폐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분임경리관의인	2cm×2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 1. 1	2015.1.1조직개편 으로인한 부서 폐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경리관인	2cm×2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 1. 1	2015.1.1조직개편 으로인한 부서 폐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지출원인	2cm×2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 1. 1	2015.1.1조직개편 으로인한 부서 폐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징 수관인	2cm×2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 1. 1	2015.1.1조직개편 으로인한 부서 폐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 1. 1	2015.1.1조직개편 으로인한 부서 폐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 1. 1	2015.1.1조직개편 으로인한 부서 폐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물품출납원의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 1. 1	2015.1.1조직개편 으로인한 부서 폐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		'15. 1. 1	2015.1.1조직개편 으로인한 부서 폐지

나.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 인 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 인 폐기일자	사유
평생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15.1.1	2015.1.1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평생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15.1.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06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 열람공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63-1번지 외 11필지상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도로관리과 및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도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2133-8413, fax : 2133-0739)
서울시청 도로관리과(☎ 2133-8155, fax : 2133-0765)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2627-1554, fax : 2627-2285)
금천구청 도로과 (☎ 2627-1805, fax : 2627-2291)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 취지

- 현 남부도로사업소 주변지역의 도시관리적 여건변화로 금천구 시흥3동 963-1 외 11필지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자 함.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사항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남부 도로사업소	금천구 시흥3동 961-5외 8필지	-	증)2,440.7	2,440.7	-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건축물의 범위 결정 조서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28m이하)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사항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 원	소공원	금천구 시흥3동 963-1 외 3필지	-	증)2,163	2,163	-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마. 관련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07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

『경북공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고시 전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공고 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2133-5578)
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내용

가. 제한 대상지

- (1)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서측 일대(체부동 외 14개동)
- (2) 면적 : 582,297㎡

나. 제한사유

- (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
 - (2) 지역 특성(환경·경관·미관·역사문화시설 등)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수립
 - (3)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저층주거지 및 한옥밀집지로서의 경관특성 훼손 우려
- 다.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경우 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

라. 제한대상

- (1)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2)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 (3)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4)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제3항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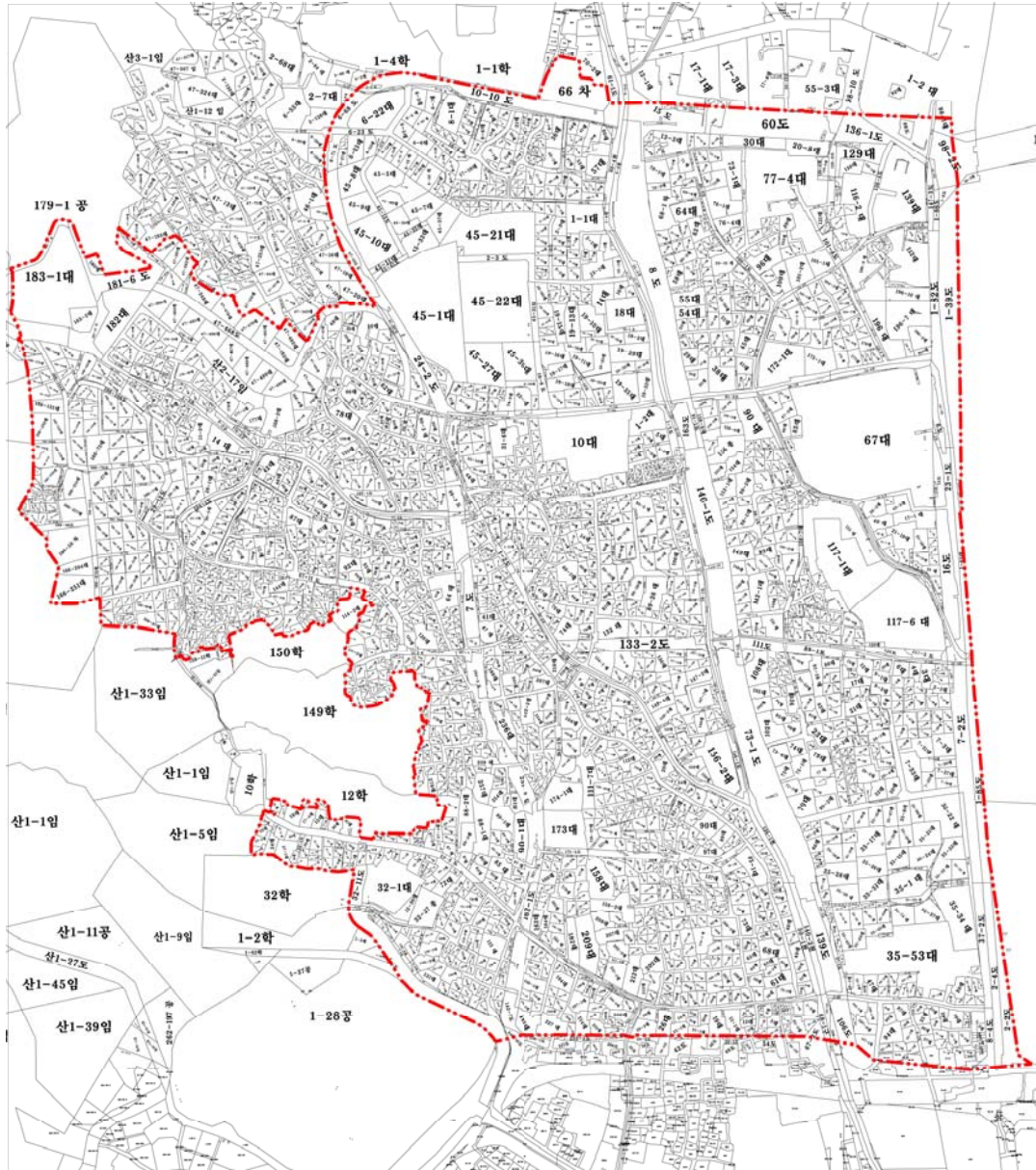
마. 제한 예외대상

- (1)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규정에 의해 행정청 허가를 받은 사업
- (2)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분
- (3)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사항
- (4) 주거용도(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 및 대수선(3층 이상의 신축·증축 제외)
- (5) 한옥의 건축 및 대수선
- (6) 서울시 및 종로구에서 발주하는 시설물의 건축 및 대수선
- (7)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 ②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이 필요한 경우
 - ③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

바. 관계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 비치도서와 같음)

4. 기타사항 : 도면 열람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2133-557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 형 도 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0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직인등록 및 폐기사유

-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3823호, 2011.10.09 시행) 제9조 및 11조

2. 등록직인 및 등록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유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2 예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2 예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2 예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2 예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09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 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양아록 (養兒錄)	1점	32.0cm×24.0cm	1551년 ~1566년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6가 (이택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 卷上)	1점	34.0×20.9cm	1496년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한신휴아파트 (임흥재)

○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1) 양아록(養兒錄)

『양아록』은 목재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이 1551년(명종 6)부터 1566년(명종 21)까지 16년간의 손자 양육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희귀한 자료임. 이 책을 통해 조선 중기 양반집안에서의 아동교육과 생활풍속 등을 이해할 수 있어 생활사, 미시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므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 卷上)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한국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수행의 지침서로, 이 언해본은 성종이 승하하자 그 명복을 빌기 위해 성종의 계비(繼妃)인 정현대비(貞顯大妃)와 어머니인 인수대왕대비(仁粹大王大妃)가 1495년(연산군 1) 원각사(圓覺寺)에서 대대적으로 불경을 찍어낸 이듬해인 1496년(연산군 2) 한글 활자를 만들어 찍어 낸 것임.

내당고의 지원을 받아 정성껏 목활자를 만들어 찍어낸 책이기 때문에 활자체가 바르고 가지런하며 먹의 빛깔도 진하고 선명함. 조선왕실의 불교신앙 및 한글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함.

2.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① 전화 : (02) 2133-2640 ② 팩스 : (02) 768-8873

③ 우편 : (100-813)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시청별관 1동 4층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① 전화 : (02)2241-2652 ② 팩스 : (02) 2241-6536
 - ③ 우편 : (136-706)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 5가)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별첨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양아록(養兒錄)』

『양아록(養兒錄)』은 묵재(默齋) 이문건(李文健, 1494-1567)이 58세 되던 해에 태어난 손자 이수봉(李守封, 1551-1594)이 16세(1566)가 될 때까지의 양육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놓은 자료이다.

『양아록』은 1551년부터 1566년까지 16년간의 양육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희귀하고도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당시의 사대부가의 아동교육과 생활풍속 등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교육에 대한 자료가 거의 전하지 않는 조선중기 이 분야의 사적인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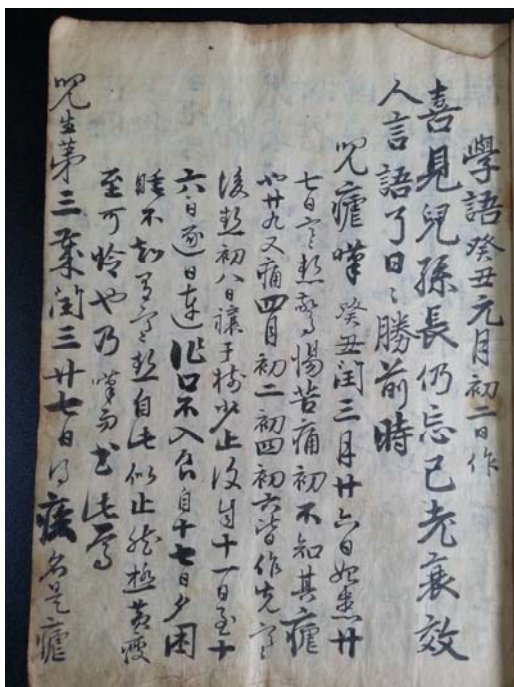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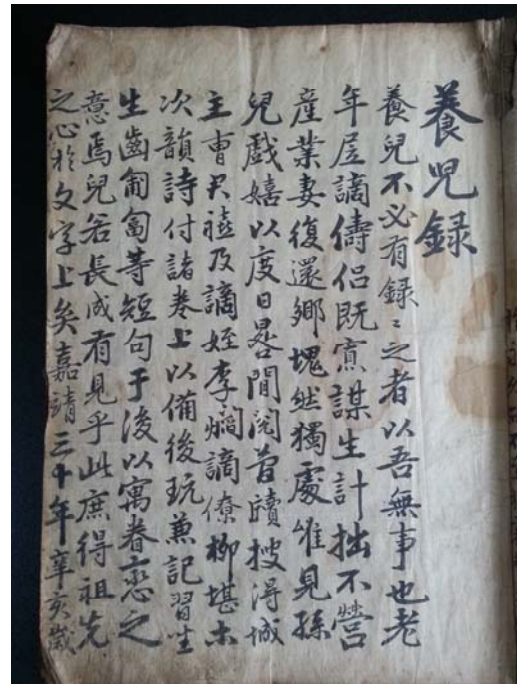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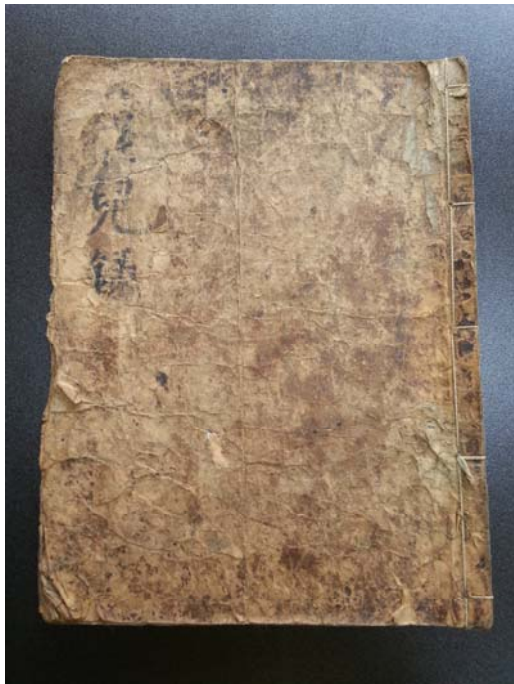
구성은 서문·율사·산문·축시, 양아의 내용, 음주·가족·세계(世系)·축원문·자책하는 글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양아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일기 중에서 20여 수는 보양(保養), 나머지는 훈육(訓育)과 학습(學習) 등과 관련되므로 서문, 축원문과 가족에 관한 글 등을 제외하고 보양, 훈육, 학습 등 세 영역으로 나누기도 한다. 내용은 손자가 태어났을 때와 성장과정, 질병과 사고 및 교육내용 등을 솔직한 심정으로 적어 놓았다.

부분적으로 누습(漏濕)의 흔적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묵재선생문집(默齋先生文集)』 권7에도 동일한 서명으로 수록되어 있는 이 자료는 이상주 박사가 처음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19집(1996)에서 소개한 뒤 자신이 국역하여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영인 원문을 근거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체로 연구의 관점은 조선중기의 전통 육아, 교육적 의의, 아동에 대한 인식 등이었다. 저자의 육아관에 대해서는 “유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육아관을 펴려하고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거나 “효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 입신양명하길 바라는 조선시대 사대부 가정의 교육구조가 잘 드러나고 있다.”거나 “조부모가 손자, 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격대교육(隔代教育)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 책은 조선중기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체벌, 성장과 치료 등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2009년에 KBS 역사다큐멘터리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양아록』은 당대를 대표할 수 있는 육아기록이 아니라 한 가정의 조부가 자유롭게 쓴 집안의 육아일기이다. 또 동일한 이름으로 저자의 문집인 『묵재선생문집(默齋先生文集)』 권7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적 지정가치는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금 당장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아록 사진자료



○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 卷上)』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한국불교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수행의 지침서이다. 선종의 요체인 돈오의 수행방법이 바로 이 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경(經)일 수 없고, 조사어록(祖師語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육조단경은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이 “진여(眞如 : 불변하는 본체) 자성(自性 : 본래의 자기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서 육근(六根 : 眼, 耳, 鼻, 舌, 身, 意를 통해 내는 인식의 근본)이 비록 견문각지(見聞覺知 : 보고 듣고 깨달아 앎)하지만 만상(萬象)에 물들지 않고 진성(眞性)이 항상 자재(自在)하다”는 문구에서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고 항상 단경을 스승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눌은 혜능이 머물던 조계산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 머물던 송광사(松廣寺)의 산명(山名)까지 조계산으로 바꾸었다. 이 책은 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종보본(宗寶本)·덕이본(德異本)·도원서대승본(道元書大乘本)·흥성사본(興聖寺本)·돈황본(敦煌本) 등 5종의 이본(異本)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전래하고 있는 육조단경은 모두가 덕이본(德異本)으로 권수(卷首)에 덕이(德異)의 서문이 한결같이 등장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은 오법전의(悟法傳衣) 등 10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은 오법전의(悟法傳衣)와 석공덕정토(釋功德淨土) 등 2장(章)만이 실려 있다.

이 판본은 1496년에 한글 활자를 만들어 찍어 낸 인경 목활자본이다. 성종이 승하하자 명복을 빌기 위해 정현대비(貞顯大妃)와 인수대왕대비(仁粹大王大妃)가 1495년(연산군 1) 원각사(圓覺寺)에서 대대적으로 불경을 찍어 낸 이듬해에 한글 활자를 만들어 찍어 낸 것이다.

이때의 인경(印經)은 임금이 은밀히 내탕고(內帑庫 : 왕의 개인 재물을 넣어두는 곳간)에서 비용을 내어 도와준 것이다. 국역본 『법화경』·『능엄경』 각 50부를 비롯하여 『금강경육조해(金剛經六祖解)』·『반야심경(般若心經)』·『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각 60부, 『석보상절(釋譜詳節)』 20부, 그리고 한자본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50부와 『육경합부(六經合部)』 30부였다. 이들 경(經)에는 동일한 내용의 발문을 붙였는데, 그 발문은 새로 목활자를 만들어 찍어냈다. 이어 1496년에는 한글 활자를 만들어 국한문본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과 함께 『진언권공(眞言勸供)』을 각각 300부 찍어냈는데 이 판본은 그 가운데 전래된 책이다. 대비들이 내탕고의 지원을 받아 정성껏 목활자를 만들어 찍어낸 책이기 때문에, 활자체가 바르고 가지런하며 먹의 빗깔도 진하고 선명하여 인쇄가 깨끗하다.

1496년(연산군2)에 임금이 내탕금을 내어주어 대비들에 의해 한글 활자를 만들어 찍어 낸 인경 목활자본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선왕실의 불교신앙 및 한글연구에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나 권상(卷上), 권중(卷中), 권하(卷下) 중 권상(卷上)만 있어 완결성이 떨어지므로 우선 국가 지정문화재보다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 사진자료



▲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의 약서(略序) 부분



▲ 육조대사법보단경 본문인 오법전의(悟法傳衣) 제1(第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 및 폐기 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등록 및 폐기사유

-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3823호, 2011.10.09시행) 제9조 및 11조

2. 등록직인 및 등록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유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5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신규 등록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5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신규 등록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5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신규 등록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5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신규 등록

3. 폐기직인 및 폐기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사유
노원소방서 대응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5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사유
노원소방서 대응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5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하계119안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5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노원소방서 하계119안전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5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노원소방서 119구조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5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노원소방서 119구조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15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폐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1호

클린신고센터 신고금품 공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우리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진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돌려드림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항 중 제공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되돌려 주지 못한 아래 금품에 대한 제공자를 찾고 있사오니, 해당 금품의 제공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자 미확인 금품 내역

신고일시	미확인 금품 내용
2014-08-22	합죽선 (100,000원 상당)
2015-01-02	벨트 (250,000원 상당)

1. 문 의 :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클린신고센터(02-2133-3086)

2. 기 한 : 2015. 1. 30.(금)

※ 해당 금품 반환 시, 제공자에 대해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며 기한 내에 제공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위 금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에 의거 세입처리 등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의 직인을 등록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직인등록 사유

-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한옥조성과 신설

2. 등록직인 및 등록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사유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15.01.01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규 등록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자체 1.8cm*1.8cm		2015.01.01	'15.01.01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규 등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4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공고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계획의 개요

- 가. 사업명 :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 나.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53-1번지 일대
- 다. 사업규모 : 101,510.0㎡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2. 공개기간 및 방법

- 가. 공개기간 : 2015. 1. 15.(목) ~ 2015. 1. 28.(수)(14일간)
- 나. 공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
-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제출
- 나. 제출방법 : 별첨 서식으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원조성과(☎ 02-213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15. 01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지구 주변의 경우 월드컵공원(노을/하늘/난지 생태공원), DMC(Digital Media City), 월드컵경기장, 평화의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친환경생태, 첨단산업 등이 집약된 상징적 장소임.
- 난지도 일대의 생태적 도시공간 재생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종료 시점부터 13년간 방치되어 (2000년 석유비축기지 이전) 임시 버스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시민을 위한 가치 있는 활용방안 등에 대한 2012년 9월부터 지속적인 논의 및 검토를 시행함.
- 따라서, 현재 되어 있는 임시시설로 이용 중인 석유비축기지를 주변지역과 연계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재생을 주제로 하는 시민의 장소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의 거점, 창의적 활용방안 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음.
- 현재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계획지구를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로 변경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1.2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의 “2.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제1장 계획의 개요

1.3 계획의 추진경위

- 2012. 09. 14 : 석유비축기지 활용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착수
- 2012. 09 ~ 2013. 01 : 석유비축기지 활용 논의
- 2013. 03. 07 :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 2013. 05. : 마포 석유비축기지 기본방향 설정
- 2013. 05. 28 : 시민공개 포럼
- 2013. 06. 15 ~ 20 : 현장설명회(총 6회)
- 2013. 12. : 마포 석유비축기지 기본계획 및 공보방향 결정
- 2014. 01. :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공모 추진
- 2014. 10. 27 :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 착수
- 2014.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1.4 계획의 내용

가. 공간적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53-1번지 일대
- 면적 : 101,510㎡

나. 시간적범위

- 2012년 09월 ~ 2016년 12월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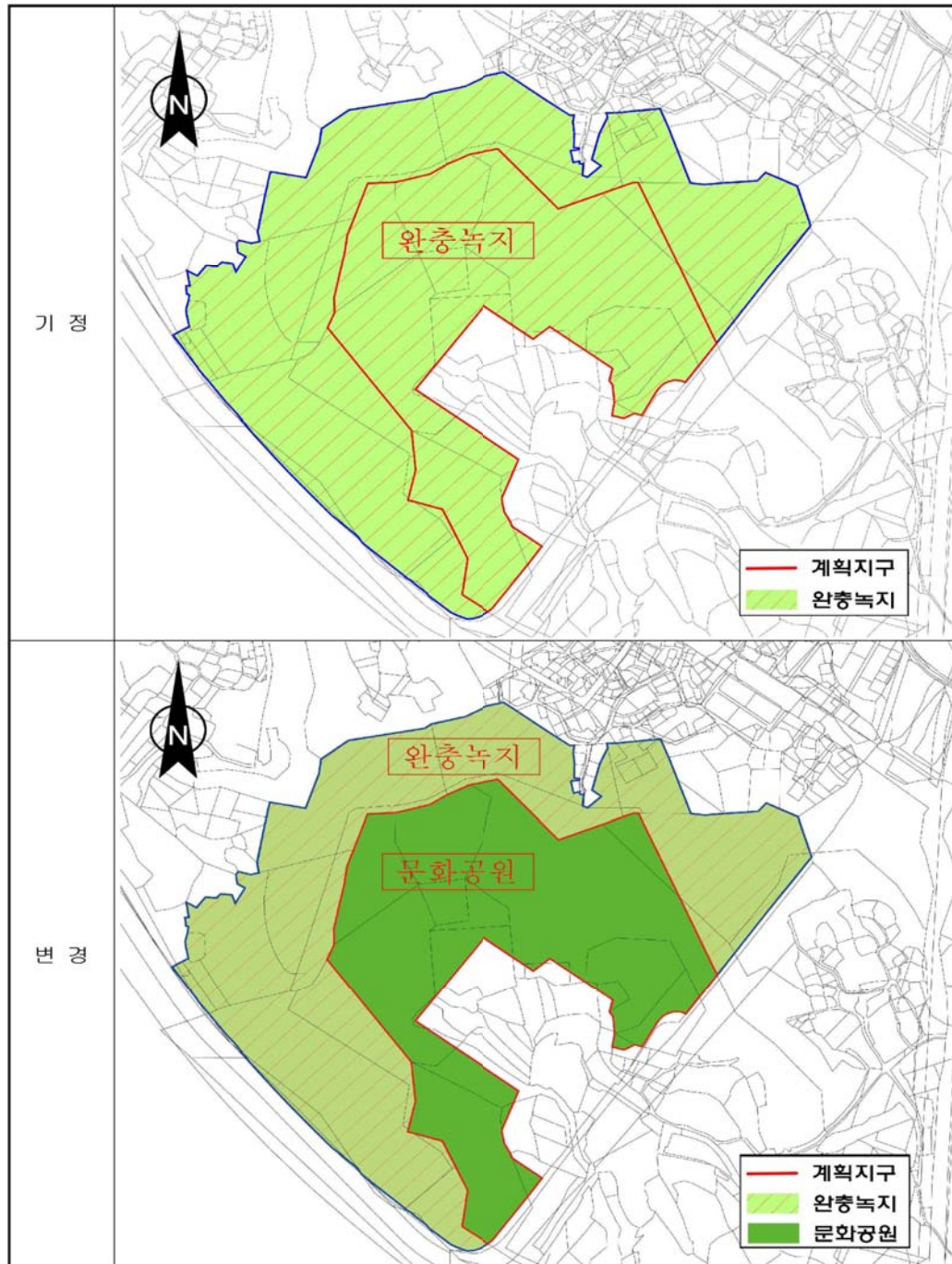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 녹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산 53-1 일대	227,778.0	감)101,510.0	126,268.0	서고제29호 (`76.3.24)	

(2) 공원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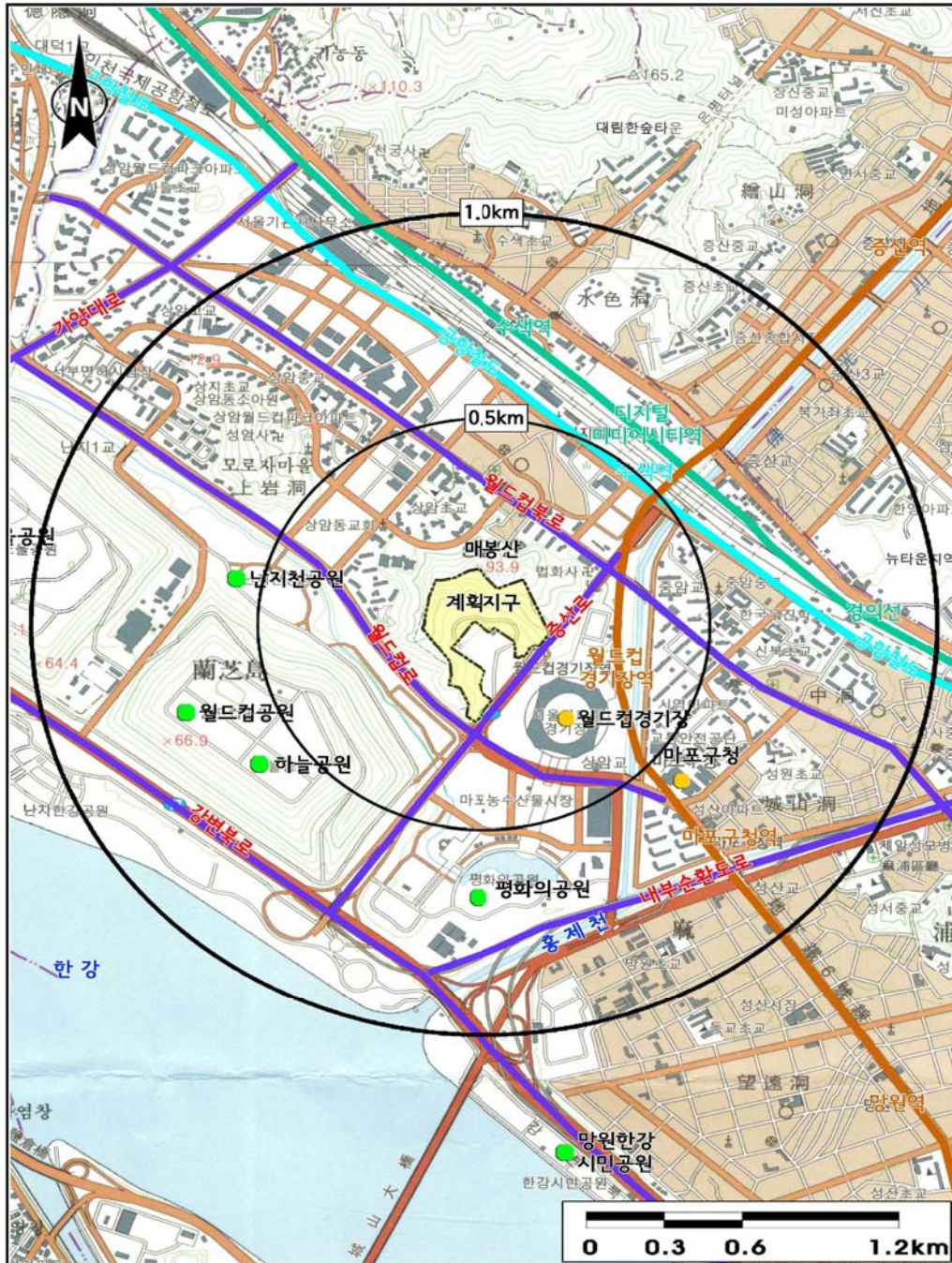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원	문화 공원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산 53-1 일대	-	증)101,510.0	101,510.0	-	

제1장 계획의 개요



<그림 1-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제1장 계획의 개요



<그림 1-2> 위치도

제1장 계획의 개요



<그림 1-3> 계획지구 현황도

제2장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제2장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3-171호」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현황조사와 자료조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역개황을 파악한 후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 하여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절차를 이용하여 추출함.

2.1 평가항목 선정 및 평가 방법

가. 중점평가 항목

- 중점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평가항목과 주변 현황을 반영하여 환경영향을 주는 환경영향 항목을 중점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평가항목과 선정사유를 아래에 제시함.

<표 2-1> 중점항목 결정

검 토 항 목		선 정 사 유	평 가 방 법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동식물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서식지 변화여부 ◦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의 훼손 및 동·식물상의 변화여부	◦ 사업시행 전·후의 동·식물상 변화 예측 및 대책 ◦ 현존 식생도 및 녹지자연도 변화제시 ◦ 동·식물상의 종의 분포상황, 종다양도 산출 및 보전대책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 계획지구의 지형·지질 특성 파악 ◦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 지형변화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토공량 예측 및 골재원 수급 계획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 경관 변화검토 및 대책
	수환경의 보전(수질)	◦ 토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용하천 수질변화	◦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대책 ◦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 용수공급계획, 우·오수처리계획 검토

제2장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계 속>

검 토 항 목		선 정 사 유	평 가 방 법
생활 환경의 안정성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 공사시 장비운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예측 및 대책 ◦ 연료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량 검토
	소음·진동 환경기준의 부합성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투입에 의한 소 음·진동 발생	◦ 공사장비 가동시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대책 ◦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영 향예측 및 대책
	자원·에너지순환의 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공사인부 및 장비투 입, 지장물 철거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편입 및 토지이용형태 변화	◦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 계획 수립

나. 현황조사항목 설정 및 제외항목

- 본 사업의 특성과 환경상 영향이 경미하거나 타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켰으며,
- 현황조사항목과 사업시행 시 작·간접적으로 영향이 미미하여 제외시킨 항목에 대한 사유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2> 현황조사항목

항 목		선 정 사 유	평 가 방 법
현황 조사 항목	기 상	◦ 계획지구 주변 기상 현황 파악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 활용	◦ 계획지구 주변 기상청자료 및 연보의 통계 분석
	토 양	◦ 사업지역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	◦ 현지실측 및 자료조사
	인 구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 변화 파악	◦ 사업계획내용 및 기초자료 파악

제2장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표 2-3> 제외항목

항 목		선 정 사 유	평 가 방 법
제외 항목	악 취	◦ 악취유발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없음	-
	해양환경	◦ 해양과 인접하지 않아 영향 없음	-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영향 없음	-
	일 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영향 없음	-
	주 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영향 없음	-
	산 업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영향 없음	-
	전파장해	◦ 지구내 전파장해 유발시설 없음	-
	위생공중 보건	◦ 지구내 대기, 악취, 수질, 소음·진동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유발시설 없음	-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마포석유비축기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문화공원)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비 고
자 연 환 경 의 보 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 사업시행으로 인한 야생 동식물 영향검토 ◦ 계획지구내 임상지역에 대한 녹지자연도 등급 판정 및 영향검토	계획지구 장축의 2배 동식물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주요 정맥 현황 검토 ◦ 공사시 잘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가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지역 ◦ 계획 지구 및 주변지역을 답사 및 문헌을 통하여 파악한 후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지질, 자연환경자산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공원 계획에 따라 주변 경관에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경관
	수환경의 보전	◦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 및 운영시 비점오염 물질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인근수계 수질 (수리수문)

제2장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비 고
생 활 환 경 의 안 정 성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예상 - 운영시 연료사용 및 연료사용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영향 - 사업지구 내 연료사용 및 에너지 이용시설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예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0.5km이내)	대기질
	토 양	공사시 지장물 철거 및 건설장비 가동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토 양
	소음·진동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의 소음·진동 영향 검토 - 운영시 차량통행 의한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0.2km이내)	소음진동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발생지역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지역	계획지구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 회 경 제 환 경 과 의 조 화 성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요소 변화예측 - 개발밀도적정성, 공원·녹지 확보 적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인구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등 사회·경제환경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인구

제2장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그림 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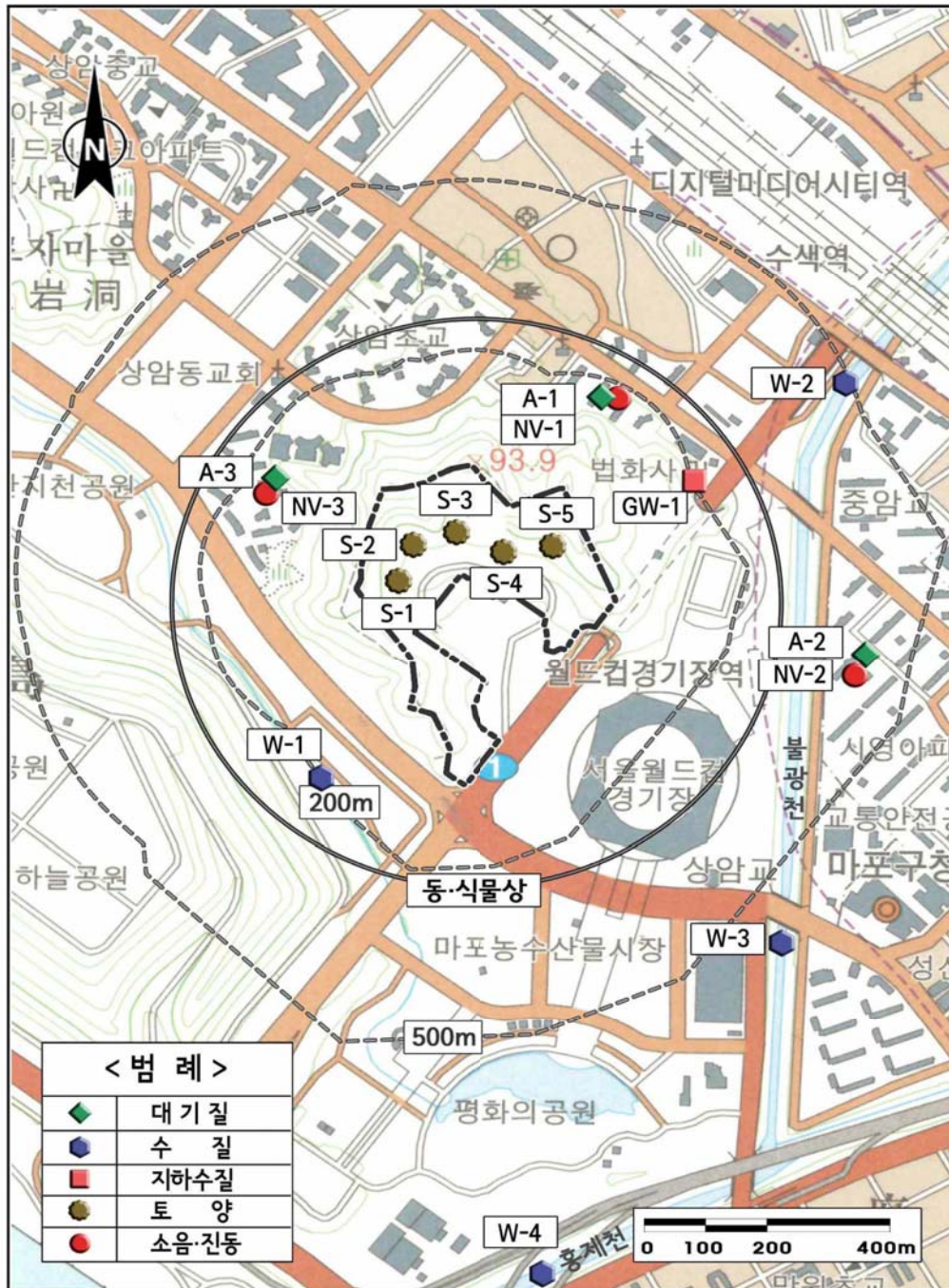
제3장 환경현황 조사계획

제3장 환경현황 조사계획

3.1 환경현황 조사계획

항 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조사항목
대기질	3개소	1회 조사 (3일연속)	PM-10,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
수 질	4개소	1회 조사	pH, BOD, SS, DO,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 ⁺⁶ , ABS,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지하수질	1개소	1회 조사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Pb, F, As, Se, Hg, CN, Cr ⁺⁶ , NH ₃ -N, NO ₃ -N, Cd, 보론, 페놀, 다이아지논, 파타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토 양	5개소 (탱크 주변)	1회 조사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Phenol,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
동 · 식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장축2배 범위	1회 조사	동물상, 식물상
소음 · 진동	3개소	1회 조사	소음도 : 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도 : 주간 2회, 야간 1회

제3장 환경현황 조사계획



〈그림 3-1〉 환경현황 조사계획

제4장 주민의견수렴계획

제4장 주민의견수렴계획

4.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개요

- 공개기간 : 14일 이상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 게재
- 공개내용 :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4.2 주민의견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후 20일 이내 서울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

- 본 사업의 주관 행정기관인 서울시 홈페이지와 일반일간신문(전국)과 지역신문 공고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 서울시 홈페이지에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공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람장소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요약서(10쪽 내외)를 별도로 작성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 공람기간 : 신문공고일 부터 14일 이상

라.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수렴 할 계획임.
- 주민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시 기한인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공청회 개최요구가 있고, 개최요구에 대한 법적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제4장 주민의견수렴계획

마. 주민의견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제출
 - 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서울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토록 하겠음.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안건 :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평가협의회에 관한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 심의위원 위촉 : 서울시 공원조성과장 오순환 위원장 외 7명
- 협의회개최여부 : 서면심의

<표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현황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분 야	비고
위원장	서울시 공원조성과	과장	오순환	소속기관	
위원	서울시 공원조성과	생활공원팀장	유영봉	소속기관	
위원	서울시 환경정책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소속기관	
위원	서울시 시설계획과	주무관	양승각	소속기관	
위원	마포구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한광수	관계기관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차도현	협의기관	
위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영	관계전문가	
위원	주민대표	주민자치위원장	이종태	주민대표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5.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

□ 서울시 공원조성과 생활공원팀장 유영봉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관 의 건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관련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포함하여,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검토하기 바람.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별도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석유비축기지를 감안하여 토양항목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사업시행후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검토 및 제시하기 바람,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에 대한 영향 여부를 분석 및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푸른도시국 업무추진지침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청취 방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기 바람.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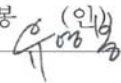
6. 기 타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관련 별도 의견은 없으며, 평가준비서 관련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2014. 12. .

심의위원

유 영 봉

(인)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 서울시 환경정책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준비서)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에너지 절감 및 자립률 확보를 위해 에너지 생산시설(신·재생에너지, 자가열병합발전 시설 등) 및 LED조명 설치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 신규로 조성하는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차 등)의 우선 주차구역 및 인프라를 확보하여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마련 바람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완충녹지대의 훼손이 발생하므로 문화공원 조성시 자연지반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건물 벽면, 옹벽, 사면 등 벽면녹화가 가능한 지역에 녹화를 계획하여 옥외공간의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을 검토 바람
- 기존 시설(석유비축기지)의 경우 탱크 및 주변부지의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 바람
- 상암초등학교 등 주변 경운시설에 대한 소음영향을 고려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2014.12.

심의위원 우종학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서울시 시설정책과 양승각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지형순응형 개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순환도로에서 탱크로 접근하는 일부 보행로가 지하터널로 계획됨에 따라 지하수 유출로 인한 터널상부 식생 영향, 지하수위 저하와 지반붕괴 등의 환경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평가 시 적절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해 보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3. 대안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항목 중 “지형 보전”의 세부 검토사항으로 지하공간 계획으로 인한 지하수 유출 및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영향예측을 추가검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의견 없음”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의견 없음”

2014. 12. .

심의위원 양 승 각 (인)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 마포구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한광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공원화에 따른 녹지의 연결성 단절이나 동식물의 서식기반을 교란하는 행위는 최소가 되도록 하며, 도시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광역적 해석이 요구됨.
- 복측사면 분수령을 경계로 고밀도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어 공사 시 소음, 분진의 영향 최소화 및 향후 공원조성 완료 후 주거지와 소음 저감 방안을 강구되어야 함.
- 현재의 주차장은 환경오염 유발 시설로 최소한의 필요 주차부지만 존치 시키고, 공원화와 연계하여 녹지로 조성하는 등 오염저감 방안 강구가 필요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자연생태환경(동식물 영향 예측)은 사업지구와 한강, 난지천공원등 광역적 도시 생태축 개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함.
 - 현지 조사 시 동식물의 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정밀조사가 필요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기존 산림은 녹지로 존치를 원칙으로 하며, 산림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이용시설을 확충하되 원지형을 훼손하는 시설은 최소로 도입.
3. 대안
 - 현재의 주차장은 환경오염이 저감 될 수 있도록 최소부지만 존치시키고 녹지형태로 조성하되, 아스콘과 CON'C 포장재는 골재의 재활용 처리방안이 요구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대상지 남측을 통과하는 도로의 교통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제시되어야함.
 - 기존 수목의 전수조사 후 이용계획을 수립
(기존수목 List 작성, 이식수목 선정 등)
 - 여름철 우기시 강우량을 측정하여 침수면적과 우수의유량, 유하속도등을 조사 하여 조성 후 시설등에 피해가 없도록 배수체계를 수립.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업내용 공람 필요.
- 주민의견 수렴은 반상회나, 설명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 월드컵경기장 및 상가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대상지는 주차장 및 유류탱크의 존치로 불량한 환경 이였으나, 도심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시민 편의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 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됨.

2014. 12. 18

한광수 (인)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차도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개발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및 관련 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계획 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생태계, 수질, 지형 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되 수계, 임상 및 야생동물 서식공간(이동경로 포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등을 포함하여 계획부지 및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및 지목 현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적정 규모의 도면 등에 표기하여야 함.
 - 녹지자연도 6등급 이상과 경사도 20°이상 지역(5m×5m 기준)을 토지이용 계획 상에 중첩하여 제시하고, 해당지역 보전여부 제시
-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 내 시설물은 훼손지 위주로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함.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3. 대안

- 계획수립에 따른 대안을 3개 이상 설정하여 계획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동 · 식물상

- 주요 활동시기 및 산란시기 등을 고려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동 · 식물상 (특히 법정보호종)서식현황,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분석·제시하여야 함.

○ 수 질

- 계획부지 인근 수계(하류 포함)에 대해 공사 및 운영 시 미치는 수질영향 및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공사 시 및 운영 시 점 및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지역일 경우 할당부하량 등을 산정·제시하여야 함.

○ 토양

- 석유저장탱크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및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여부를 검토 · 제시하여야 함.

5. 기 타

- ‘마포석유비축기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할 계획인 바, 해당 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공원으로의 기능과 공원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끝.

2014. 12.

심의위원 차 도 현 (인)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영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결과 통보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석유비축기지를 시민이용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임을 고려하여 평가서의 검토 수준을 시민 이용, 재해대비 안전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기존 구조물, 사면, 미소 서식지와 시민이용간의 관계, 안전성, 미소서식지의 보존 등이 평가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동·식물상)

-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한 현황자료의 분석이 필요함
- 현황분석자료를 근거로 시민들의 접근과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계획지역의 특징 :
사업계획지역은 주변과 분리된 독립적인 미소서식지를 형성하여 상당기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지역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
해당 미소서식지가 본 계획이 수행되는 과정(공사중) 및 이후 이용시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 대한 검토와 미소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세워져야 함
미소서식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동물의 이동, 보존가치가 높은 동물, 식물 서식지의 보호, 보존가치는 높지 않으나 이 지역에 우점하거나 희소하게 발달된 식물군락 등의 보호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함
지표식생 및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함. 독립적인 미소서식지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자연환경의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한 현황자료의 분석이 필요함
- 현황분석자료를 근거로 시민들의 접근과 이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계획지역의 특징 :
사업계획지역은 아래와 같은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약간의 표토층을 제외하면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임
석유비축용 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 수직형 실린더형 지형이 조성되었고, 옹벽, 벨 브시스템 및 도관의 설치와 관련된 터널, 인공사면 등이 자연지형과 혼재되어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
표토층의 보존은 생물의 미소서식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공사로 인한 개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토목공사로 인해 토양의 상태가 변화-굴착, 재조성-될 경우에는 서식지로서의 조건이 되는 표토층의 유기물, 미생물, 곤충 등의 다양한 토양구조가 파괴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석유비축시설로서의 안전성은 확보되어있는 상태이었으나 시민의 이용시설로 바뀔 경우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자연재난 등을 고려하여야 함. 이는 미소한 변화, 예를 들어 자갈크기의(boulder) 낙석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조사, 영향예측, 검토,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다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매우 작은 규모까지 고려하여야 하며 그러할 경우 자연사면에서의 토사류(mudflow)의 발생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비축기지 옹벽, 자연상태의 암반사면체, 인공 조성된 사면 등 구조물의 안전성과 주변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배수체계가 집중호우시 영향을 받아 자연사면, 인공옹벽, 기존 송유관 통로 등 주변과의 배관시설 등이 안전하게 제거 또는 관리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시에 안전성을 모니터링 할 사항들이 추출 제시되어야 함
변성암 내의 면구조들이 안정화되어있는 상태이나 사업지가 변형되면서 암편들이 낙석으로 분리되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미소서식처인 이 지역에 동물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현재보다 현저하게 증가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연환경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 배수체계가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함. 특히 시민이용시설 측면에서 미소한 변화도 재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검토되도록 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 없음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15. 1.

심의위원 :

소속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직(급) : 선임연구위원 성명 : 김지영

김지영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 주민대표 이종태(주민자치위원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개발시대의 산물인 석유비축기지를 제거하지 않고 차라리는 후손들에게 교육할수 있는 장소로서 남겨둘것을 생각하다 그러나 남은 상감해 지는 자연환경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 재생사업에 철저한 절차,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 환경이 보호될수 있도록 해야 것이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원래 대방산 자락에는, 봉우리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축기지가 들어오고, 점차장이 개발되므로, 많은 동식물들이 훼손된 곳으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동물을 훼손하지 말고, 다시, 동식물들이 찾아오는곳으로 대상지역을 지정하라고 바랍니다.

2. 토지이용 구상안

석유비축기지 토지 이용구상안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파기의 비축기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안보상황을 잘알게해야함을 인식할수 있어, 환경영향을 긍정으로, 또한 경기장과 연결, 정관성이 매우 양호하여, 이름에 불만이 없을것으로, 상급되고, 활성화 될것으로 봅니다.

3. 대안

환경생태 보전 차원에서, 저대한 주변 환경을 훼손 하지 말고, 훼손된 부분(정관하여 할수있는것들)을 생채를 그대로 복원, 친환경, 공원화 사업을 하였으면, 한다, 필수있으면 나무를 많이 심어, 숲속에 비축기지 재생,공원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객관적인 환경영향도인 과학, 조사검토를 통한, 영의 공정성 확보, 자연생태 보전 파악.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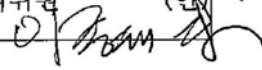
내측까지 주시. 상하계 및 주차장 부지 확보이 되어
월요일점차장과 연계. 관광에 활성화도 함께 이루어지
켜져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주차장 부지와 연계 공원과 사업추진요망

2014. . .

심의위원 (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6호****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 및 폐기 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1. 직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시행 (2014.11.29) 회계관직 명칭 변경

2. 직인명 및 등록일자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등록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총무과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재무관의인	2cm×2cm 훈민정음창제당 시의 자체		2015.01.12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총무과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분임재무관인	2cm×2cm 훈민정음창제당 시의 자체		2015.01.12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3. 직인명 및 폐기일자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폐기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총무과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경리관의인	2cm×2cm 훈민정음창제당 시의 자체		2015.01.12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총무과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분임경리관인	2cm×2cm 훈민정음창제당 시의 자체		2015.01.12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9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굿모델인터내셔널 코리아	서울 제803호	이기백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8층(역삼동, 어반벤처빌딩) (1670-3362)	전화번호 (14.12.23)	02-859-8803	1670-3362
				전자우편주소 (14.12.23)	goodmodel88 @gmail.com	gmik2014 @gmik.net
(주)네스 글로벌코리아	서울 제725호	웬디 루스 루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8층,15층(대치동, 삼안빌딩) (1577-7749)	소재지 (14.12.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92, 9층(논현동,에이치엠 타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8층, 15층(대치동, 삼안빌딩)
				전화번호 (14.12.18)	02-537-1307	1577-7749
				전자우편주소 (14.12.18)	jerrylee@jeunesseglob alkorea.com	hs21y@naver.com
시크릿다이렉트코리 아(주)	서울 제747호	김현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1544-1763)	소재지 (14.12.2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1204호(대치동, 금강타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주)파베로	서울 제724호	정태수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15길 6, 6층 (잠원동,신사제2빌딩) (02-3453-9891)	상호 (14.12.31)	(주)해피파베로	(주)파베로
				대표자 (14.12.31)	표순섭	정태수
				소재지 (14.12.31)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15길 6, 5층(잠원동, 신성빌딩)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15길 6, 6층(잠원동, 신사제2빌딩)
				전자우편주소 (14.12.31)	miraebio @naver.com	farbero @nate.com

2)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뉴랜드알로에	서울 후-제371호	김미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38, 3층(중곡동) (02-6406-7773)	소재지 (14.12.05)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41, 2층(중곡동)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38, 3층(중곡동)
상봉상사	서울 후-제455호	장수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8-1, 1층(능동) (02-436-5303)	소재지 (14.07.09)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64, 1층(군자동)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78-1, 1층(능동)
				전자우편주소 (14.07.09)	glangdis-god@nate.com	nadiagod@naver.com
주하	서울 후-제441호	박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002, 102호(공릉동) (010-2229-3500)	소재지 (14.12.01)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89, 301-903(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02, 102호(공릉동)
				전화번호 (14.12.01)	010-3934-4959	010-2229-3500

3) 다단계판매업 휴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휴업일자	폐업사유
(주)브레인그룹	서울 제342호	채영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76, 5층 (신대방동,대도빌딩)	15.01.01~ 16.12.31	신규상품 개발 및 영업재개 준비

4) 후원방문판매업 휴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휴업일자	폐업사유
(주)씨엠디월드	서울 후-제556호	유동명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29길 35, 2층(방배동,정수빌딩) (02-873-0818)	14.12.16 ~ 15.10.16	영업 부진

5) 후원수당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거여건강생활	서울 후-제349호	이영애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18, 2층(거여동) (02-400-2610)	14.12.29	사업 부진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유니베라대리점	서울 후-제362호	이미완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95길 8, 2층(공릉동) (02-972-2671)	15.01.05	영업 부진
(주)에스원	서울 후-제568호	윤진혁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7길 25(순화동) (02-1588-3112)	14.12.31	회사 사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민생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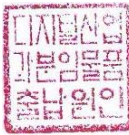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2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등록 직인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등록일자	비고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디지털산업과	디지털산업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2015.1.1	
	디지털산업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² X 1.8cm ²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5-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고

소속	서울특별시 SH공사			직위	사장	성명	변창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 건물(소계)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현대오펜라하우스 건물 129.73㎡			378,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14년식 소렌토 배기량(1,998cc)			34,300		
본인	자동차	2005년식 뉴스포티지(2WD) 배기량(1,997cc)			7,440		
▶ 예금(소계)							
본인		우리은행 4,727, 삼성생명보험 36,818, 국민은행 10,647,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9,230, 하나은행 15, LG손해보험 24,000			85,437		
배우자		국민은행 905, 삼성생명보험 33,175, 신한은행 5,723			39,803		

장녀		외환은행 479, 삼성생명보험 6,156		6,635		
차녀		국민은행 4,032, 삼성생명보험 5,856		9,888		
▶ 유가증권(소계)				698		
본인	상장주식	로케트전기 410주, 한국금융지주 11주		698		
▶ 채무(소계)				174,916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24,916, 하나은행 150,000		174,916		
총 계				387,285		

소속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직위	이사장	성명	강진섭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 토지(소계)							
본인	대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158-1번지 352.00㎡		22,950		부친 사망하였으나 상속 미처리(현 등기상 소유자는 부친명의)	
본인	도로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158-5번지 84.00㎡		1,503		부친 사망하였으나 상속 미처리(현 등기상 소유자는 부친명의)	
본인	대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158-4번지 14.00㎡		820		부친 사망하였으나 상속 미처리(현 등기상 소유자는 부친명의)	
▶ 건물(소계)				682,000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레미인슈르아파트 건물 116.99㎡	632,000	주거목적으로 2008년 12월 취득(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최신 공시가격)
배우자	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아이비시월드게이트 건물 32.90㎡	50,000	현 부동산 평균시세 적용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13년식 VOLKSWAGEN Tiguan 2.0 TDI 배기량(2,000cc)	31,580	개인 및 가족용도 사용
▶ 예금(소계)				
본인		삼성증권 902, AIA생명보험 30,705, 국민은행 454,326	485,933	입금원액
배우자		한국교직원공제회 42,053, 국민은행 69,106, 우체국 17,177, 농협은행 4,588, 우리은행 5,137	138,061	
▶ 유가증권(소계)				
본인	상장주식	SK브로드밴드 17,500주, KB금융 618주	104,030	여유자산 운용
▶ 채권(소계)				
본인		사인간채권	150,000	지인
▶ 채무(소계)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아이비시월드게이트	2,000	월 30만원 임대소득 발생
배우자	기타	공무원연금공단	8,460	자녀 학자금대출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배우자	출자	농협사범인(주)골든팜스, 출자가액: 48,000천원, 지분비율: 100%, 연간 매출액: 100,000천원	48,000	양돈 위탁사육 관리 계약을 통한 간접투자상품 투자 (출자가액 = 투자금액), 자본금/출자지분/매출액은 임의 입력

장남	출자	농업회사법인(주)글든팜스, 출자가액: 30,000천원, 지분비율: 100%, 연 간매출액: 100,000천원	30,000	양돈 위탁사육 관리 계약을 통한 간 접투자상품 투자 (출자가액 = 투자 금액), 자본금/출자지분/매출액은 임의 입력
장녀	출자	농업회사법인(주)글든팜스, 출자가액: 30,000천원, 지분비율: 100%, 연 간매출액: 100,000천원	30,000	양돈 위탁사육 관리 계약을 통한 간 접투자상품 투자 (출자가액 = 투자 금액), 자본금/출자지분/매출액은 임의 입력
총 계			1,712,094	

구 고 시

◆ 노원구고시 제2015-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52호(2009.12.29.)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공공공지)일부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경미한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노 원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변경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노원구 (상계동 767-8)외18필지	8,247.8	감)412.0	7,835.8	2009.12.31서고 제52호	자연녹지지역

2.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변경 사유
①	공공공지	3개 필지 해제 및 면적변경	중랑천 생태체험 학습관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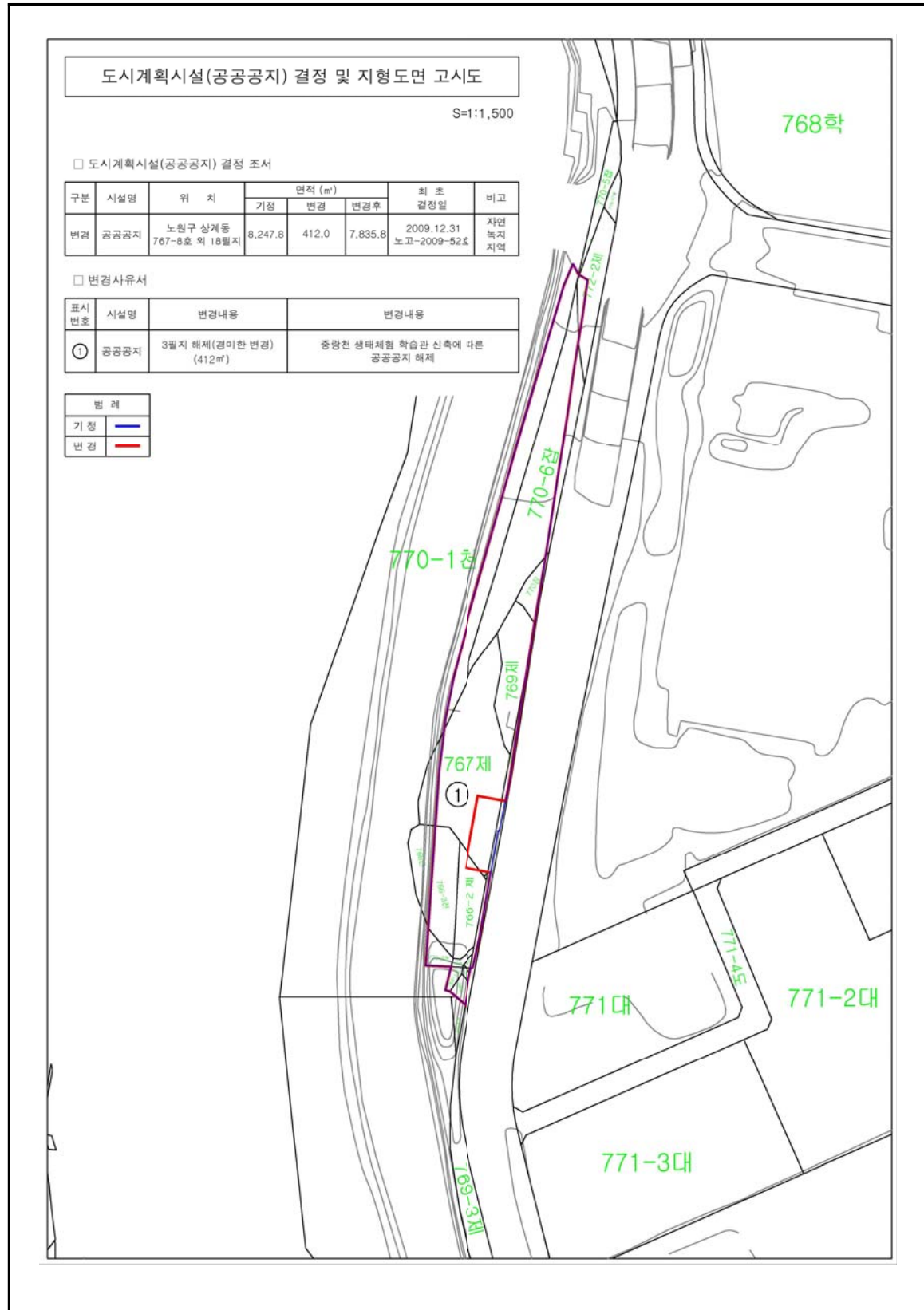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 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방법 : 시보,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5.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과(☎ 2116-38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15-3호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09.26)로 결정고시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공동개발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변경취지

- 당해지역의 현황여건 및 지구단위계획 실현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공동개발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결정

2.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공동개발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결정조서

구역명	필지		계획내용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현동 142-23	80.0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지정)	※ 기존 공동개발(지정)된 142-24·142-23호는 142-23으로 토지합병 (’03.12.31)
	대현동 142-28	14.0			
	대현동 142-27	16.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대현동 142-31	11.0			
	대현동 142-4	426.0			
	대현동 142-10	89.0			
	대현동 142-11	50.0			
	대현동 142-19	13.0			
	대현동 142-26	15.0			
	대현동 142-16	26.0			
	대현동 142-32	47.0			
	대현동 142-20	26.0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	
대현동 142-22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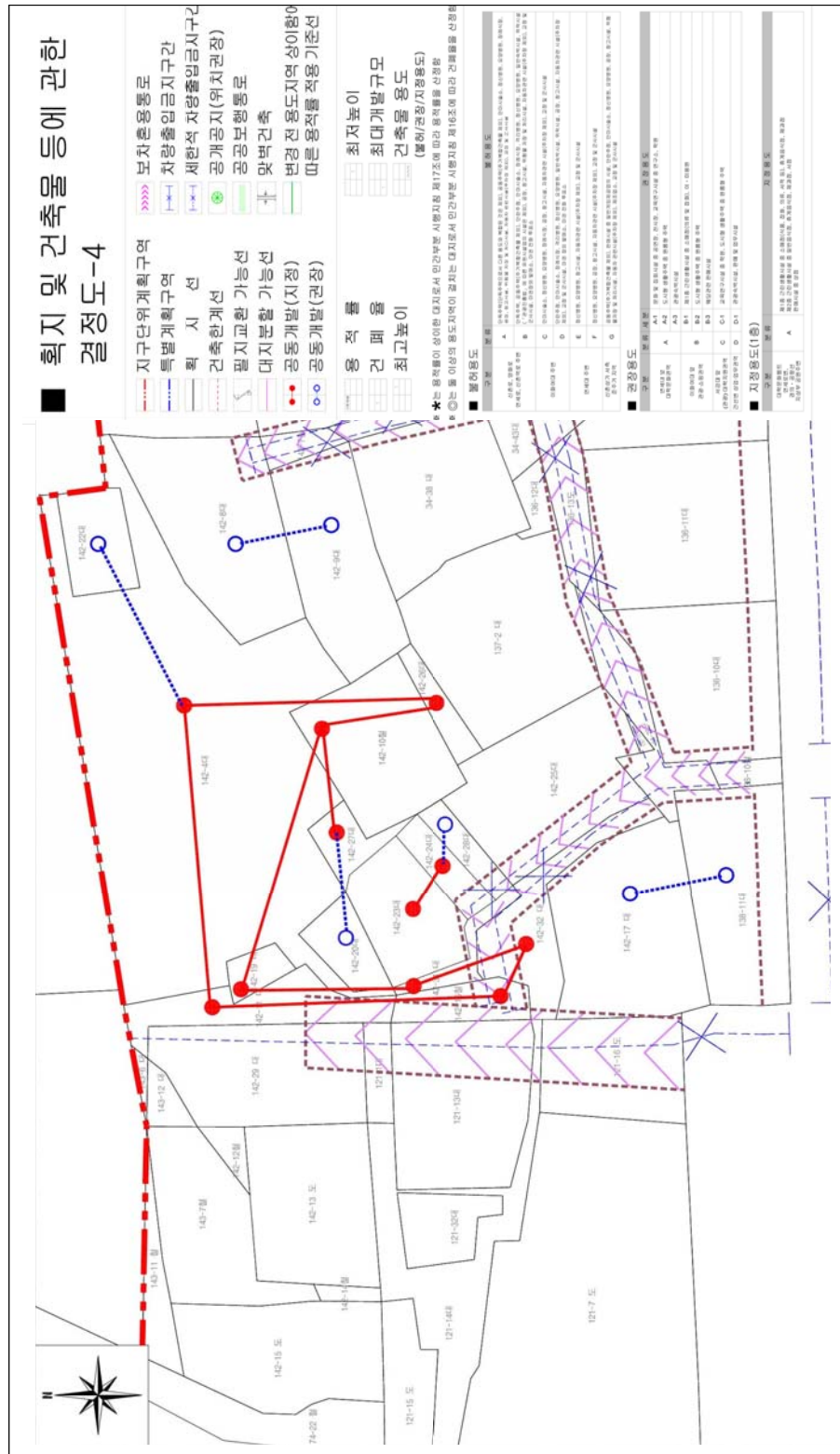
※ 상기 내용은 공동개발 변경(지정해제 및 신규지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됨 (건축허가절차 별도시행)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330-880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정)



◆ 강서구고시 제2015-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 제2013-248호(2013. 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3호(2014. 5. 8)로 구역 변경,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마곡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건축법 제 11조 제5항에 의거 의제처리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F1 블록(공항동 1148 일원)
(예정지번 : 마곡동 733-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유비쿼터스도시통합운영센터

다. 사업의 규모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528.00㎡	
건축면적	263.78㎡	
건축연면적	982.57㎡(지상층 864.69㎡)	
용적률	163.77%	
건폐율	49.96%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주차계획	차량 6대, 자전거 10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대표	주소
서울특별시 SH공사	변창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마. 사업기간 : 2014.06부터 ~ 7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권·권리권자 성명·주소

연 번	편입토지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마곡 도시개발사업구역 F1 블럭			528	528	서울특별시 SH공사		강서구청		강서구청과 SH공사 협약 서 체결 (마곡지구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구축 및 관리·운영 협약서)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무상 인계

아. 기타 관계도서 : 강서구청 건축과(☎ 2600-6865)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고시 제2015-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영등포구고시 제2014-107호(2014.11.27)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으며, 영등포구공고 제2014-1370호(2014.12.11)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을 위하여 실시계획 열람 공고한 『쌈지마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조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쌈지마당 조성사업	영등포구 시흥대로177길 11-5	172.2㎡	고시일로 부터 3년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 영등포구고시 제2014-107호(2014.11.27)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3)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당산동3가 385-1)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

5)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불임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8) 시민열람 편의를 위해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2670-3757)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번지 영등포구청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시행위치 : 씹지마당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실제 이용 현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외권리종류 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성명	주소	
1	시흥대로177길 11-5 (대림2동 990-69)	대지	나대지	172.2	172.2	1	서울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동작구고시 제2015-1호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1호(2007.9.27) 정비구역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0-3호(2010.2.1)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1-28호(2011.5.26)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6호(2014.6.19)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동작구 상도동 36-1번지 일대 상도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동작구청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동작구 상도동 36-1번지 일대	44,114.0	감) 13.6	44,100.4	-

※ 구역경계부 인접건축물 저촉에 따른 정비구역 경계 조정 (13.6㎡ 제척)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4,114.0	감) 13.6	44,100.4	100.0	-
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44,114.0	감) 13.6	44,100.4	100.0	정비구역 일부 제척 (13.6㎡)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114.0	감) 13.6	44,100.4	100.0	정비구역 일부제척 (13.6㎡)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4,588.3	증) 85.3	4,673.6	10.6	-
	도 로	776.1	증) 87.0	863.1	2.0	소로3-3호선 신설
	어린이공원	1,720.2	-	1,720.2	3.9	-
	경관녹지	2,092.0	감) 1.7	2,090.3	4.7	-
획 지	소 계	39,525.7	감) 98.9	39,426.8	89.4	-
	획지1 (공동주택용지)	39,525.7	감) 98.9	39,426.8	89.4	소로3-3호선 신설에 따른 면적 감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4	25~35	주간선 도로	750 (11)	상도동 370-14	상도1동 706	일반 도로	-	총고시 제722호 (‘36.12.26)	상도동길
변경	대로	3	184	25~28	주간선 도로	750	상도동 370-14	상도1동 706	일반 도로	-	총고시 제722호 (‘36.12.26)	일부구간 소로로 변경
기정	중로	2	32	15~19	집산 도로	1,120 (72)	노량진동	상도동	일반 도로		1962. 12.08	
기정	소로	3	①	6~8	국지 도로	56	상도동 16-21	상도동 36-47	일반 도로	-	서고시 2007-341호 (2007.9.2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①	6~8	국지 도로	56	상도동 16-21	상도동 36-47	일반 도로	-	서고시 2007-341호 (2007.9.27)	구역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②	6~10	국지 도로	416 (52)	상도동 2-1	상도동 17-62	일반 도로	-	1989. 06.17	
신설	소로	3	③	4~11	국지 도로	33	상도동 34-29	상도동 36-12	일반 도로	-		

※ ()는 정비구역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84 (상도동길)	•일부구간 폭원 변경 B=25~35m→25~28m	•일부구간 신설도로(소로3-3)에 포함
소로3-1	•일부구간 선형 변경	•구역경계부 인접건축물 저축에 따른 정비구역 조정
소로3-2	•신규 개설 B=4~11m, L=33m	•구역외 현황도로 차량소통을 위한 소로 신설

나) 녹 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경관녹지	동작구 상도동 36-1일대	2,092.0	감) 1.7	2,090.3	서고시 2007-341호 (2007.9.27)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경관녹지	•선형 및 면적조정	•구역경계부 인접건축물 저축에 따른 정비구역 조정

다) 공 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동작구 상도동 36-1일대	1,720.2	-	1,720.2	서고시 2007-341호 (2007.9.27)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4,114.0	획지1	39,525.7	동작구 상도동 36-1번지 일원	17	-	-	17	-	-
변경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4,100.4	획지1	39,426.8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정상한	
기정	상도1 주택	44,114.0	획지1	39,525.7	상도동 36-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41.60 이하	244.65 이하	86m 이하 30층 이하
변경	재건축 정비 구역	44,100.4		39,426.8				242.27 이하	244.26 이하	86m 이하 30층 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구분	세대수 (소형주택)	비율(%)	비고				
			계	897 (8)	100.00					
			60㎡ 이하	257 (8)	28.65					
			60~85㎡이하	584	65.11					
			85㎡ 초과	56	6.24					
• 85㎡ 이하 규모 세대수 비율 : 93.76% , 85㎡ 이하 규모 연면적 비율 90.65%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정상한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구분		세대수 (소형주택)		비율(%)		비고	
			계		893 (5)		100.00			
			60㎡ 이하		253 (5)		28.33			
			60~85㎡이하		584		65.40			
			85㎡ 초과		56		6.27			
			• 85㎡ 이하 규모 세대수 비율 : 93.73% , 85㎡ 이하 규모 연면적 비율 91.41%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상도동길 및 북측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인접대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3m							
기정	심의완화사항		•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 : 241.60%,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 244.65%							
변경			•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 : 242.27%,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 244.26%							

다)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산정내용			
기정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계획정비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44,114.0㎡	39,525.7㎡	4,588.3㎡	13.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4,588.3㎡ - 13.0㎡ = 4,575.3㎡			
	정비계획 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41.60% 이하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 × α) = 210% × (1+1.3 × 0.115755) = 241.60%			

※ 계획(기준)용적률 = 210%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 4,575.3㎡/39,525.7㎡ = 0.115755

구분		산정내용			
변경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계획정비 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 유지
		44,100.4㎡	39,426.8㎡	4,673.6㎡	13.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4,673.6㎡ - 13.0㎡ = 4,660.6㎡			
	정비계획 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42.27% 이하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 × α) = 210% × (1+1.3 × 0.118209) = 242.27% ※ 계획(기준)용적률 = 210%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 4,660.6㎡ / 39,426.8㎡ = 0.118209			
기정	법적상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244.65%			
변경	법적상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244.26%			

5)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기정	획지1	39,525.7	1동	672.96	8세대	59.99㎡	
변경	획지1	39,422.2	1동	424.95	5세대	59.90㎡	

■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적 용 산 식		비 고
기정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244.6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정비계획 용적률	241.60%	
	증가된 용적률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50% = 1.525%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 순사업부지 면적 =1.525% × 39,525.7㎡ = 602.76㎡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672.96㎡ · 세대수 : 8세대 - 전용 59.99㎡ (공급 84.12㎡) : 8세대		

구 분		적 용 산 식		비 고
변경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244.26%	
		정비계획 용적률	242.27%	
	증가된 용적률 50%	$(\text{법적상한용적률} - \text{정비계획용적률}) \times 50\%$ $= 0.99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연면적 환산	$\cdot \text{증가된 용적률의 } 50\% \times \text{순사업부지 면적}$ $= 0.995\% \times 39,426.8\text{m}^2 = 392.30\text{m}^2$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cdot \text{연면적(공급면적)} : 424.95\text{m}^2$ $\cdot \text{세대수} : 5\text{세대}$ $- \text{전용 } 59.90\text{m}^2 (\text{공급 } 84.99\text{m}^2) : 5\text{세대}$		기준 이상 확보

6)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변경	주택재건축 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상도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484세대 증가	기존:413세대 계획:897세대
변경	주택재건축 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상도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480세대 증가	기존:413세대 계획:893세대

2. 지형도면 : 붙임 첨부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전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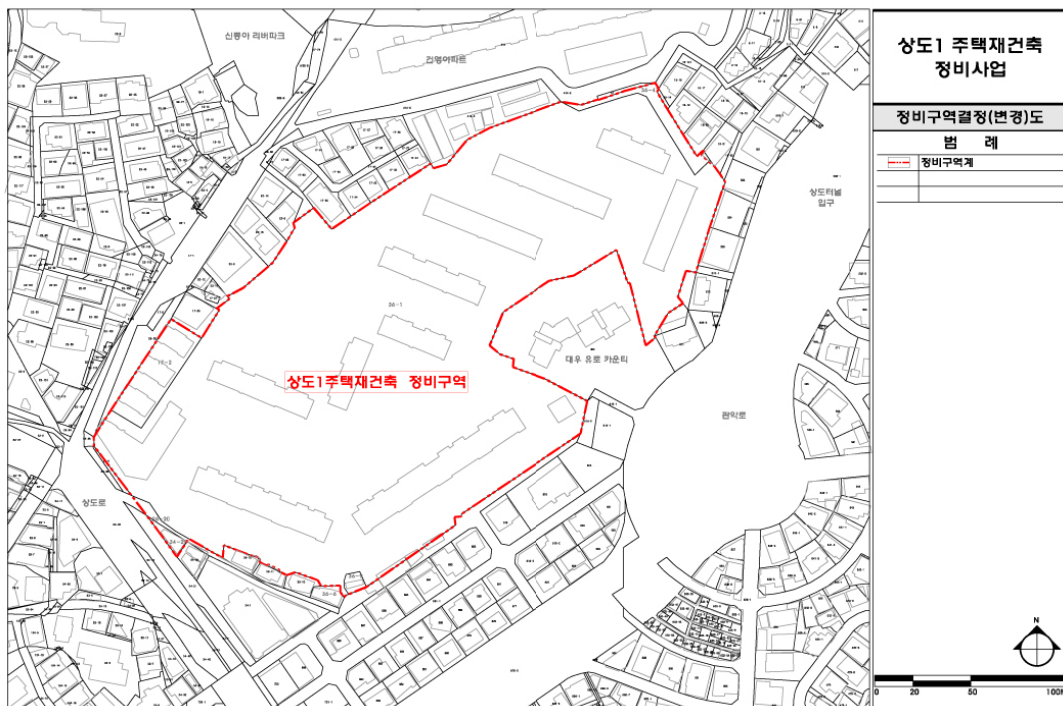
3.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주택과(☎820-994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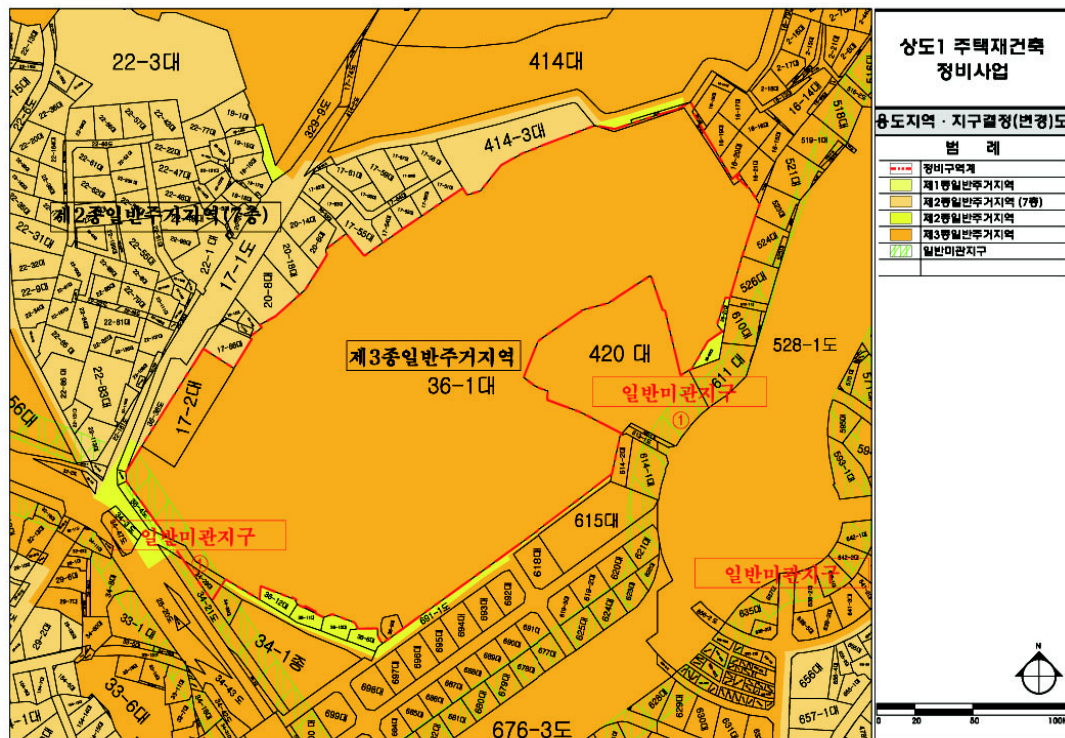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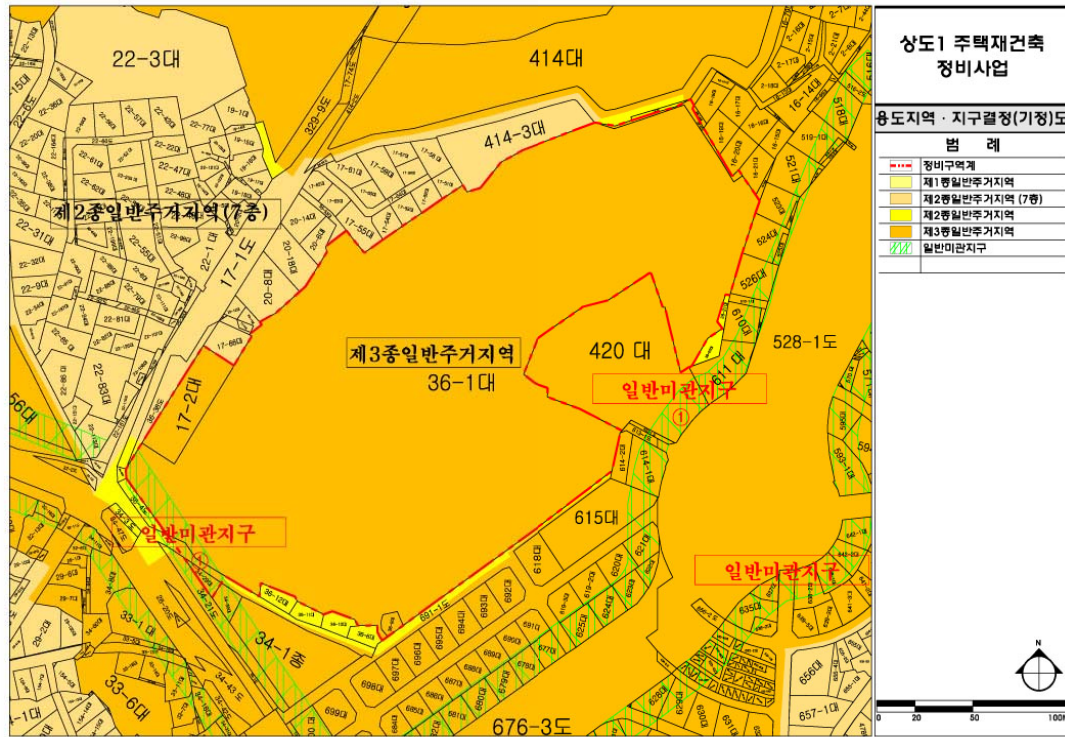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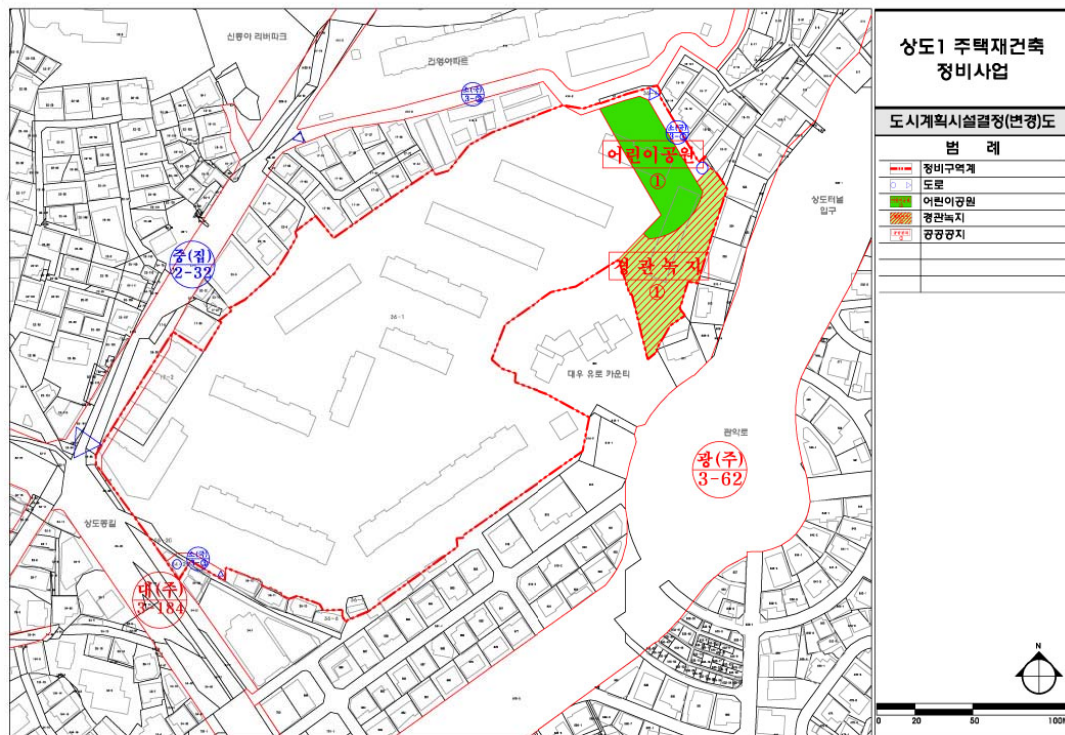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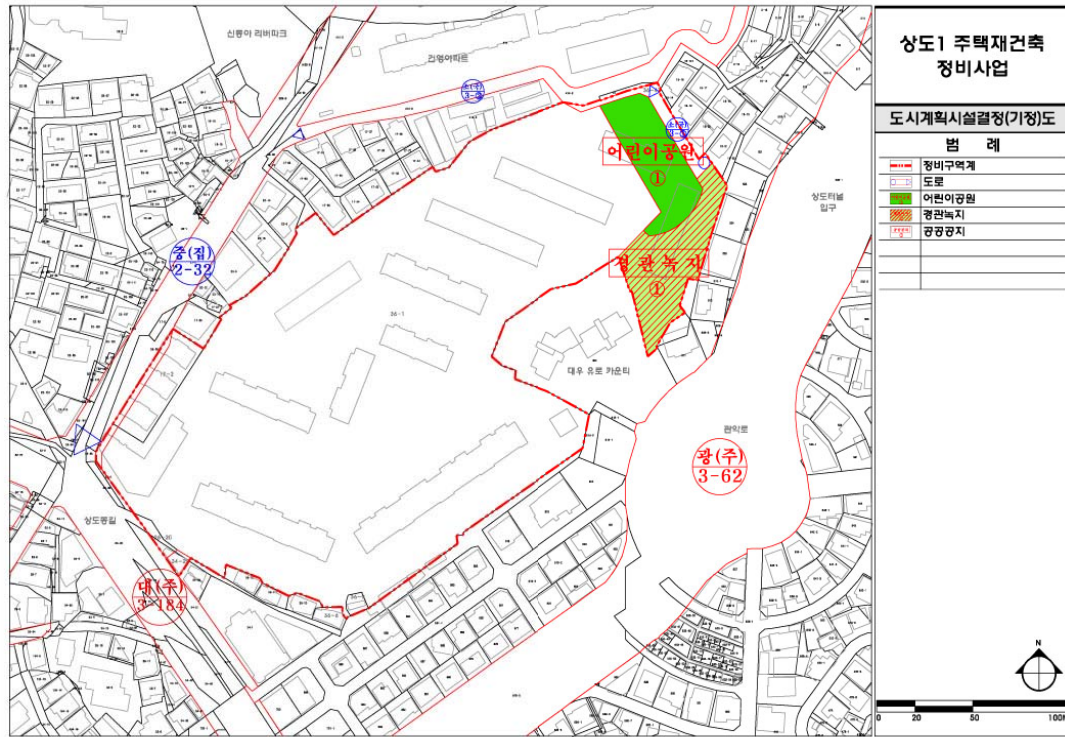
가.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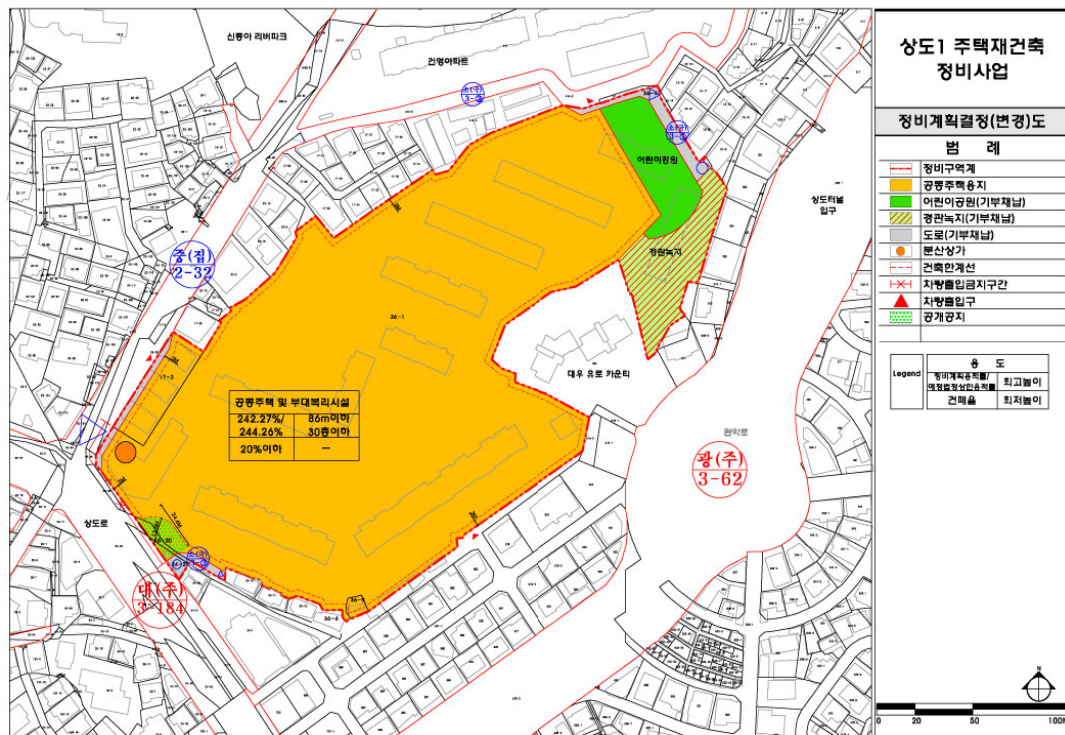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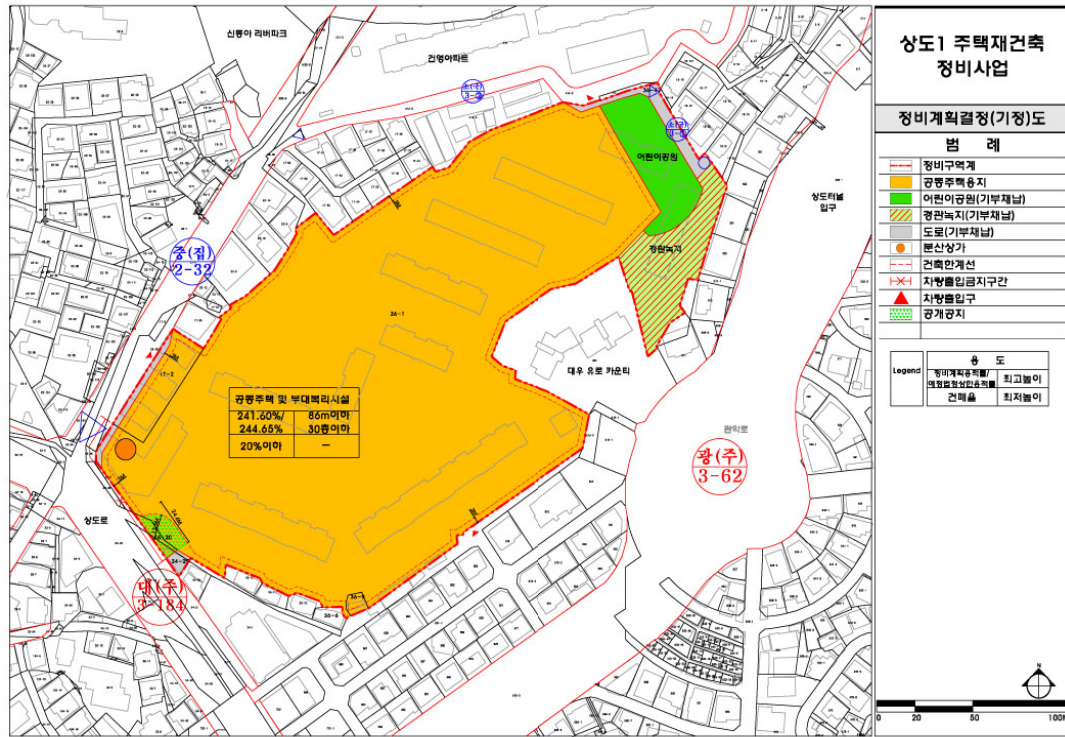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라. 정비계획 결정도



◆ 서초구고시 제2015-5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국립국악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75호(1984.02.14)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15호(1984.05.26), 제791호(1985.11.27)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68호(1986.03.19)로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24호(1989.09.12), 서초구고시 제1993-11호(1993.03.16), 제1996-22호(1996.05.13), 제1998-3호(1998.02.13), 제1999-27호(1999.05.25), 제1999-96호(1999.12.30), 제2000-91호(2001.01.05), 제2008-60호(2008.11.10), 제2010-2호(2010.01.28.), 제2011-14호(2011.03.31), 제2014-53호(2014.05.0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서초구 서초동 740-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 국립국악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740-4번지 일대 -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국립국악원)사업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국립국악원장(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 변경없음
4. 면적 및 규모
 - 면적 : 41,798㎡ - 변경없음
 - 사업시행 규모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시행면적	41,798㎡	41,798㎡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악원장	변경없음
건축면적	8,337.40㎡	8,337.40㎡	변경없음
연면적	36,622.65㎡	36,622.65㎡	변경없음
용적률산정용연면적	20,059.71㎡	20,059.71㎡	변경없음
건폐율	19.95%	19.95%	변경없음
용적률	47.99%	47.99%	변경없음
건물동수	6동	6동	변경없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변경 전 : 1986년 4월 3일 ~ 2014년 12월 31일
 - 변경 후 : 1986년 4월 3일 ~ 2016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생략).

◆ **송파구고시 제2015-2호**

도시관리계획(삼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85호(2009.7.23)로 변경결정된 삼전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잠실동 250-11외 2필지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내용(공동개발 권장 해제)」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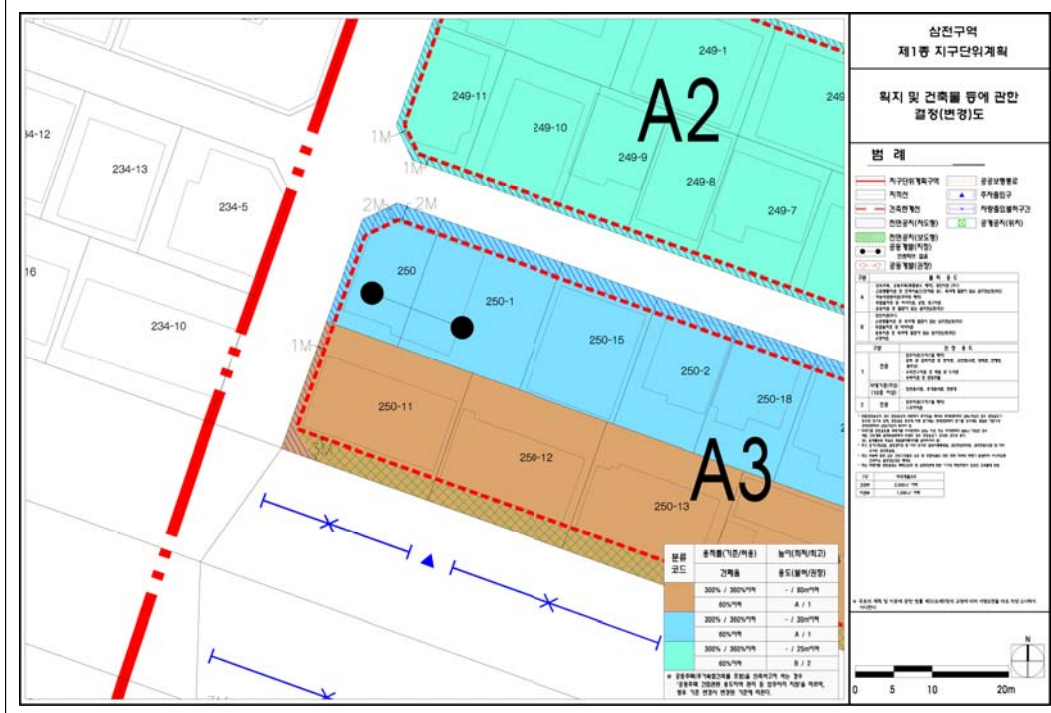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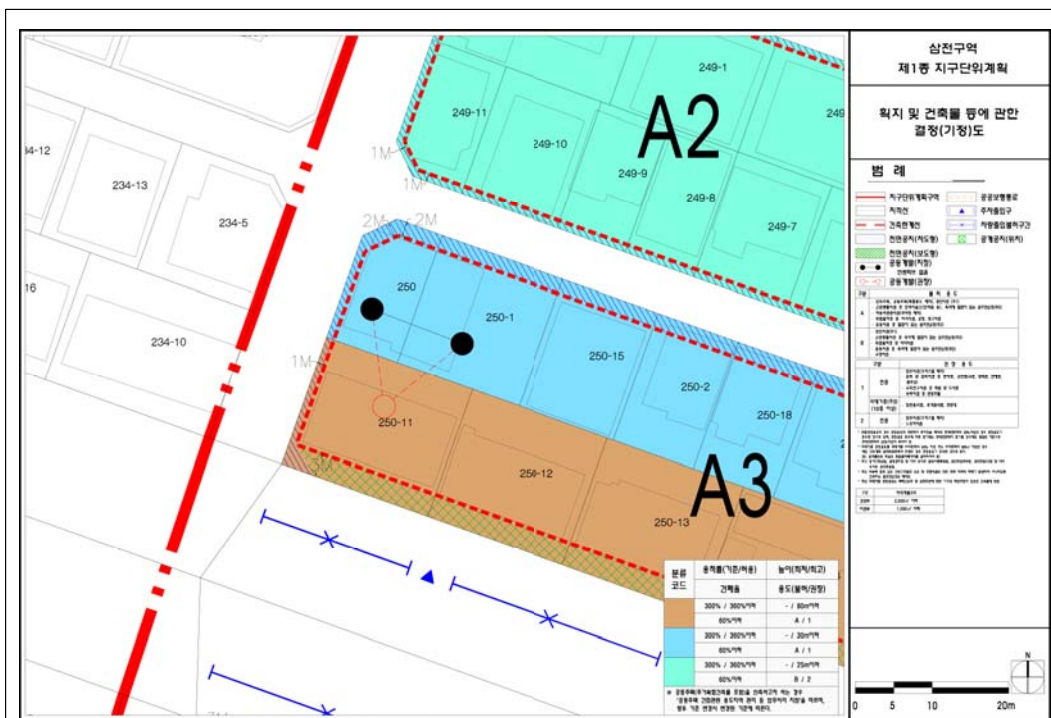
2015년 1월 15일
송 파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 토지소유주의 신청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 조서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라.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필 지		계획내용	가구 번호	필 지		계획내용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3	잠실동 250	814.6	공동개발 권장 (250,250-1공동개발 지정)	A3	잠실동 250-11	353.8	단독개발
	250-1, 250-11				잠실동 250, 250-1	460.8	공동개발 지정

3. 관계도면 : 별첨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300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잠실동 250-11외 2필지 공동개발(권장) 해제 –
삼전지구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결정도



◆ 강동구고시 제2015-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4-123호(2014.1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4-1212호(2014.11.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4-135호(2014.12.4.)로 인가된 『명일근린공원』에 대해 지적현황측량 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상일동 산36번지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3. 사업의 명칭 : 구천면로 강동그린웨이 연결통로 신설
4. 사업의 면적 : 당초(679㎡) → 변경(374㎡)
5.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강동구청장
6.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5년12월 31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구천면로 강동그린웨이 연결통로 신설
□ 소재지 : 강동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소	성 명	주 소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당초	상일동 산36	33,450	497	임야	김영부	미국 펜실베이니아 잭슨가 145	인디아나					
	변경	상일동 산36	33,088	192	임야	김영부	미국 펜실베이니아 잭슨가 145	인디아나					
2	당초	상일동 산42	1,919	182	임야	안호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25가길 24(이문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박영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51(912동 302호 (명일동 주공고층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4길 64, 201호 (길동, 테우빌라)	장승호			근저당권	
	변경	변경없음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15-2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32호(1977.12.06.)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어 서울특별고시 제 2013-453호(2013.12.26.)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112호(2014.12.26.)로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5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칭 : 을지로입구역(지하철2호선) 철도시설물(출입구, 환기구 등)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시행면적 : 763㎡(사유지 : 300㎡, 국공유지 : 463㎡)
- 입체적 시설 : 445㎡(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환기구 등)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김종준(직무대행자 김병호)
-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39길(을지로1가 42)

마. 인가 신청일 : 2015.01.02

바. 인가 신청의 요지 : 철도시설(출입구, 환기구)이설을 통한 재난시 출입구 주변 피난 및 혼잡성 최소화와 지하철 이용객의 편의성 증진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2015.09.01 / 준공예정일-2017.6.30

아. 공람기간 : 2015.01.15. ~ 2015.01.29.(14일간)

자.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생과(☎3396-5783)

차.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토 지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명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	
1	중구 을지로1가	100-1	도	4,538.9	126	-	건설교통부	-	-	-	-	
2	중구 을지로1가	101-1	대	3,518.8	3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	-	-	-	
3	중구 을지로1가	116-2	도	57.5	7	-	건설교통부	-	-	-	-	
4	중구 을지로1가	118	도	523.3	330	-	서울특별시	-	-	-	-	
합 계				8,638.5	763							

◆ 용산구공고 제2015-1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용산구 관내 총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문시행지침 일부 변경]

1. 용산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 및 서울특별시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는 지침 적용 등을 위하여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간부문시행지침을 일부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5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15. 1.12)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410~5)

다. 열람내용 및 사유

○ 열람내용

- 용산·한남·이태원로주변·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시행지침) 결정(변경)(안)

： 민간부문시행지침 중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에 대한 사항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도시관리과-1976호, 2011.2.25.】 등 서울시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는 지침을 적용하여 타구역과의 형평성 해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특별계획구역 내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 변경내용： 민간부문시행지침(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

구역명 (변경조문)	주요 변경내용	비고
용산 (49조)	• 기존 건축물 증축 행위 완화 - 1회 300㎡이내 → 횡수제한 없이 500㎡이내 - 50㎡미만 소규모 증축 자문 생략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특별계획구역 내 증축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기준(P85~86)」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용적률 이하 적용 • 세부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특별계획구역 내 용도변경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및 도로 위계(간선부,이면부)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계획(P81) 적용	• 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자문 •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구성후에는 도시계획 위원회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변경된 것으로 함
한남 (37조)	• 기존 건축물 증축 행위 완화 - 1회 300㎡이내 → 횡수제한 없이 500㎡이내 - 50㎡미만 소규모 증축 자문 생략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특별계획구역 내 증축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기준(P52)」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용적률 이하 적용	
이태원로 주변 (53조)	• 기존 건축물 증축 행위 완화 - 300㎡이내 → 500㎡이내 - 50㎡미만 소규모 증축 자문 생략가능	
숙명여대 주변 (34조)	• 기존 건축물 증축 행위 완화 - 1회 300㎡이내 → 횡수제한 없이 500㎡이내 - 50㎡미만 소규모 증축 자문 생략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특별계획구역 내 증축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기준(P25)」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용적률 이하 적용	

라. 관계도서：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강북구공고 제2015-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7-87호(2007.12.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4-59호(2014.3.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4-114호(2014.6.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

경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강북구청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5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 개요

구분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비고
당초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강북구 삼양로77길 95 ~ 인수봉로28가길 27	폭 12m 연장 198m	강북구고시 제87호 (2007.12.20)	연장 72m 추가
변경		강북구 삼양로77길 95 ~ 삼양로77길 66	폭 12m 연장 270m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열람 장소 : 강북구청 별관 도로관리과[강북구 솔매로 49길 14(미아동) 3층]}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 변경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추가구간에 대한 명세로 당초구간에 대한 명세는 변동없음)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전화 02-901-5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수유동 486-1513	대	55	55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39, 101동 805호 (삼전동, 현대아파트)	이용일		성북구 종암로21길 25 (종암동)	종암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추가
2	수유동 486-1512	대	1	1	강북구 수유동 산162-16	이영하					추가
3	수유동 486-1511	대	40	40	구로구 경인로9길 11-8 (공동)	황대영		종량구 망우로 290 (상봉동)	동서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추가
								노원구 마들로 31, 118동 201호(월계동, 그랑벨아파트)	최영화	근저당권	
4	수유동 486-1510	도	14	14	강북구 수유동 산162-16	이영하					추가
5	수유동 486-1509	대	44	44	종로구 경희궁3가길 26-3 (사직동)	이상대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하나은행	근저당권	추가
6	수유동 486-1508	대	44	4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 6동 708호(구운동, 삼환아파트)	하인순		성북구 종암로21길 25 (종암동)	종암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추가
								강남구 선릉로 221, 407동 2502호(도곡동, 도곡래슬아파트)	양기성	근저당권	
7	수유동 486-1507	도	14	14	강북구 수유동 산162-16	이영하					추가
8	수유동 486-1519	대	29	29	강북구 삼양로77길 66-4 (수유동)	김종진					추가
9	수유동 486-1504	대	49	49	강북구 삼양로77길 66 (수유동)	구철희					추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관리의 내 용	
10	수유동 486-339	도	238	238	강북구 수유동 산162-16	이영하					추가
11	수유동 486-1505	도	350	350	서초구 명달로 20, 305호 (서초동, 서초대우아파트)	유희춘					추가
12	수유동 486-1518	대	15	15	강북구 삼양로77길 75 (수유동)	백용흠					추가
13	수유동 486-1506	대	6	6	강북구 삼양로77길 73 (수유동)	김동창					추가
14	수유동 486-1517	대	5	5	강북구 삼양로77길 71 (수유동)	신승건					추가
15	수유동 486-1516	대	3	3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 108동 1602호 (사당동, 극동아파트)	김혜선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추가
16	수유동 486-1515	도	6	6	강북구 수유동 산162-16	이영하					추가
17	수유동 486-1514	대	1	1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465번길 26-5, 101호 (신천동)	배경일					추가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건물	지층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수유동 486-357 (삼양로77길 76)	건물	세멘트돌조	50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39, 101동 805호 (삼전동, 현대아파트)	이용일	성북구 종암로21길 25 (종암동)	종암동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추가
		2층		48							
2	수유동 486-355 (삼양로77길 74)	건물	연와조	25		구로구 경인로9길 11-8 (궁동)	황대영	종량구 망우로 290 (삼봉동)	동서울농업협 동조합	근저당권	추가
		2층		25							
3	수유동 486-352 (삼양로77길 72)	건물	세멘트부록조	47 26		종로구 경희궁3가길 26-3 (사직동)	이상대	종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하나은행	근저당권	추가
4	수유동 486-351 (삼양로77길 70)	건물	연와조	3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 6동 708호(구운동, 삼환아파트)	하안순	성북구 종암로21길 25 (종암동)	종암동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추가
		지층		16							
5	수유동 486-435 (삼양로77길 66-4)	건물	연와조	36		강북구 삼양로77길 66-4 (수유동)	김종진				추가
		지층		5							
6	수유동 486-251 (삼양로77길 6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12		강북구 삼양로77길 66 (수유동)	구철희				추가
		1층		12							
		2층		12							
		3층		12							
		4층		11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13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7	수유동 486-370 (삼양로77길 75)	1층	철근콘크리트조	12	강북구 삼양로77길 75 (수유동)	백용흠				추가
		2층		12						
		3층		12						
		4층	조적조	12						
8	수유동 486-340 (삼양로77길 73)	1층	철근콘크리트조	12	강북구 삼양로77길 73 (수유동)	김동창				추가
		2층		12						
		3층		12						
		지층		11						
9	수유동 486-364 (삼양로77가길 56-2)	1층	연와조	6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465번길 26-5, 101호 (신천동)	배경일				추가
10	수유동 486-338 (삼양로77길 65)	1층	연와조	5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청마로 13-23	이정희				추가

◆ 송파구공고 제2015-39호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9호(2009.02.12)로 결정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5일

송 파 구 청 장

- 1) 열람기간 : 2015.01.15. ~ 2015.01.30.(15일간)
- 2)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3)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1,121,878	감) 1,121,878	-	- 최초 결정일 : 서고397호('84.7.4)
변경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	증) 858,791	858,791	- 올림픽로 및 송파대로지구에서 분리, 방이맛골 주변 신규편입
변경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	증) 354,943	354,943	- 올림픽로지구에서 일부분리
변경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석촌동,송파동 송파대로 주변	282,090	감) 83,648	198,442	- 최초 결정일 : 서고397호('84.7.4)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

: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관광특구 및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주변지역과 함께 지역위계 및 기능에 맞춰 ‘잠실광역중심 1,2지구’로 분할하고 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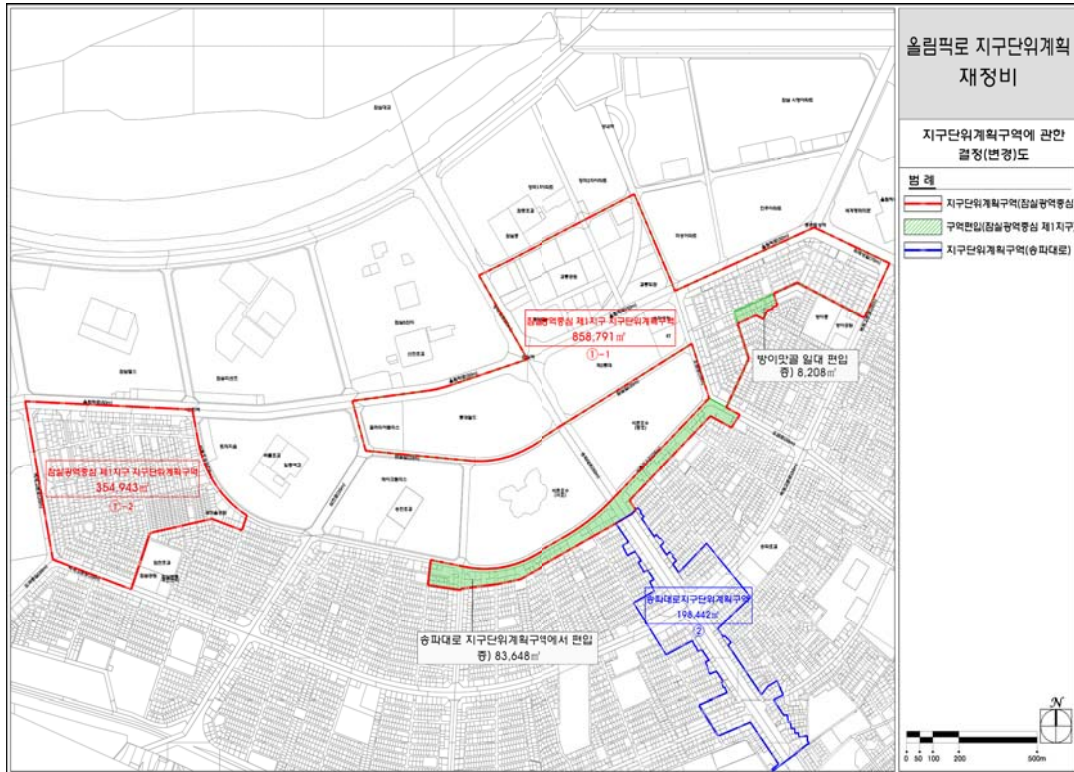
: 도로(신규 편입지역 등), 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 사회복지시설(잠실동 청소년 문화의 집, 잠일어린이집 2개소 신설) 등에 관한사항을 변경함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배치,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 4)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5)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담당 : 이규용/ ☎ : 2147-3002) 및 관할동주민센터(방이2동 ☎ : 2147-4210/ 잠실본동 ☎ : 2147-460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도 】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5-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한수개발
3. 점 용 목 적 : 공사 투입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
4.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길 9(영등포동7가) 207호
5. 점 용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가양대교북단 하류100m)
6. 점 용 면 적 : 선박 32척
7. 점 용 기 간 : 2015.1.01. ~ 2015.1.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5-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서울지방경찰청
3. 점 용 목 적 : 경찰정 계류
4.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5. 점 용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205-5 / 용산구 이촌동 373-1 /
광진구 자양4동 131 / 강동구 천호2동 337
6. 점 용 면 적 : 조립식 계류시설 총 600㎡ (각 지역별 150㎡)
7. 점 용 기 간 : 2015.1.1. ~ 2015.12.31.

사업소공고

◆ 광진소방서공고 제2015-1호

방염처리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염처리업을 신규등록 하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광진소방서장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제광진2015-1호 (2015.1.9.)	(주)서원에프앤이 (110111-5463859)	문찬호 (73.8.26.)	서울시 광진구 독섬로36길48, 202호(자양동)	02-419-1119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02-452-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랑소방서공고 제2015-1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중랑소방서장

등록번호	업종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중랑 2015-1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주식회사 마니세이프티	김평곤 (64.4.12)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6길 6(망우동)	2015. 1. 6.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중랑소방서 예방과(☎02-3423-2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15-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구로소방서장

등록번호	업종(분야)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제구로 2015-1호	소방시설 관리업	제일소방안전(주)	나 영 찬 (59.04.30)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83 상가동 3층 (오류동) ☎02-2688-1119	2015. 01.0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02-2682-50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15번지~813-2번지
 - 면 적 : 8,21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시민휴식공간 조성
 - 내 역 : · 자전거도로 L=1,850m, B=4m
· 계단설치 1개소, 휴게광장 1개소, 진입광장 1개소, 기타 1식
5. 점용기간 : 2010.12.15.~2015.12.14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호

하천공사 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5호(2009.01.22)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된 『안양천(하류) 정비사업』의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안양천(하류)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안양천에 대하여 도시거주 주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 등 삶의 질 향상과 하천생태계 및 하천문화의 보전 등을 위한 하천환경정비를 시행함으로써 하천의 기능인 이수·치수·환경을 조화롭게 함은 물론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을 통하여 생물

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자연 친화적 하천을 만들고
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생물서식처공 L=16.154km, 하천환경공 7개소, 산책로 7.525m
정검여울 3개소, 수제공 12개소, 자전거도로 2.040km,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기아대교)
- 종점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한강합류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도로명 주소로 변경)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일

- 착 수 일 : 2009년 02월 23일
- 준 공 일 : 2014년 12월 30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8.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지자체(서울시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경기 광명시)에 시설물 인계

□ 토지 세목 조서 [안양천(하류) 정비사업]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1	서울 금천 시흥	565- 2	제	6,168	3,547			국유지	국토교통부			
2	서울 금천 시흥	565- 3	천	2,883	1,496			국유지	국토교통부			
3	서울 금천 시흥	566- 2	천	52,060	52,060			국유지	국토교통부			
4	서울 금천 시흥	569- 2	제	6,483	6,493			국유지	국토교통부			
5	서울 금천 시흥	570- 4	도	48	37			국유지	국토교통부			
6	서울 금천 시흥	571- 4	전	358	55			국유지	국토교통부			
7	서울 금천 시흥	574-16	전	268	59			국유지	국토교통부			
8	서울 금천 시흥	575- 4	도	179	48			국유지	국토교통부			
9	서울 금천 시흥	585- 2	제	3,874	1,640			국유지	국토교통부			
10	서울 금천 시흥	585- 3	천	2,121	2,121			국유지	국토교통부			
11	서울 금천 시흥	586- 2	천	614	463			국유지	국토교통부			
12	서울 금천 시흥	588- 2	천	3,820	1,810			국유지	국토교통부			
13	서울 금천 시흥	588- 3	천	13,339	13,339			국유지	국토교통부			
14	서울 금천 시흥	589	잡		4,877			국유지	국토교통부			
15	서울 금천 시흥	589- 2	잡	6,418	896			국유지	기획재정부			
16	서울 금천 시흥	669	천	12,656	12,656			국유지	국토교통부			
17	서울 금천 시흥	669- 1	천	48	37			국유지	국토교통부			
18	서울 금천 시흥	669- 2	천	1,523	776			국유지	국토교통부			
19	서울 금천 시흥	669- 3	천	86	6			국유지	국토교통부			
20	서울 금천 시흥	671	제	1,348	196			국유지	국토교통부			
21	서울 금천 시흥	672	천	6,063	6,063			국유지	국토교통부			
22	서울 금천 시흥	672-10	제	201	182			국유지	기획재정부			
23	서울 금천 시흥	672-11	제	1,524	592			국유지	기획재정부			
24	서울 금천 시흥	672-13	천	7,091	7,091			국유지	기획재정부			
25	서울 금천 시흥	672-14	제	150	115			국유지	기획재정부			
26	서울 금천 시흥	673- 2	천	942	942			국유지	국토교통부			
27	서울 금천 시흥	673- 3	천	6,076	5,942			국유지	국토교통부			
28	서울 금천 시흥	673-10	천	277	277			국유지	국토교통부			
29	서울 금천 시흥	673-11	천	1,026	270			국유지	국토교통부			
30	서울 금천 시흥	673-12	천	119	119			국유지	국토교통부			
31	서울 금천 시흥	673-15	천	95	95			국유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32	서울 금천 시흥	674- 2	전	1,361	-			국유지	국토교통부			
33	서울 금천 시흥	674- 4	전	335	335			국유지	국토교통부			
34	서울 금천 시흥	675- 3	제	1,767	331			국유지	국토교통부			
35	서울 금천 시흥	675- 4	천	600	187			국유지	국토교통부			
36	서울 금천 시흥	762- 2	도		103			국유지	국토교통부			
37	서울 금천 시흥	765- 2	철	2,670	1,281			국유지	국토교통부			
38	서울 금천 시흥	765- 3	철	338	338			국유지	국토교통부			
39	서울 금천 시흥	765- 4	철	84	13			국유지	국토교통부			
40	서울 금천 시흥	766- 2	천	4,969	4,969			국유지	국토교통부			
41	서울 금천 시흥	766- 3	천	1,725	1,725			국유지	국토교통부			
42	서울 금천 시흥	766- 4	천	3,109	2,864			국유지	국토교통부			
43	서울 금천 시흥	766- 5	제	671	117			국유지	국토교통부			
44	서울 금천 시흥	766- 9	천	445	185			국유지	국토교통부			
45	서울 금천 시흥	766-10	천	881	881			국유지	국토교통부			
46	서울 금천 시흥	766-11	천	16,126	16,126			국유지	국토교통부			
47	서울 금천 시흥	766-25	천	324	324			국유지	국토교통부			
48	서울 금천 시흥	766-26	천	846	409			국유지	국토교통부			
49	서울 금천 시흥	768	도	38	21			국유지	국토교통부			
50	서울 금천 시흥	782- 3	도	135	8			국유지	국토교통부			
51	서울 금천 시흥	784- 1	천	2,780	945			국유지	국토교통부			
52	서울 금천 시흥	784- 2	천	2,326	738			국유지	국토교통부			
53	서울 금천 시흥	784- 3	천	76	76			국유지	국토교통부			
54	서울 금천 시흥	784- 4	천	888	888			국유지	국토교통부			
55	서울 금천 시흥	784- 7	천	10,765	10,765			국유지	국토교통부			
56	서울 금천 시흥	784- 8	제	4,372	3,610			국유지	국토교통부			
57	서울 금천 시흥	784-15	제	5,021	4,790			국유지	국토교통부			
58	경기 광명 소하	1- 1	천	13,650	13,650			국유지	국토교통부			
59	경기 광명 소하	1- 3	천	2,549	2,437			국유지	국토교통부			
60	경기 광명 소하	1- 4	제	6,294	5,326			국유지	국토교통부			
61	경기 광명 소하	30- 3	제	1,329	871			국유지	국토교통부			
62	경기 광명 소하	31- 1	천		1,672			국유지	국토교통부			
63	경기 광명 소하	31- 2	천	2,565	2,565			국유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m ²)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64	경기 광명 소하	31- 4	천	1,414	1,414			국유지	국토교통부			
65	경기 광명 소하	31-10	제	671	540			국유지	국토교통부			
66	경기 광명 소하	514- 1	제	145	27			국유지	국토교통부			
67	경기 광명 소하	515- 1	천	26	26			국유지	국토교통부			
68	경기 광명 소하	515- 2	천	681	468			국유지	국토교통부			
69	경기 광명 소하	517- 2	제	1,066	888			국유지	국토교통부			
70	경기 광명 소하	519- 1	천	7,832	7,832			국유지	국토교통부			
71	경기 광명 소하	519- 2	제	1,233	1,116			국유지	국토교통부			
72	경기 광명 소하	524	천	539	539			국유지	국토교통부			
73	경기 광명 소하	525	천	909	909			국유지	국토교통부			
74	경기 광명 소하	526- 1	천	6,572	6,572			국유지	국토교통부			
75	경기 광명 소하	526- 2	제	4,795	1,536			국유지	국토교통부			
76	경기 광명 소하	528- 1	제	532	48			국유지	국토교통부			
77	경기 광명 소하	529- 1	천	641	641			국유지	국토교통부			
78	경기 광명 소하	531- 2	제	661	-			왕사득	소하리 38			
79	경기 광명 소하	533- 1	제	466	155			국유지	국토교통부			
80	경기 광명 소하	645- 1	천	195	195			국유지	국토교통부			
81	경기 광명 소하	645- 2	제	1,574	236			국유지	국토교통부			
82	경기 광명 소하	646- 1	천	129	129			국유지	국토교통부			
83	경기 광명 소하	646- 2	제	274	110			국유지	국토교통부			
84	경기 광명 소하	647	천	1,898	1,898			국유지	국토교통부			
85	경기 광명 소하	647- 1	천	88	88			국유지	국토교통부			
86	경기 광명 소하	650	천	100	100			국유지	국토교통부			
87	경기 광명 소하	650- 1	천	657	657			국유지	국토교통부			
88	경기 광명 소하	651- 1	제	1,590	1,590			국유지	국토교통부			
89	경기 광명 소하	651- 2	천	2,824	2,824			국유지	국토교통부			
90	경기 광명 소하	651- 4	제	484	192			국유지	국토교통부			
91	경기 광명 소하	651- 8	제	3,305	3,305			국유지	국토교통부			
92	경기 광명 소하	651- 9	제	503	503			국유지	국토교통부			
93	경기 광명 소하	651-10	제	7,182	7,182			국유지	국토교통부			
94	경기 광명 소하	651-11	제	2,093	472			국유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95	경기 광명 소하	651-12	제	3,820	1,782			국유지	국토교통부			
96	경기 광명 소하	701- 1	임	1,134	24			국유지	기획재정부			
97	경기 광명 소하	1140- 1	천	391	391			국유지	국토교통부			
98	경기 광명 소하	1140- 4	천	158	42			국유지	국토교통부			
99	경기 광명 소하	1140- 7	천	728	728			국유지	국토교통부			
100	경기 광명 소하	1140- 8	제	314	100			국유지	국토교통부			
101	경기 광명 소하	1140-12	천	507	507			국유지	국토교통부			
102	경기 광명 소하	1140-13	천	238	238			국유지	국토교통부			
103	경기 광명 소하	1141-92	천	3,174	601			국유지	국토교통부			
104	경기 광명 소하	1217	구	72	72			국유지	국토교통부			
105	경기 광명 소하	1217- 1	구	22	22			국유지	국토교통부			
106	경기 광명 소하	1218	도	1,661	1,064			국유지	국토교통부			
107	경기 광명 소하	1229- 2	도	73	44			국유지	국토교통부			
108	경기 광명 소하	1271- 6	제	4,529	2,389			국유지	국토교통부			
109	경기 광명 소하	1271- 7	천	8,931	8,931			국유지	국토교통부			
110	경기 광명 소하	1271-11	천	748	748			국유지	국토교통부			
111	경기 광명 소하	1271-12	제	238	198			국유지	국토교통부			
112	경기 광명 소하	무지번	구		194			국유지	국토교통부			
113	서울 금천 독산	668- 24	천	18,629	18,629			국유지	서울특별시			
114	서울 금천 독산	668- 25	천	14,424	14,424			국유지	서울특별시			
115	서울 금천 독산	668- 42	제	4,299	2,408			국유지	서울특별시			
116	서울 금천 독산	668- 43	제	2,484	1,422			국유지	서울특별시			
117	서울 금천 독산	668- 46	천	4,680	2,475			국유지	서울특별시			
118	서울 금천 독산	668- 47	천	2,573	1,224			국유지	서울특별시			
119	서울 금천 독산	668- 52	천	18,775	18,775			국유지	국토교통부			
120	서울 금천 독산	679- 4	도	540	149			국유지	국토교통부			
121	서울 금천 독산	689- 3	도	84	40			국유지	국토교통부			
122	서울 금천 독산	702- 2	도	1,904	545			국유지	국토교통부			
123	서울 금천 독산	704- 2	천	2,312	739			국유지	국토교통부			
124	서울 금천 독산	705- 2	천	708	473			국유지	국토교통부			
125	서울 금천 독산	705- 4	천	227	227			국유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126	서울 금천 독산	706- 3	천	1,218	371			국유지	국토교통부			
127	서울 금천 독산	706- 4	천	132	132			국유지	국토교통부			
128	서울 금천 독산	719- 5	천	46,741	46,741			국유지	서울특별시			
129	서울 금천 독산	719- 12	제	10,300	4,961			국유지	서울특별시			
130	서울 금천 독산	719- 14	제	10,269	4,226			국유지	서울특별시			
131	서울 금천 독산	719- 18	천	4,959	4,959			국유지	서울특별시			
132	서울 금천 독산	732- 2	천	10,998	10,998			국유지	서울특별시			
133	서울 금천 독산	732- 3	천	4,772	3,458			국유지	서울특별시			
134	서울 금천 독산	733- 28	천	20,653	20,653			국유지	서울특별시			
135	서울 금천 독산	733- 31	제	3,648	2,863			국유지	서울특별시			
136	서울 금천 독산	733- 32	제	12	12			국유지	서울특별시			
137	서울 금천 독산	733- 33	제	241	91			국유지	서울특별시			
138	서울 금천 독산	754- 13	천	2,692	2,692			국유지	서울특별시			
139	서울 금천 독산	754- 14	천	2,583	866			국유지	서울특별시			
140	서울 금천 독산	756-208	제	1,104	323			국유지	국토교통부			
141	서울 금천 독산	756-209	천	55	55			국유지	국토교통부			
142	서울 금천 독산	770- 4	천	40,394	40,394			국유지	서울특별시			
143	서울 금천 독산	770- 6	제	2,432	1,514			국유지	서울특별시			
144	서울 금천 독산	770- 7	제	8,564	2,993			국유지	서울특별시			
145	서울 금천 독산	770- 10	천	1,252	1,252			국유지	서울특별시			
146	서울 금천 독산	816- 41	제	605	52			국유지	국토교통부			
147	서울 금천 독산	870- 1	도	83	36			국유지	국토교통부			
148	서울 금천 독산	870- 4	도	166	63			국유지	국토교통부			
149	서울 금천 독산	870- 8	천	43	43			국유지	국토교통부			
150	서울 금천 독산	871- 66	천	2,626	2,124			국유지	국토교통부			
151	서울 금천 독산	871- 79	천	388	324			국유지	국토교통부			
152	서울 금천 독산	871- 82	천	418	418			국유지	국토교통부			
153	경기 광명 하안	800- 8	천	54,284	42,831			국유지	국토교통부			
154	경기 광명 하안	852- 1	천	23,941	20,160			국유지	국토교통부			
155	서울 금천 가산	340- 2	천	13,790	13,790			국유지	서울특별시			
156	서울 금천 가산	340- 5	제	6,697	4,162			국유지	서울특별시			
157	서울 금천 가산	535- 98	천	8,848	8,848			국유지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158	서울 금천 가산	535- 99	천	5,167	5,167			국유지	서울특별시			
159	서울 금천 가산	535-121	제	11,077	5,347			국유지	서울특별시			
160	서울 금천 가산	535-123	천	856	856			국유지	서울특별시			
161	서울 금천 가산	538- 10	천	8,666	8,666			국유지	서울특별시			
162	서울 금천 가산	538- 11	제	3,776	1,876			국유지	서울특별시			
163	서울 금천 가산	539- 4	천	1,842	1,842			국유지	서울특별시			
164	서울 금천 가산	539- 6	제	3,127	1,713			국유지	서울특별시			
165	서울 금천 가산	541- 2	천	1,853	1,853			국유지	서울특별시			
166	서울 금천 가산	541- 3	제	4,700	2,793			국유지	서울특별시			
167	서울 금천 가산	557- 2	제	5,469	2,629			국유지	국토교통부			
168	서울 금천 가산	557- 3	천	35,979	30,449			국유지	국토교통부			
169	서울 금천 가산	562- 2	천	13,119	13,119			국유지	서울특별시			
170	서울 금천 가산	562- 3	제	3,960	2,857			국유지	서울특별시			
171	서울 금천 가산	571- 5	천	8,468	8,468			국유지	서울특별시			
172	서울 금천 가산	571- 6	천	1,445	856			국유지	서울특별시			
173	서울 금천 가산	614- 41	천	11,154	11,154			국유지	국토교통부			
174	서울 금천 가산	614- 42	천	1,463	1,463			국유지	국토교통부			
175	서울 금천 가산	614- 43	천	1,712	1,712			국유지	국토교통부			
176	서울 금천 가산	614- 44	천	22,206	17,649			국유지	국토교통부			
177	서울 금천 가산	614- 45	천	28,999	22,832			국유지	국토교통부			
178	서울 금천 가산	614- 56	제	540	247			국유지	국토교통부			
179	서울 금천 가산	614- 58	제	336	199			국유지	국토교통부			
180	서울 금천 가산	614- 60	제	303	170			국유지	국토교통부			
181	서울 금천 가산	614- 64	천	240	240			국유지	국토교통부			
182	서울 금천 가산	614- 65	제	466	184			국유지	국토교통부			
183	서울 금천 가산	614- 67	제	329	329			국유지	국토교통부			
184	서울 금천 가산	614- 71	천	18,995	15,257			국유지	국토교통부			
185	서울 금천 가산	614- 72	천	20,557	13,653			국유지	국토교통부			
186	서울 금천 가산	707	천	21,130	13,811			국유지	서울특별시			
187	서울 금천 가산	707- 1	천	6,576	3,930			국유지	서울특별시			
188	경기 광명 철산	9 - 8	제	921	921			국유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189	경기 광명 철산	9 - 9	제	667	667			국유지	국토교통부			
190	경기 광명 철산	9-121	도	1,005	675			국유지	국토교통부			
191	경기 광명 철산	9-159	제	24	24			국유지	국토교통부			
192	경기 광명 철산	9-202	제	320	296			국유지	국토교통부			
193	경기 광명 철산	266- 1	전	84	84			국유지	국토교통부			
194	경기 광명 철산	267- 1	전	706	706			국유지	국토교통부			
195	경기 광명 철산	458	제	1,921	1,921			국유지	국토교통부			
196	경기 광명 철산	459	제	44,883	6,412			국유지	국토교통부			
197	경기 광명 철산	606-3	천	8,961	8,961			국유지	국토교통부			
198	경기 광명 철산	606-21	천	2,957	2,461			국유지	국토교통부			
199	경기 광명 철산	607	천	1,302	1,302			국유지	국토교통부			
200	경기 광명 철산	608	천	3,906	2,470			국유지	국토교통부			
201	경기 광명 철산	609	천	63,900	63,900			국유지	국토교통부			
202	경기 광명 철산	610	천	40,407	37,784			국유지	국토교통부			
203	경기 광명 철산	611	천	29,757	29,757			국유지	국토교통부			
204	경기 광명 철산	612	천	36,658	36,658			국유지	국토교통부			
205	경기 광명 철산	613- 2	천	36,186	17,841			국유지	국토교통부			
206	경기 광명 철산	614	천	1,451	1,451			국유지	국토교통부			
207	경기 광명 철산	615- 1	천	43,241	35,647			국유지	국토교통부			
208	경기 광명 철산	626- 8	천	802	491			국유지	국토교통부			
209	경기 광명 철산	626- 13	대	150	28			국유지	국토교통부			
210	서울 구로 구로	621- 8	천	5,335	5,335			국유지	서울특별시			
211	서울 구로 구로	621- 9	천	1,867	929			국유지	서울특별시			
212	서울 구로 구로	621-10	천	8,154	2,910			국유지	서울특별시			
213	서울 구로 구로	621-11	천	2,320	2,320			국유지	서울특별시			
214	서울 구로 구로	621-13	천	1,530	1,530			국유지	서울특별시			
215	서울 구로 구로	626- 2	도	205	144			국유지	국토교통부			
216	서울 구로 구로	626- 5	천	60,571	60,571			국유지	서울특별시			
217	서울 구로 구로	626- 8	천	7,907	4,337			국유지	서울특별시			
218	서울 구로 구로	631- 2	천	7,718	-			국유지	국토교통부			
219	서울 구로 구로	631- 4	천	70,395	70,395			국유지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220	서울 구로 구로	631- 5	천	6,109	6,109			국유지	서울특별시			
221	서울 구로 구로	631- 6	천	2,735	2,001			국유지	서울특별시			
222	서울 구로 구로	631- 7	천	3,023	2,641			국유지	서울특별시			
223	서울 구로 구로	631-21	천	3,990	1,832			국유지	서울특별시			
224	서울 구로 구로	631-22	천	9,649	865			국유지	서울특별시			
225	서울 구로 구로	631-23	천	4,899	4,899			국유지	서울특별시			
226	서울 구로 구로	636-46	철	18,902	14,504			국유지	한국철도공사			
227	서울 구로 구로	642-71	천	46,228	43,856			국유지	서울특별시			
228	서울 구로 구로	642-75	천	660	620			국유지	서울특별시			
229	서울 구로 구로	642-76	천	5,349	4,313			국유지	서울특별시			
230	서울 구로 구로	642-77	천	10,907	121			국유지	서울특별시			
231	서울 구로 구로	681- 5	제	133	133			국유지	국토교통부			
232	서울 구로 구로	681- 6	제	1,308	1,308			국유지	국토교통부			
233	서울 구로 구로	681- 8	제	762	762			국유지	국토교통부			
234	서울 구로 구로	681-10	제	347	347			국유지	국토교통부			
235	서울 구로 구로	681-16	천	500,400	500,400			국유지	서울특별시			
236	서울 구로 구로	681-17	천	6,626	6,626			국유지	서울특별시			
237	서울 구로 구로	681-20	제		39			국유지	서울특별시			
238	서울 구로 구로	681-22	천	329	329			국유지	서울특별시			
239	서울 구로 구로	681-23	천	9,758	5,683			국유지	서울특별시			
240	서울 구로 구로	681-25	천	435	435			국유지	서울특별시			
241	서울 구로 구로	681-26	제	244	244			국유지	국토교통부			
242	서울 구로 구로	681-29	천	18	18			국유지	서울특별시			
243	서울 구로 구로	무지번	천		269			국유지	국토교통부			
244	서울 구로 고척	60- 1	천	5,459	5,349			국유지	국토교통부			
245	서울 구로 고척	60- 17	도	9,833	510			국유지	국토교통부			
246	서울 구로 고척	60- 19	도	5,649	80			국유지	서울특별시			
247	서울 구로 고척	61- 1	천	8,162	8,162			국유지	국토교통부			
248	서울 구로 고척	61- 2	천	8,153	8,153			국유지	국토교통부			
249	서울 구로 고척	62- 97	도	103	103			국유지	서울특별시			
250	서울 구로 고척	62-173	대	356	-			김영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리이프로피스텔 801호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251	서울 구로 고척	62-208	대	29	29			국유지	서울특별시			
252	서울 구로 고척	66- 10	천	139	139			국유지	국토교통부			
253	서울 구로 고척	66- 11	천	741	144			국유지	국토교통부			
254	서울 구로 고척	66- 16	천	27	27			국유지	국토교통부			
255	서울 구로 고척	66- 22	천	553	296			국유지	국토교통부			
256	서울 구로 고척	76-333	도	906	35			국유지	국토교통부			
257	서울 구로 고척	76-337	도	255	255			국유지	국토교통부			
258	서울 구로 고척	76-355	도	48	48			국유지	국토교통부			
259	서울 구로 고척	276- 1	천	288	288			국유지	국토교통부			
260	서울 구로 고척	276- 2	천	2,008	1,944			국유지	국토교통부			
261	서울 구로 고척	276- 3	천	360	360			국유지	국토교통부			
262	서울 구로 고척	276- 6	천	221	221			국유지	국토교통부			
263	서울 구로 고척	276- 7	천	255	255			국유지	국토교통부			
264	서울 구로 고척	277- 6	도	405	405			국유지	국토교통부			
265	서울 구로 고척	277- 35	도	92	92			국유지	국토교통부			
266	서울 구로 고척	279- 1	천	291	291			국유지	서울특별시			
267	서울 구로 고척	279- 3	천	169	93			국유지	국토교통부			
268	서울 구로 고척	279- 5	천	128	128			국유지	국토교통부			
269	서울 구로 고척	279- 7	천	60	36			국유지	국토교통부			
270	서울 구로 고척	279- 11	천	99	2			국유지	국토교통부			
271	서울 구로 고척	279- 12	천	60	60			국유지	국토교통부			
272	서울 구로 고척	279- 13	천	25	25			국유지	국토교통부			
273	서울 구로 고척	279- 18	천	214	214			국유지	서울특별시			
274	서울 구로 고척	279- 19	도	371	22			국유지	서울특별시			
275	서울 구로 고척	279- 21	천	134	134			국유지	국토교통부			
276	서울 구로 고척	279- 22	천	2	2			국유지	국토교통부			
277	서울 구로 고척	279- 25	천	114	55			국유지	국토교통부			
278	서울 양천 신정	137- 2	제	11,221	1,536			국유지	국토교통부			
279	서울 양천 신정	139- 2	제	20,372	7,277			국유지	국토교통부			
280	서울 양천 신정	330-21	제	1,365	407			국유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281	서울 양천 신정	841- 5	천	1,190	1,300			국유지	국토교통부			
282	서울 양천 신정	871- 2	구	10,140	10,140			국유지	국토교통부			
283	서울 양천 신정	871- 3	구	27,534	26,862			국유지	국토교통부			
284	서울 양천 신정	871- 4	구	7,554	7,315			국유지	국토교통부			
285	서울 양천 신정	871- 5	구	1,398	1,398			국유지	국토교통부			
286	서울 양천 신정	871- 6	구	9,768	9,766			국유지	국토교통부			
287	서울 양천 신정	871- 7	구	12,114	12,114			국유지	국토교통부			
288	서울 양천 신정	871- 9	구	14,667	14,667			국유지	국토교통부			
289	서울 양천 신정	871-10	구	9,828	7,997			국유지	국토교통부			
290	서울 양천 신정	871-11	구	6,222	3,664			국유지	국토교통부			
291	서울 양천 신정	871-12	구	1,122	1,122			국유지	국토교통부			
292	서울 양천 신정	871-13	구	1,596	1,596			국유지	국토교통부			
293	서울 양천 신정	871-14	구	100	100			국유지	국토교통부			
294	서울 양천 신정	871-15	구	122	122			국유지	국토교통부			
295	서울 양천 신정	871-16	구	2,136	2,136			국유지	국토교통부			
296	서울 양천 신정	871-17	구	1,458	1,458			국유지	국토교통부			
297	서울 양천 신정	871-18	도	5,001	1,160			국유지	국토교통부			
298	서울 양천 신정	871-19	구	322	322			국유지	국토교통부			
299	서울 양천 신정	871-20	구	33,596	33,596			국유지	국토교통부			
300	서울 양천 신정	871-21	구	2,016	2,016			국유지	국토교통부			
301	서울 양천 신정	871-23	구	57,633	57,633			국유지	국토교통부			
302	서울 양천 신정	871-24	구	12,366	12,366			국유지	국토교통부			
303	서울 양천 신정	871-25	구	6,714	2,770			국유지	국토교통부			
304	서울 양천 신정	871-30	도	6,455	679			국유지	국토교통부			
305	서울 양천 신정	871-35	구	2,020	1,467			국유지	국토교통부			
306	서울 양천 신정	871-36	구	1,081	971			국유지	국토교통부			
307	서울 양천 신정	871-37	구	16,599	14,445			국유지	국토교통부			
308	서울 양천 신정	871-38	구	433	433			국유지	국토교통부			
309	서울 양천 신정	871-42	구	452	452			국유지	국토교통부			
310	서울 양천 신정	871-43	구	78	78			국유지	국토교통부			
311	서울 양천 신정	871-44	구	7	3			국유지	국토교통부			
312	서울 양천 신정	871-46	도	1,269	705			국유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313	서울 양천 신정	무지번	천		1,216			국유지	국토교통부			
314	서울 양천 신정	무지번	천		361			국유지	국토교통부			
315	서울 구로 신도림	271-64	천	78,966	78,966			국유지	서울특별시			
316	서울 구로 신도림	271-86	천	11,309	7,965			국유지	서울특별시			
317	서울 구로 신도림	271-87	천	22,458	22,458			국유지	국토교통부			
318	서울 구로 신도림	271-95	천	500	363			국유지	서울특별시			
319	서울 구로 신도림	271-96	천	11,083	2,604			국유지	서울특별시			
320	서울 구로 신도림	282-21	천	9,555	9,555			국유지	서울특별시			
321	서울 구로 신도림	282-37	천	10,309	4,904			국유지	서울특별시			
322	서울 구로 신도림	282-38	천	35,828	35,828			국유지	국토교통부			
323	서울 구로 신도림	282-39	천	7,853	4,469			국유지	국토교통부			
324	서울 구로 신도림	282-41	천	9,569	9,569			국유지	국토교통부			
325	서울 구로 신도림	282-42	천	4,086	2,450			국유지	국토교통부			
326	서울 구로 신도림	285-22	천	10,589	10,589			국유지	서울특별시			
327	서울 구로 신도림	285-34	천	1,064	286			국유지	서울특별시			
328	서울 구로 신도림	285-35	천	9,244	4,306			국유지	서울특별시			
329	서울 구로 신도림	614-63	천		5,205			국유지	서울특별시			
330	서울영등포 문래	31	천	84,602	68,666			국유지	서울특별시			
331	서울영등포 문래	35	천	13,349	47			국유지	서울특별시			
332	서울영등포 문래	51	제	843	843			국유지	기획재정부			
333	서울영등포 문래	52	제	77,329	69,028			국유지	국토교통부			
334	서울 양천 목동	115- 7	천	26	26			국유지	양천구			
335	서울 양천 목동	116- 32	천	2,878	2,878			국유지	서울특별시			
336	서울 양천 목동	117- 3	천	18,913	18,913			국유지	서울특별시			
337	서울 양천 목동	119- 6	천	542	141			국유지	국토교통부			
338	서울 양천 목동	136- 1	천	7,429	6,121			국유지	국토교통부			
339	서울 양천 목동	137- 9	천	2,572	2,572			국유지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340	서울 양천 목동	143- 27	천	1,287	907			국유지	서울특별시			
341	서울 양천 목동	145- 8	천	238	209			국유지	서울특별시			
342	서울 양천 목동	409- 69	제	6,400	5,567			국유지	국토교통부			
343	서울 양천 목동	409-379	천	13,558	12,609			국유지	서울특별시			
344	서울 양천 목동	409-380	천	5,712	5,712			국유지	서울특별시			
345	서울 양천 목동	409-381	천	23,663	23,663			국유지	서울특별시			
346	서울 양천 목동	409-382	천	6,469	6,469			국유지	서울특별시			
347	서울 양천 목동	409-383	천	52,443	50,709			국유지	서울특별시			
348	서울 양천 목동	409-384	천	10,721	2,943			국유지	서울특별시			
349	서울 양천 목동	409-385	천	11,388	10,459			국유지	서울특별시			
350	서울 양천 목동	409-386	천	50,146	49,599			국유지	서울특별시			
351	서울 양천 목동	409-387	천	16,674	16,674			국유지	서울특별시			
352	서울 양천 목동	409-388	천	14,321	13,959			국유지	서울특별시			
353	서울 양천 목동	409-389	천	3,359	3,359			국유지	서울특별시			
354	서울 양천 목동	409-402	제	12,610	1,264			국유지	국토교통부			
355	서울 양천 목동	411	천	61,002	60,468			국유지	국토교통부			
356	서울 양천 목동	412- 6	도	5,312	3,173			국유지	국토교통부			
357	서울 양천 목동	413- 1	도	267	267			국유지	국토교통부			
358	서울 양천 목동	414	천	711	647			국유지	국토교통부			
359	서울 양천 목동	417- 2	도	59	59			국유지	국토교통부			
360	서울 양천 목동	432	도	272	73			국유지	국토교통부			
361	서울 양천 목동	518	대	1,507	1,507			국유지	서울특별시			
362	서울 양천 목동	518- 1	도	467	65			국유지	양천구			
363	서울 양천 목동	560	도	4,781	493			국유지	서울특별시			
364	서울 양천 목동	900- 10	제	38,278	9,211			국유지	국토교통부			
365	서울 양천 목동	914- 3	제	44,335	1,166			국유지	국토교통부			
366	서울영등포 양평	15- 3	천	327	327			국유지	서울특별시			
367	서울영등포 양평	17- 3	천	1,316	1,316			국유지	서울특별시			
368	서울영등포 양평	18- 3	천	1,392	1,392			국유지	국토교통부			
369	서울영등포 양평	19- 6	천	3,412	3,412			국유지	국토교통부			
370	서울영등포 양평	19- 8	천	1,798	1,798			국유지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371	서울영등포 양평	21- 3	천	579	579			국유지	국토교통부			
372	서울영등포 양평	22- 3	천	1,124	1,124			국유지	국토교통부			
373	서울영등포 양평	23- 1	천	6,129	6,129			국유지	국토교통부			
374	서울영등포 양평	25- 1	천	1,322	1,322			국유지	서울특별시			
375	서울영등포 양평	25- 3	천	2,658	2,658			국유지	국토교통부			
376	서울영등포 양평	25- 4	천	3,038	3,038			국유지	국토교통부			
377	서울영등포 양평	26- 3	천	982	982			국유지	서울특별시			
378	서울영등포 양평	27- 3	천	1,636	1,636			국유지	서울특별시			
379	서울영등포 양평	28- 1	천	3,524	3,524			국유지	국토교통부			
380	서울영등포 양평	29- 1	천	2,906	2,906			국유지	국토교통부			
381	서울영등포 양평	30- 3	천	2,612	190			국유지	서울특별시			
382	서울영등포 양평	30- 4	천	856	856			국유지	국토교통부			
383	서울영등포 양평	31- 1	천	4,797	4,797			국유지	국토교통부			
384	서울영등포 양평	32- 2	천	5,312	5,312			국유지	국토교통부			
385	서울영등포 양평	32- 3	천	26	26			국유지	서울특별시			
386	서울영등포 양평	33- 1	천	443	443			국유지	서울특별시			
387	서울영등포 양평	33- 3	천	1,190	1,190			국유지	국토교통부			
388	서울영등포 양평	33- 4	천	2,555	2,555			국유지	서울특별시			
389	서울영등포 양평	34- 1	천	3,117	3,117			국유지	국토교통부			
390	서울영등포 양평	34- 2	천	162	162			국유지	국토교통부			
391	서울영등포 양평	35- 2	천	2,965	2,965			국유지	국토교통부			
392	서울영등포 양평	36- 2	천	2,691	2,691			국유지	국토교통부			
393	서울영등포 양평	36- 3	천	155	155			국유지	기획재정부			
394	서울영등포 양평	42- 3	천	1,177	1,177			국유지	국토교통부			
395	서울영등포 양평	43- 3	천	969	969			국유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396	서울영등포 양평	44- 3	천	393	393			국유지	기획재정부			
397	서울영등포 양평	47- 3	천	694	694			국유지	국토교통부			
398	서울영등포 양평	48- 3	천	1,868	1,868			국유지	기획재정부			
399	서울영등포 양평	50- 3	천	1,557	1,557			국유지	국토교통부			
400	서울영등포 양평	51- 1	천	3,736	3,736			국유지	국토교통부			
401	서울영등포 양평	52- 1	천	1,035	1,035			국유지	국토교통부			
402	서울영등포 양평	52- 3	천	3,342	3,342			국유지	국토교통부			
403	서울영등포 양평	52- 4	천	618	618			국유지	국토교통부			
404	서울영등포 양평	54- 3	천	1,884	1,884			국유지	국토교통부			
405	서울영등포 양평	55- 3	천	496	496			국유지	국토교통부			
406	서울영등포 양평	56- 3	천	1,349	1,349			국유지	국토교통부			
407	서울영등포 양평	57- 2	천	4,162	4,162			국유지	국토교통부			
408	서울영등포 양평	58- 1	천	2,674	2,674			국유지	국토교통부			
409	서울영등포 양평	58- 2	천	2,767	2,767			국유지	서울특별시			
410	서울영등포 양평	59- 1	천	2,522	2,522			국유지	국토교통부			
411	서울영등포 양평	59- 2	천	1,808	1,808			국유지	서울특별시			
412	서울영등포 양평	60	천	2,208	2,208			국유지	서울특별시			
413	서울영등포 양평	61	천	1,600	1,600			국유지	국토교통부			
414	서울영등포 양평	62- 1	천	2,417	2,417			국유지	국토교통부			
415	서울영등포 양평	62- 2	천	625	625			국유지	국토교통부			
416	서울영등포 양평	63- 1	천	830	830			국유지	국토교통부			
417	서울영등포 양평	63- 2	천	1,418	1,418			국유지	국토교통부			
418	서울영등포 양평	64	천	1,914	1,914			국유지	국토교통부			
419	서울영등포 양평	65- 2	천	5,603	5,603			국유지	국토교통부			
420	서울영등포 양평	67- 3	천	1,815	1,815			국유지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421	서울영등포 양평	68- 3	천	1,263	1,263			국유지	국토교통부			
422	서울영등포 양평	69- 2	천	1,861	1,861			국유지	국토교통부			
423	서울영등포 양평	69- 4	천	1,296	1,296			국유지	국토교통부			
424	서울영등포 양평	70- 5	천	1,388	1,388			국유지	국토교통부			
425	서울영등포 양평	86- 2	도	3,719	210			국유지	서울특별시			
426	서울영등포 양평	265- 3	천	896	896			국유지	국토교통부			
427	서울영등포 양평	266	천	2,988	2,988			국유지	서울특별시			
428	서울영등포 양평	267- 1	천	4,245	4,245			국유지	서울특별시			
429	서울영등포 양평	267- 2	천	10	10			국유지	서울특별시			
430	서울영등포 양평	268- 1	천	2,975	2,975			국유지	국토교통부			
431	서울영등포 양평	268- 2	천	483	483			국유지	국토교통부			
432	서울영등포 양평	269- 3	천	1,653	1,653			국유지	국토교통부			
433	서울영등포 양평	269- 5	천	1,412	1,412			국유지	국토교통부			
434	서울영등포 양평	270- 1	천	1,907	1,907			국유지	국토교통부			
435	서울영등포 양평	271- 3	천	228	228			국유지	국토교통부			
436	서울영등포 양평	278- 3	천	1,091	1,091			국유지	국토교통부			
437	서울영등포 양평	279- 3	천	1,332	1,332			국유지	서울특별시			
438	서울영등포 양평	282- 1	천	1,805	1,805			국유지	국토교통부			
439	서울영등포 양평	283- 1	천	1,296	1,296			국유지	서울특별시			
440	서울영등포 양평	284	천	744	744			국유지	서울특별시			
441	서울영등포 양평	286- 3	천	3,210	3,210			국유지	국토교통부			
442	서울영등포 양평	286- 8	천	4,588	4,588			국유지	국토교통부			
443	서울영등포 양평	468	도	92	92			국유지	국토교통부			
444	서울영등포 양평	469	구	84	84			국유지	국토교통부			
445	서울영등포 양평	470	천	9,602	9,602			국유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m ²)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446	서울영등포 양평	471	구	455	455			국유지	국토교통부			
447	서울영등포 양평	472	구	333	333			국유지	국토교통부			
448	서울영등포 양평	473	도	693	693			국유지	국토교통부			
449	서울영등포 양평	474	천	7,622	7,622			국유지	국토교통부			
450	서울영등포 양평	476	도	92	92			국유지	국토교통부			
451	서울영등포 양평	477	구	806	806			국유지	국토교통부			
452	서울영등포 양평	478	도	812	812			국유지	국토교통부			
453	서울영등포 양평	479	구	1,974	1,974			국유지	국토교통부			
454	서울영등포 양평	480	천	8,338	8,338			국유지	국토교통부			
455	서울영등포 양평	481	천	23,791	18,191			국유지	국토교통부			
456	서울영등포 양평	482	천	11,895	3,497			국유지	국토교통부			
457	서울영등포 양평	483	천	24,630	24,630			국유지	국토교통부			
458	서울영등포 양평	484	천	86,480	74,708			국유지	국토교통부			
459	서울영등포 양평	485	도	1,780	738			국유지	국토교통부			
460	서울영등포 양평	486	천	5,813	534			국유지	국토교통부			
461	서울영등포 양평	487	천	11,974	2,067			국유지	국토교통부			
462	서울영등포 양평	488	천	65,269	56,828			국유지	국토교통부			
463	서울영등포 양평	489	구	1,476	1,177			국유지	국토교통부			
464	서울영등포 양평	490	천	8,377	8,377			국유지	국토교통부			
465	서울영등포 양평	491	도	932	932			국유지	국토교통부			
466	서울영등포 양평	492	천	10,367	7,823			국유지	국토교통부			
467	서울영등포 양평	493	천	5,153	2,334			국유지	국토교통부			
468	서울영등포 양평	494	도	1,246	764			국유지	국토교통부			
469	서울영등포 양평	495	천	1,453	72			국유지	국토교통부			
470	서울영등포 양평	496	천	1,039	1,039			국유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471	서울영등포 양평	497	도	1,347	1,178			국유지	국토교통부			
472	서울영등포 양평	498	천	5,738	3,494			국유지	국토교통부			
473	서울영등포 양평	499	천	1,543	1,543			국유지	국토교통부			
474	서울영등포 양평	500	도	677	677			국유지	국토교통부			
475	서울영등포 양평	501	천	26,116	26,116			국유지	국토교통부			
476	서울영등포 양평	502- 1	제	14,604	5,992			국유지	국토교통부			
477	서울영등포 양평	503- 1	제	11,493	6,833			국유지	국토교통부			
478	서울영등포 양평	504- 1	제	9,867	5,123			국유지	국토교통부			
479	서울영등포 양평	무지번	천		11,141			국유지	국토교통부			
480	서울영등포 양화	1-44	천	2,301	140			국유지	국토교통부			
481	서울영등포 양화	1-55	천	1,540	65			국유지	국토교통부			
482	서울영등포 양화	2- 2	천	6,334	2,080			국유지	국토교통부			
483	서울영등포 양화	2- 3	전	30	30			국유지	국토교통부			
484	서울영등포 양화	2- 4	천	430	430			국유지	서울특별시			
485	서울영등포 양화	3- 1	천	2,820	1,862			국유지	국토교통부			
486	서울영등포 양화	3- 2	천	1,907	1,907			국유지	서울특별시			
487	서울영등포 양화	4- 1	천	4,374	-			김복동	용산구 이촌동 301-10			
488	서울영등포 양화	4- 2	천	63	63			국유지	국토교통부			
489	서울영등포 양화	5- 1	천	3,689	2,810			국유지	국토교통부			
490	서울영등포 양화	5- 2	천	3,769	-			김복동	용산구 이촌동 301-10			
491	서울영등포 양화	6- 5	천	162	162			국유지	국토교통부			
492	서울영등포 양화	7- 1	천	3,848	3,848			국유지	국토교통부			
493	서울영등포 양화	8- 1	천	4,056	4,056			국유지	서울특별시			
494	서울영등포 양화	8- 3	천	1,927	1,927			국유지	국토교통부			
495	서울영등포 양화	8- 4	천	1,679	1,679			국유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496	서울영등포 양화	9- 1	천	2,635	2,635			국유지	서울특별시			
497	서울영등포 양화	9- 2	천	188	188			국유지	기획재정부			
498	서울영등포 양화	10- 1	천	2,268	2,268			국유지	국토교통부			
499	서울영등포 양화	10- 2	천	14,220	7,720			국유지	국토교통부			
500	서울영등포 양화	10- 3	도	1,221	1,221			국유지	국토교통부			
501	서울영등포 양화	10- 4	천	23,149	23,149			국유지	국토교통부			
502	서울영등포 양화	10- 5	도	181	18			국유지	국토교통부			
503	서울영등포 양화	10- 8	천	54,928	40,272			국유지	국토교통부			
504	서울영등포 양화	10- 9	도	338	338			국유지	국토교통부			
505	서울영등포 양화	10-10	천	6	6			국유지	국토교통부			
506	서울영등포 양화	10-11	천	1	1			국유지	국토교통부			
507	서울영등포 양화	10-12	천	42	34			국유지	국토교통부			
508	서울영등포 양화	11- 1	천	3,617	-			오인열	부산 남구 남천동 148 타워6동 803호			
509	서울영등포 양화	11- 2	천	1,091	-			오인열	부산 남구 남천동 148 타워6동 803호			
510	서울영등포 양화	12- 1	천	876	876			국유지	국토교통부			
511	서울영등포 양화	12- 2	천	1,203	1,203			국유지	서울특별시			
512	서울영등포 양화	12- 3	천	188	188			국유지	국토교통부			
513	서울영등포 양화	12- 4	천	10	10			국유지	서울특별시			
514	서울영등포 양화	13- 2	천	13	-			태창선	마포구 성산동 32			
515	서울영등포 양화	13- 4	천	446	446			국유지	서울특별시			
516	서울영등포 양화	137- 1	천	1,815	1,815			국유지	서울특별시			
517	서울영등포 양화	138- 1	천	549	-			김윤원	양화동 71			
518	서울영등포 양화	139- 1	천	215	215			국유지	서울특별시			
519	서울영등포 양화	140- 1	천	1,940	1,940			국유지	서울특별시			
520	서울영등포 양화	141- 1	천	2,238	2,238			국유지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521	서울영등포 양화	142- 1	천	3,177	3,177			국유지	국토교통부			
522	서울영등포 양화	142- 2	천	6,849	6,849			국유지	국토교통부			
523	서울영등포 양화	143- 1	천	2,083	2,083			국유지	국토교통부외 1인			
524	서울영등포 양화	144- 1	천	1,960	1,960			국유지	서울특별시			
525	서울영등포 양화	146	천	129	129			국유지	국토교통부			
526	서울영등포 양화	147	천	1,927	1,302			국유지	국토교통부			
527	서울영등포 양화	148	천	20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528	서울영등포 양화	149	천	499	215			국유지	국토교통부			
529	서울영등포 양화	151	천	139	139			국유지	국토교통부			
530	서울영등포 양화	152	천	284	284			국유지	기획재정부			
531	서울영등포 양화	152- 1	천	1	1			국유지	국토교통부			
532	서울영등포 양화	152- 2	천	2	2			국유지	기획재정부			
533	서울영등포 양화	152- 3	천	107	56			국유지	기획재정부			
534	서울영등포 양화	152- 4	천	16	16			국유지	국토교통부			
535	서울영등포 양화	153- 3	대	29	29			국유지	영등포구			
536	서울영등포 양화	153-22	도	89	16			국유지	영등포구			
537	서울영등포 양화	153-23	도	2	2			국유지	영등포구			
538	서울영등포 양화	153-25	도	176	72			국유지	영등포구			
539	서울영등포 양화	153-26	도	82	22			국유지	영등포구			
540	서울영등포 양화	153-27	도	10	10			국유지	영등포구			
541	서울영등포 양화	153-28	도	88	9			국유지	영등포구			
542	서울영등포 양화	153-29	천	2,028	184			국유지	국(국세청)			
543	서울영등포 양화	153-30	천	19	19			국유지	국(국세청)			
544	서울영등포 양화	153-31	천	197	161			국유지	국(국세청)			
545	서울영등포 양화	154- 4	대	429	-			김대열외 3인	마포구 서교동 408-11			

연번	소재지	세목조서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번	지 목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주소	주 소	권리 종류
				공부	편입 면적	점용 사용	일시 사용					
546	서울영등포 양화	154-10	도	126	90			국유지	영등포구			
547	서울영등포 양화	155- 2	대	575	516			국유지	서울특별시			
548	서울영등포 양화	156- 4	대	26	26			국유지	서울특별시			
549	서울영등포 양화	156-56	대	889	451			국유지	서울특별시			
550	서울영등포 양화	156-57	대	572	572			국유지	서울특별시			
551	서울영등포 양화	156-71	천	4,986	4,986			국유지	국토교통부			
552	서울영등포 양화	163- 6	도	1,577	132			국유지	국토교통부			
553	서울영등포 양화	163- 7	제	1,220	523			국유지	국토교통부			
554	서울영등포 양화	163-25	천	5,808	5,355			국유지	국토교통부			
555	서울영등포 양화	165-11	대	436	353			국유지	서울특별시			
556	서울영등포 양화	165-12	대	63	63			국유지	서울특별시			
557	서울영등포 양화	165-13	대	79	79			국유지	서울특별시			
558	서울영등포 양화	168	천	17,236	638			국유지	국토교통부			
559	서울 강서 염창	209- 3	천	50	50			국유지	국토교통부			
560	서울 강서 염창	244	천	14,082	13,402			국유지	국토교통부			
561	서울 강서 염창	284-81	도	12,937	802			국유지	서울특별시			
562	서울 강서 염창	286- 2	제	6,260	1,084			국유지	서울특별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역길 32-6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83-1번지등 39필지
 - 면 적 : 97,935㎡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철교 A,B선 및 C,D선 내진보강공사
 - 내 역 :
 - 자재적치장(100㎡) : 자재적치(강재)
 - 현장사무실(100㎡) : 컨테이너 4동, 가설울타리L=40m
 - 선착장(100㎡):기존선착장 사용
 - 한강철교 교각 보수·보강 54개소(A,B선)
 - 우회도로 개설 B=8.2m, L=542m
 - 조립식 옹벽 L=263m
 - 한강철교 교좌장치 교체·보수 87개소(C,D선)
-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3.02.21.~2015.07.31.(2013.02.21.~2015.07.31.)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